

2016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조세지출예산서 개편방안

2016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조세지출예산서 개편방안

2017. 7



2017. 7

2016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조세지출예산서 개편방안

2017. 7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조세지출예산서 개편방안』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이순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연구원

김용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연구원

김상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

허현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

노지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

2017년 7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 장 박 형 수

요 약

1. 연구개요

- (연구목적)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작성되고 있는 조세지출예산서를 최근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기조 및 국회·감사원 등의 개선 요구를 고려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포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함
- (해외사례 조사) 우리보다 먼저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해 온 주요국의 조세지출예산서 및 관련 문헌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조세지출의 범위와 예산서 편제에 대한 시사점 도출
 - OECD의 조세지출에 대한 정의를 비롯하여 주요 국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조세지출과 기준조세체계의 정의를 검토
 - 해외사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조세지출의 범위에 대한 검토를 통해 비과세감면 정비 대상의 조세지출의 범위를 다시 설정하고 향후 성과관리 대상으로 삼고자 함
-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조세지출 항목과 재정지출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의 연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와 한계를 검토하고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를 위해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발굴하여 제시하고자 함
 - 가장 바람직한 결과는 각 조세지출 항목의 정책목적, 정책대상자,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재정지출 세부사업의 예산규모를 파악하여 제시하는 것이나, 하나의 재정사업이 여러 개의 조세지출 항목과 중복 연계되는 등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여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시킬 수 있는 재정사업 정보의 수준과 예시적 연계결과를 제시하고자 함

2. 주요 분석결과

- (조세지출 범위) 각 국가의 조세지출의 범위는 기준조세체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므로 국가별로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한 국가에서도 시기별로 상이할 수 있음
- OECD는 기준조세체계의 개념을 “조세체계상의 일반적인 표준”으로 정의하고 조세지출은 이러한 표준에서 벗어난 예외적인 항목으로 규정
 - 조세체계상의 일반적인 표준은 세목별 과세대상, 세율구조, 과세구간, 과세단위, 과세기간, 회계관행에 따른 규정, 행정효율을 위한 규정, 국제조세조약 등으로 구성
 - 조세지출은 특정성,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 등의 특징을 가짐
 - 이외에 조세지출은 세목의 범위가 넓어서 기준조세체계를 설정함으로써 조세지출 규모를 측정하는 것이 가능해야 하며 특정 조세지출의 혜택을 크게 상쇄시킬 수 있는 다른 항목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특징을 가짐
- 조세지출을 식별하는 방법론은 개념적 접근방법, 준거법적 접근방법, 유사한 보조금 접근방법으로 구분되고 각 국가마다 사용하는 방법론이 상이하여 조세지출의 범위가 다르게 설정되게 됨
 - 개념적 접근방법은 이상적인 기준조세체계의 개념을 설정하고 당시의 표준 과세체계와 연계하여 설정된 기준조세체계에서 벗어난 항목들을 조세지출로 규정함
 - 소득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Haig-Simons의 포괄적 소득개념을 출발점으로 삼고 모든 소득은 과세되는 것을 원칙으로 삼음
 - 캐나다, 호주 등이 사용하는 방법임
 - 준거법적 접근방법은 현행 조세체계에 설정되어 있는 일반적인 규정에서 벗어난 특별한 항목들을 조세지출로 정의하며 개념적 접근방법으로 식별된 조세지출은 개념적 방법에서도 조세지출로 식별되지만 그 반대는 성립되지 않음
 - 네덜란드, 한국, 일본 등이 사용하는 방법임
 - 미국의 경우 개념적 방법론과 준거법적 방법론을 혼용하며, 연구개발비의 비용공제는 개념적 방법론으로는 조세지출로 식별되지만 준거법적 방법론에서는 기준조세체계에 해당

- 유사 보조금 접근방법은 정부 재정지출 중에서 유사한 사업이 있는 경우에만 하여 세금감면액을 조세지출로 분류
 - 영국은 개념적 접근방법과 유사 보조금 접근방법을 혼용하고 독일의 경우 유사보조금 접근방법을 사용

□ (우리나라 조세지출 항목 재분류) 과거 기준조세체계의 성격을 갖고 있던 항목들을 비망항목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였으나 2014년부터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항목별 내역으로 재편하여 조세지출의 범위를 크게 설정하고 있어서 정책입안자 및 일반 대중에게 축소가능한 조세지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오인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다시 구분할 필요

- 현행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들을 관리배제 항목, 잠재적 관리대상 항목, 적극적 관리대상 항목으로 구분
 - 구분 기준은 OECD의 조세지출 3대 특징인 특정성,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을 준용하되 특정성과 대체가능성에 중점을 둠
 - 관리배제 항목은 특정성,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 부담금에 대한 비과세, 연금보험료 공제,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인적 추가공제 등 8개 항목
 - 잠재적 관리대상 항목은 특정성과 대체가능성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폐지가능성이 낮은 경우
 - 기준조세체계 보완, 기부문화 촉진, 의료비·교육비 등 필요경비 공제, 구조조정 관련, 국제외교 등 7개 개별세법 항목과 41개 조특법 항목이 해당
 - 적극적 관리대상 항목은 이해관계자 등의 정치과정 개입에 따라 폐지가능성은 낮더라도 특정성과 대체가능성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이외의 나머지 항목들은 적극적 관리대상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장애인 관련 조세지출 항목들은 사회적 약자보호라는 보다 큰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잠재적 관리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놓여민 지원세제와 간접세 지원제도들을 대부분 적극적 관리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자유무역협정 등의 보완대책으로 놓여민 지원을 정비하기 어렵고 간접세 지원제도의 상대적으로 낮은 대체가능성을 고려하여 잠재적 관리대상으로 분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이러한 재분류 결과를 이용하여 국세감면액과 국세감면율을 재계산한 결과, 기존 국세감면액과 국세감면율은 비과세감면을 통해 축소할 수 있는 조세지출 총량을 상당수준 과대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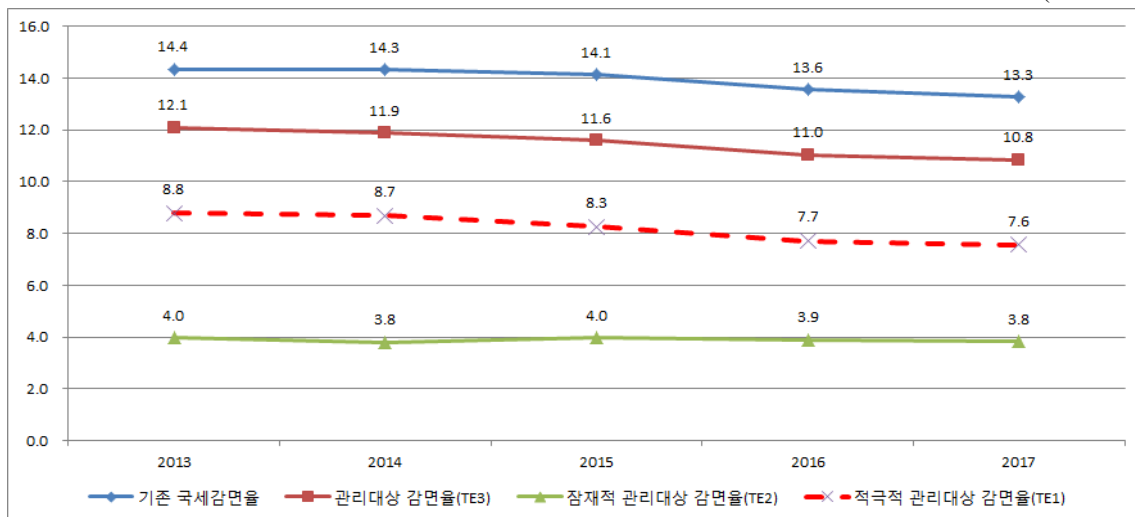
<국세감면액 및 감면율 추이>

(단위: 조원, %)

	2013	2014	2015	2016	2017
국세수입액(조원)	201.9	205.5	217.9	232.7	241.8
기존 국세감면액	33.8	34.3	35.9	36.5	37.0
관리대상 조세지출(TE3)	27.8	27.7	28.6	28.9	29.4
잠재적 관리대상 조세지출(TE2)	8.3	8.1	9.0	9.5	9.6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지출(TE1)	19.5	19.6	19.6	19.5	19.8
기존 국세감면율(%)	14.4	14.3	14.1	13.6	13.3
관리대상 감면율(TE3)	12.1	11.9	11.6	11.0	10.8
잠재적 관리대상 감면율(TE2)	4.0	3.8	4.0	3.9	3.8
적극적 관리대상 감면율(TE1)	8.8	8.7	8.3	7.7	7.6

<조세지출 범위 기준별 감면율 비교>

(단위: %)



-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조세·재정지출을 연계하여 검토하고 유사중복을 축소하겠다는 근본적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현행 예산분류기준별 조세지출 현황을 제시하는 수준 이상의 예산규모 매칭은 불가능하므로 예산 규모를 제외한 유사한 재정지출 사업 내용을 제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

- 하나의 조세지출 항목에 대해 정책목적, 대상자, 지원요건 등이 유사한 재정지출사업을 프로그램예산체계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수준에서 연계를 시도했으나 예산규모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 조세지출 항목의 경우 정책목적, 대상자, 지원요건이 매우 폭넓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 여러 부처의 예산사업과 연계되는 한편 매우 제한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특정 세부사업 내의 일부 내역사업과 연계되나 해당 예산규모를 파악할 수 없음
 - 또한 하나의 예산사업이 여러 조세지출 항목과 중복연계되는 문제가 발생
 - 기금사업의 경우 이자비용의 차액 정도의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원금이 지원규모로 파악되는 문제
- 국회나 감사원은 조세지출 항목과 예산사업의 항목이 일대일 매칭되는 정보를 조세지출예산서에 제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하고 이러한 노력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매우 제한적임
- 여러 나라의 조세지출예산서 또는 관련된 문서를 살펴보다도 조세지출 항목에 일대일 매칭되는 예산사업 내역 및 예산규모를 공개하는 국가는 없음
 - 유사 보조금 접근방식을 사용하는 독일이나 영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정보를 찾을 수 없었음
 - 캐나다와 프랑스의 경우에는 예산규모는 제외하고 조세지출 항목과 가장 유사한 재정사업들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으며,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하여 조세지출예산서에 보고하고 있는 유일한 사례로 파악됨

3. 정책시사점

- 세지출예산서의 정보를 보다 풍부히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조세지출로 구분되는 항목들을 관리의 측면에서 관리배제 항목, 잠재적 관리대상 항목, 적극적 관리대상 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
 - 관리배제 항목들은 기준조세체계의 성격이 강하므로 조세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 잠재적 관리대상 항목들의 경우에는 조세지출규모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면서 특이사항이 발견되는 시점에 대응

- 적극적 관리대상 항목들을 현행 성과관리제도의 대상으로 삼고 그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에 노력할 필요
 - 이러한 구분은 비과세감면 정비 대상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정책입안자와 일반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고 비과세감면 정비 노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가능하게 함
- 조세·재정지출의 연계 강화는 향후 지속 추진해야 할 과제이나 현재 가용한 예산지출의 정보로는 조세지출 항목과의 일대일 매칭에 한계가 있으므로 현재 가용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조세지출 항목별 유사재정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캐나다와 프랑스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조세지출 항목과 정책목적이 유사한 재정사업에 대한 정보를 조세지출 항목별로 제공하는 방안은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목 차

I. 서론	11
II. 우리나라 조세지출예산서의 발전과정	19
1. 조세지출 추이	21
가. 국세감면액 추이	21
나. 국세감면율과 범정한도	24
다. 조세지출 규모 국제비교	26
2. 조세지출예산서의 발전과정	27
3. 조세지출예산서의 편제 및 내용	28
가. 주요 개편 내역	28
나. 현행 편제 및 내용	31
III. 주요국의 조세지출예산서 비교검토	35
1. 국가별 조세지출 범위 비교	37
가. 조세지출의 정의	37
나. 조세지출 식별방법	41
2. 국가별 조세지출예산서 편제 비교	48
가. 영국	48
나. 캐나다	50
다. 미국	51
라. 호주	52
마. 아일랜드	52
바. 프랑스	53
3. 조세지출 규모 및 항목 비교	55
가. 조세지출 규모 국제비교	55

나. 조세지출 항목 비교	56
4. 우리나라 조세지출 항목들에 대한 재검토	59
가.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검토	61
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출 항목 검토	70
다. 조세지출 규모 재산정	75
IV. 개별 조세지출 항목과 재정지출의 연계	79
1.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비교기준	81
가. 현재의 연계 현황	81
나. 연계 방법	83
2. 개별 조세지출항목과 재정지출의 연계 결과	129
3. 시사점	133
V. 개선방안	135
1. 조세지출제도의 재분류	137
2. 조세지출예산서의 편제 개편	137
3.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	138
참고문헌	139
<부록 A>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출 항목들 중 적극적 관리대상 내역	143
<부록 B> 조세지출 항목별 연관 예산사업 내역	151

표 차 례

<표 II-1> 국세감면액 등 주요 변수의 기간별 평균 증가율	24
<표 II-2> 주요 국가의 GDP 대비 조세지출 비중 비교: 2015년 기준	26
<표 II-3> 조세지출예산서상 국세감면 현황 분류 기준	32
<표 III-1> 조세지출제도의 특징	38
<표 III-2> OECD 회원국의 기준조세체계 접근방법 현황	42
<표 III-3> OECD 회원국의 기준조세체계 접근방법 및 정의	43
<표 III-4> 주요 국가의 GDP 대비 조세지출 비중 비교: 2015년 기준	55
<표 III-5> 우리나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항목 비교	58
<표 III-6> 『2017년 조세지출예산서』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39개 항목	62
<표 III-7>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분류결과	68
<표 III-8>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출 항목 중 잠재적 관리대상	73
<표 III-9> 기존 국세감면액 총량의 구성요인별 분해	76
<표 III-10> 국세감면액 및 감면율 추이	77
<표 IV-1> 예산분류기준별 조세지출 현황	82
<표 IV-2> 유형 B 연계결과	87
<표 IV-3> 유형 D 연계결과	89
<표 IV-4> 유형 E 연계결과	121
<표 IV-5>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기준에 따른 조세지출 및 재정지출 현황	131
<표 IV-6> 예산분류기준별 조세지출 및 재정지출 현황	132

그림 차례

[그림 II-1] 국세감면액과 GDP 대비 조세지출 비중 추이	23
[그림 II-2] 국세감면율과 법정한도 추이	25
[그림 III-1] 조세지출 범위기준별 감면율 비교	78

I. 서론



I. 서론

- 우리나라의 조세지출예산서 제도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조세특례제도에 의해 유발되는 세수 감소분을 보다 체계적으로 집계하여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발전해 왔음
 - 조세지출은 조세의 일반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난 특례제도에 의해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발생하는 세입의 감소이며, 이러한 세부담 경감의 목적은 특정한 경제활동을 장려하거나 특정한 경제주체들을 보호하기 위함임
 -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조세특례제도에 의해 유발되는 세수 감소분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집계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대두됐음

- 재정정책의 주요 수단 중 하나인 조세정책을 국제규범에 부합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과 함께 조세지출예산서(舊 조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해 오고 있음
 - 국민의 정부는 1998년 2월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을 100대 정부개혁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동년 3월 조세지출예산업무를 전담할 조직인 조세지출예산과(현재 조세특례제도과)를 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신설
 - 제도 도입의 기초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1998년 10월 기존의 「조세감면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조세감면 건의서와 평가서를 각 중앙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함
 - 1999년 2월에 발표된 중기재정계획에서 1999년부터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임을 공개하고 1999년 처음으로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에 관한 조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기 시작
 - 이후 대상 세목의 범위와 국세감면 현황 분류기준을 확대하는 등 편제를 개편하면서 현재의 조세지출예산서의 형태로 발전함

- 국회 예산정책처, 감사원 등 외부 기관은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에 관한 정보를 조세지출예산서에 보다 충분히 포괄할 수 있도록 조세지출예산서의 개선을 요구함
 -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2016. 10.)에서 “현재 조세지출예산서에서는 개별 조세지출 항목과 유사한 재정지출 사업을 매칭할 수 없어 중복성 평가가 곤란하므로 유사한 단위사업의 존재 여부, 규모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
 - 감사원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조세감면제도 운영실태』(2014. 2.)에서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조세지출의 예산 분야별 합계치만 제시하여 예산의 기능별 분류 기준에 따른 내용이 부실함”을 지적하였음
 - 감사원 지적 이후(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이후)에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분야별 합계치 외의 재정지출과 관련된 정보는 제시되지 않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이와 같은 외부기관의 조세지출예산서 개선요구와 함께 정부의 유사중복사업의 축소를 통한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어 나가고 있으며 조세특례와 예산사업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조세지출과 재정사업의 연계 강화를 통해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정부의 최근의 노력은 다음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음
 - 2015년 제정된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17조 제1항 제3호는 조세지출 심층평가의 분석항목으로 제도의 유사중복 여부를 조세특례의 타당성 분석의 일환으로 수행하도록 명시
 -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예산편성 10대 원칙 중 하나로 ‘세출예산과 조세감면이 불필요하게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를 제시
 -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는 재정개혁 10대 과제 중 하나로 ‘재정사업과 조세지출 연계 강화’를 제시
 - 조세지출 항목별 소관부처의 자체평가 작성 담당자들의 낮은 관심도로 인해 자체평가 항목 중 하나인 재정사업과의 유사중복성 항목에 대해 대체적으로 중복성이 없는 것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향이 큼

- 2015년부터 각 부처는 재정사업의 성과계획서 작성 지침에 따라 성과계획서에 소관 조세지출 항목 모두를 단위사업과 연계하여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성실히 작성되지 않는 경우가 쉽게 발견됨
 - 조세지출 항목별로 소관부처의 재정사업 단위사업별 수혜자들을 조사하여 유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세지출 항목들의 수혜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현실적 어려움으로 자체평가 작성 담당부처나 확인점검기관이 검토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소관부처에서 유사중복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소관부처의 재정사업 수혜자들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국세청 협조를 통해 해당 리스트에 올라 있는 수혜자들의 조세지원 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유사중복성을 검토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작업임
 - 개인정보보호의 목적으로 인해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수혜자 명단을 확보할 수 없는 자체평가 확인점검기관이 재정사업 수혜자와 조세지출 수혜자를 비교·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더욱 어려움
 - 또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정책목적이 유사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추려내고 이 사업들의 수혜자들의 리스트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유사한 정책목적이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이 시너지 발휘하지 않고 유사·중복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므로 쉽게 판단하기 어려움
 - 재정사업과 조세지출의 연계 강화를 통한 유사중복사업을 축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
 - 조세지출이 재정지출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정부지출의 다른 형태로 보고 두 가지 유형의 정부지출을 연계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이론적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연계하여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 어려움과 기술적 복잡성 등을 고려할 필요
 - 현재 가용한 정보를 활용하여 제시할 수 있는 차선택에 대한 검토를 주요 국가들의 사례분석을 통해 수행하고자 함
- 이러한 외부의 조세지출예산서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주요 국가들의 조세지출예산서를 검토하여 현행 우리나라 조세지출예산서의 활용도를 높이고 재정관리의 효과적인 참고자료로 만들기 위해 동 심층평가를 수행

- 외부의 개선요구 사항뿐만 아니라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는 기획재정부 담당부서인 조세특례제도과에서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조세지출예산서 개선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조세지출예산서의 편제뿐만 아니라 조세지출로 분류되고 있는 여러 조세지출 항목들 중 조세지출로 보기 어려운 성격의 항목들을 지속적으로 조세지출로 분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내부에서 제기된 바 있음
 - 장재형·임재현(2015)은 현재 우리나라 조세지출 항목으로 분류되고 있는 교육비 공제, 의료비 공제, 연금 및 개인에 대한 공제, 기부금 공제 등을 조세지출로 보기 어려운 항목으로 제시하고 이러한 항목들의 조세지출 규모로 추정되는 규모가 축소 내지 증가 억제 대상 항목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함
- 조세지출의 분류기준에 대한 재검토 및 분류작업은 정책입안자에게 비과세감면 정비의 여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다 정확히 알려줄 수 있으며 그간의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의 효과도 보다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음
 - 조세지출로 분류하기 어려운 성격의 항목들은 일반적으로 정책대상자 수가 많고 조세지출 규모가 크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결과적으로 그간 추진해 온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의 효과가 이 항목들의 조세지출 규모 증가로 상쇄되어 여전히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의 여지가 큰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며 그간의 정비 노력에 대한 평가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함
- 동 심층평가는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개별 조세지원제도 자체에 대한 평가와는 그 성격상 크게 다르기 때문에 심층평가 운영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분석방식과 보고서 체계를 따르기는 어려우므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수행하고자 함
 - 제Ⅱ장은 우리나라 조세지출예산서의 발전과정을 간단히 살펴봄
 - 제Ⅲ장은 주요국의 조세지출예산서를 비교·검토하고 우리나라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다 발전시키는 데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찾고자 함
 - 주요국의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조세지출 항목들을 여러 군(群)으로 유형화하여 비교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 조세지출예산서에 조세지출 항목으로 포함된 개별 항목들을 여타 국가에서는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를 검토함
 - 제Ⅳ장에서 조세지출항목과 재정사업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따라 분류해보고 유사한 사업들이 있는지를 검토하며 이러한 작업의 한계와 시사점을 제시함

- 일찌기 조세지출을 정부지출의 한 유형으로 인식하고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를 고려했던 국가들의 사례를 검토한 제Ⅲ장의 결과와 직접 연계를 시도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가용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연계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차선을 제시함
- 끝으로 제 V 장에서 조세지출예산서 개편 방향을 요약정리함

Ⅱ . 우리나라 조세지출예산서의 발전과정



Ⅱ. 우리나라 조세지출예산서의 발전과정

1. 조세지출 추이

가. 국세감면액 추이

- 2000년 13.3조원 수준이던 국세감면액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며 2015년 35.9조원 수준에 이르렀고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36.5조원과 37조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나 GDP 대비 비중은 2009년 이후 2% 초반 수준으로 안정화되는 양상을 보임
 - 2000년대 중반까지 2% 초반 수준을 보이던 GDP 대비 조세지출 비중은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2008년과 2009년 각각 2.6%와 2.7%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
 - 2008년 국세감면액은 전년 대비 25.3% 증가한 28.8조원 규모이고 2009년에도 전년 대비 7.9% 증가한 31.1조원을 기록
 - 이후 2010년과 2011년 조세지출 규모는 소폭 감소하여 2011년 다시 29.6조원으로 30조원을 하회했으나 2012년 다시 12.77% 증가하며 33.4조원 수준을 기록
 - 2014년 조세지출예산서(2013년 하반기 작성)부터 이전에 포함되지 않던 개별 세법상 조세지출 항목들이 다수 포함되면서 2012년 조세지출 규모가 이전에 비해 4조원가량 확대되며 시계열 불일치 발생
 - 2013년 조세지출예산서(2012년 하반기 작성)에는 2012년 국세감면액 잠정치는 29.7조원 수준으로 보고됨
 - 2014년 조세지출예산서(2013년 하반기 작성)에는 2012년 국세감면액 실적치를 33.4조원으로 보고되며 전년도 조세지출예산서와 큰 차이를 보임
- 2014년 조세지출예산서에 새롭게 포함된 대표적인 개별법상 조세지출 항목들 중 일부 항목들은 조세지출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
 - 「부가가치세법」 제42조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2012년 2조 691억원), 「소득세법」 제51조의3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2012년 1조 1,891억원), 「소득

세법」 제59조의3 연금저축 소득공제(2012년 7,838억원) 등으로 그 규모가 크고 쉽게 폐지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성격의 항목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제Ⅲ장에서 수행함

○ 이 항목들의 조세지출 규모는 2012년 GDP의 0.3% 수준으로 2012년 조세지출 규모의 GDP 대비 비중을 확대시킨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이 항목들을 제외하면 2012년 조세지출 규모의 GDP 대비 비중은 2.1% 수준으로 2011년보다 소폭 낮아짐

-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2013년 세법 개정으로 2014년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으로 전환

○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와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조세지출의 성격과 기준조세체계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거나 기준조세체계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들을 제외한 조세지출 규모의 GDP 대비 비중은 2012년 2.2% 수준으로 2011년과 유사함

-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을 위해서 농수산물 등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서 전단계 매입세액공제방식을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기준조세체계의 성격을 일부 갖고 있음

-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의무가입제도이므로 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조세지출의 성격으로 보기보다는 기준조세체계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조세지출로 보기 어려울 수 있는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와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에 의한 조세지출 규모를 제외할 경우 2017년 조세지출 규모의 GDP 대비 비중은 1.94% 수준으로 낮아짐

- 2014년 조세지출예산서에 신규로 편입된 항목들의 2017년 전망 기준 조세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2.5조원,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1.9조원, 연금저축 세액공제 1.1조원으로 합계 5.5조원 수준임

- 이 중 조세지출보다는 기준조세체계의 성격이 강한 두 항목의 2017년 조세지출 규모 합계는 4.4조원, 2017년 GDP 전망치 대비 0.26%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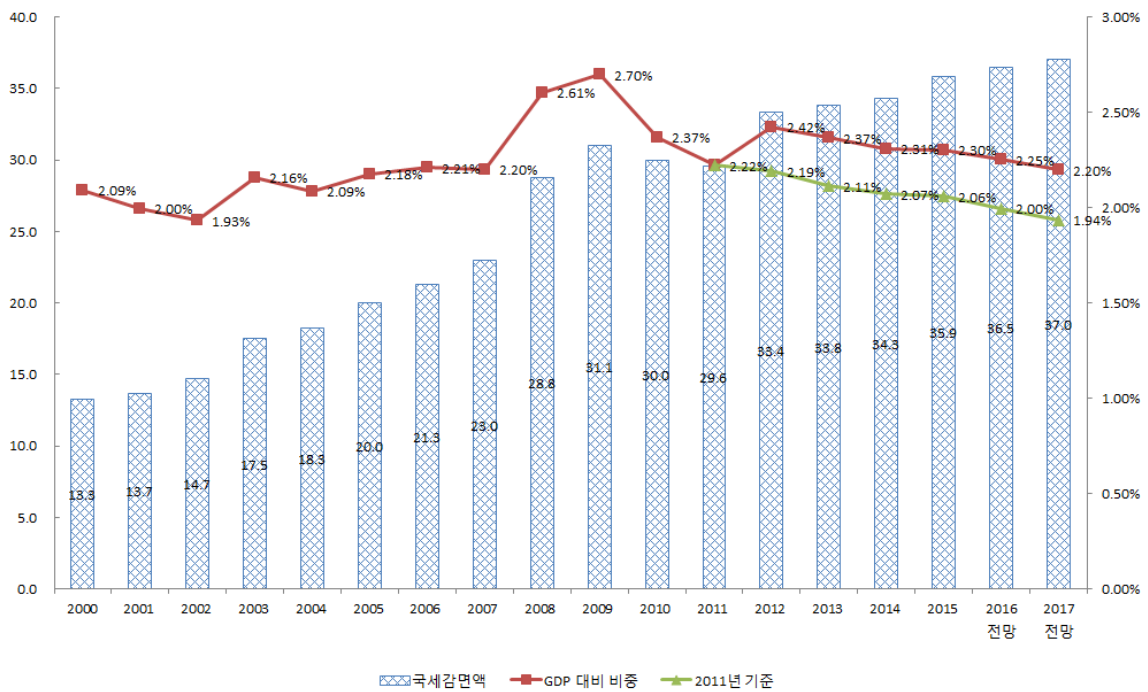
□ 2014년 조세지출예산서에 신규 편입된 항목들 중 조세지출 성격보다는 기준조세체계에 가까운 상기 두 항목들을 배제하고 2011년 조세지출 항목 기준과 유사하

계 산출한 2012년 이후 조세지출 규모의 GDP 대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며 2017년 1.94% 수준으로 전망됨

- 2000년 이후 GDP 대비 조세지출 비중이 가장 높았던 2009년 2.7%보다 2015년 실적 기준으로는 0.64%포인트 낮아졌으며 2017년 전망 기준으로는 0.76%포인트 낮아졌음
- 경제 전체의 GDP 대비 국세감면액 비중이 2009년 이후 추세적으로 축소되는 양상은 우리나라의 비과세감면제도의 운용기조의 변화를 보여줌

[그림 II -1] 국세감면액과 GDP 대비 조세지출 비중 추이

(단위: 조원, %)



- 자료: 1. 대한민국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2. 대한민국 정부, 『조세지출보고서』, 각 연도
 3.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 이러한 비과세감면 운용기조의 변화는 국세감면액 연평균 증가율 추이와 국세수입액 및 경상GDP 연평균 증가율 추이의 비교에서도 명확히 나타남
- 국세감면액 연평균 증가율은 대체적으로 2009년 전까지는 국세수입액이나 경상GDP 연평균 증가율을 상회하며 비과세감면 확장 기조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2009년 이후 국세수입액 증가율이나 경상GDP 증가율보다 낮은 수준의 국세감면액 연평균 증가율이 나타남
- 비과세감면제도의 제도적 정비가 시작된 2013년 이후 국세감면액 연평균 증가율은 2.3%에 그치며 국세수입액과 경상GDP 연평균 증가율의 절반수준으로 나타남

<표 II -1> 국세감면액 등 주요 변수의 기간별 평균 증가율

(단위: %)

	국세감면액	국세수입액	경상GDP
2000~2005	8.6	6.5	7.7
2005~2010	8.4	6.9	6.6
2010~2015	3.7	4.2	4.3
2015~2017	1.6	5.4	4.0
2000~2009	9.9	6.6	6.8
2009~2017	2.2	4.9	4.9
2000~2013	7.5	6.2	6.4
2013~2017	2.3	4.6	4.2
전체	6.2	5.8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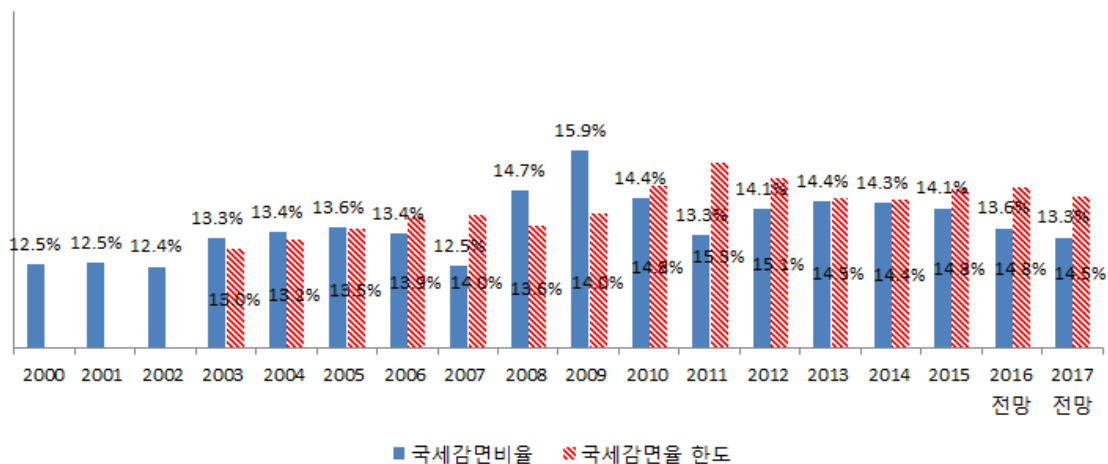
나. 국세감면율과 법정한도

- 2000년 12.5% 수준이던 국세감면율은 2009년 15.9%까지 확대됐으나 이후 축소 추이를 보이며 2015년 14.1%, 2016년과 2017년 각각 13.6%와 13.3%로 나타나며 2009년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
 - 국세감면율=100×조세지출/(조세지출+국세수입)로 계산되며 조세지출이 없었을 때 징수할 수 있었던 국세수입규모 대비 조세지출의 비율임
 - 2016년과 2017년 국세수입 전망 결과는 2017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인용함
-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는 직전 3개년 평균 국세감면율에 0.5%포인트를 더한 값으로 정해지는데, 2003년 이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초과한 연도는 2003년, 2004년, 2008년, 2009년뿐이고 이외의 연도의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준수된 것으로 나타남

- 「국가재정법」 제88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세감면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선언적 규정으로 구속력은 없음
 - 조세지출 규모는 납세자들이 다양한 비과세감면제도들에 얼마나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예측하기 어렵고 사후적으로 예측오차가 발생해서 국세감면을 법정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기 어려움
- 국세감면을 법정한도는 과거 3년 평균을 베이스로 삼고 있어서 2009년과 같이 특정연도의 국세감면율이 높은 경우 해당 연도가 3년 평균값 산정에서 배제될 때까지 이후 연도의 법정한도를 높게 만듦
 - 2011년과 같이 특정 연도의 국세감면율이 낮은 경우에는 이후 연도의 법정한도를 낮게 만드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침
 - 이처럼 특정 연도의 국세감면율이 이후 연도의 감면한도에 영향을 주는 방식은 급격한 비과세감면제도의 확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으나 비과세감면제도의 탄력적 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급격한 경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조세감면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감면제도의 탄력적 운용을 저해하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선언적 규정으로 느슨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림 II -2] 국세감면율과 법정한도 추이

(단위: %)



자료: 1. 대한민국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2. 대한민국 정부, 『조세지출보고서』, 각 연도

다. 조세지출 규모 국제비교

-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조세지출 규모는 35.9조원으로 GDP 대비 2.3% 수준이며 미국, 캐나다, 영국 등과 비교하여 크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의 GDP 대비 조세지출 비중을 보이는 국가는 2.27%의 아일랜드이고 3.66%의 프랑스가 세 번째로 낮은 국가임
 - 미국 6.87%, 호주 8.42%, 영국 10.68%, 캐나다 11.36%로 우리나라 GDP 대비 조세지출 비중의 3~5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일부 국가들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조세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은 아니라는 점과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목적에 위해 조세지출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는 점을 시사함
 - 조세지출 규모를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일부 국가들의 특정연도 조세지출 규모에 대한 자료이므로 그 해석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음

〈표 II -2〉 주요 국가의 GDP 대비 조세지출 비중 비교: 2015년 기준

(단위: 자국화폐기준, %)

국 가	조세지출규모 ¹⁾ (A)	GDP ²⁾ (B)	GDP 대비 조세지출 비율(A/B)
한국(억원)	359,017	15,585,916	2.30
미국(백만달러)	1,232,353	17,946,996	6.87
캐나다(백만CAD)	225,260	1,983,288	11.36
영국(백만£)	203,200	1,870,693.0	10.86
아일랜드(백만EUR)	5,815	255,815.2	2.27
프랑스(백만EUR)	78,337	2,139,964.0	3.66
호주(백만AUD)	135,605	1,609,992.0	8.42

주: 1) 미국, 캐나다: 추정치

영국, 아일랜드, 한국: 실적치

프랑스: 2016년도 조세지출 항목 기준 2014년도의 실적치

호주: 2014-15년도 각 세목별 항목의 단순합계

자료: 1) 미국: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Analytical Perspectives*, 각 연도

영국: HMRC, *Estimated cost of tax reliefs, expenditures, & allowances*

캐나다: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Tax Expenditures and Evaluations*, 2015.

아일랜드: Department of Finance, Ireland, *Report on tax expenditures*, 2015

한국: 기획재정부, 『2017 조세지출예산서』, 2016.

프랑스: République Française, *PLF pour 2016: Evaluations des Voies et Moyens*, 2015.

호주: The Treasury, Australia, *Tax Expenditure Statement 2015*, 2016.

2)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한국, 프랑스, 호주: Data extracted on 14 August 2016 16:15 UTC (GMT) from OECD.Stat

미국: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CD>

- 그러나 우리나라의 조세지출 규모는 경제규모와 비교하여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비교대상 국가들 중 하위권에 속하는 상황으로 조세지출로 보기 어려운 제도들이 포함된 점을 고려할 때 필요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조세지출제도들을 활용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
 - 이는 상대적으로 비과세감면제도의 축소 여지가 생각처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함

2. 조세지출예산서의 발전과정

-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IMF와 체결한 의향서(Letter of Intent)에 조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이후 1999년 처음으로 조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여 현재의 조세지출예산서로 발전했음
 - 1999년 9월 최초로 발표된 『1999년 조세지출보고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및 상속·증여세 등 직접세만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음
 - 총 112개 항목을 대상으로 1998년 귀속 조세지출 실적을 집계하여 기능별·세목별로 제시하였음¹⁾
 - 1999년 이전에도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함에 따라 국제규범에 맞게 국가재정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확대됐으며 세제당국은 대략적으로 비과세감면 실적을 파악하고는 있었음
- 2000년 11월 발표된 『2000년 조세지출보고서』부터는 간접세 부문을 추가하여 국회에 제출함
 - 총 10개 세목(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교통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전화세)의 230개 항목의 조세지출에 대하여 전년도 실적 및 당해 연도 잠정치를 기능별·세목별·감면방법별로 제시하였음
- 조세지출보고서 작성 3차년도인 2001년부터는 관세를 포함한 국세에 대하여 전년도 실적 및 당해연도 잠정치를 산출하여 작성함

1) 우리나라 조세지출보고서에는 조세지출을 재정지출에 대응하는 조세보조금으로서 “조세의 정상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난 특례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세입의 감소”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정상적인 과세체계가 무엇인지 명백하게 밝히지 않음(박노욱·김학수(2012)에서 재인용)

-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의 목적세와 세수실적이 없는 부당이득세를 제외한 모든 국세를 포괄하기 시작함
 - 총 11개 세목 273개 항목의 조세지출 내역을 작성하였음
 - 1999년 귀속 관세 관련 조세지출 규모도 추가적으로 공개함
- 『2007년 조세지출보고서』에는 교육세·농특세를 포함한 모든 국세를 포함하고 국세감면율을 산출하는 등의 개선이 이루어짐
-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재정법」에서는 2009년까지 국세감면금액·국세감면율 등에 관한 전년도 실적 및 당해연도 전망보고서인 조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 2010년부터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기 시작함
- 「국가재정법」에 의거하여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당해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인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고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함
 - 2013년부터²⁾ 조세지출예산서 작성의 법적 근거가 「국가재정법」 제27조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로 변경됨
 - 조세지출성과관리가 도입되어 시행되며 재정지출과 유사한 성과평가체계를 갖추고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작업이 시작됨

3. 조세지출예산서의 편제 및 내용

가. 주요 개편 내역

- 조세지출예산서 작성을 시작한 이후 해마다 조세지출예산서의 편제가 다소 달랐으나 2013년 하반기에 발표된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형태의 편제를 유지하고 있음

2)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개정, 2013. 1. 1. 시행) 및 「국가재정법」(2013. 1. 1. 개정, 2013. 1. 1. 시행) 개정

-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2012년 하반기 발표)까지는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정착과 함께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되는 내용을 확대하며 해마다 조세지출예산서의 편제가 개편됐음
 - 2010년에 발표된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는 국세감면 증감현황을 보여주는 국세감면 개요, 기능별·세목별·감면방법별 국세감면 현황 및 주요 변동내역, 그리고 프로그램 수준까지 연계된 국세감면 항목별 조세지출 세부내역(근거규정, 수혜자, 수혜내용)을 제시
 - 과거 임의제출 형식의 조세지출보고서는 지원분야별로 각 항목을 분류하여 집계하고 직전 연도와 당해 연도의 2개 연도 조세지출 규모를 제시했으나, 2010년 이후 의무제출형식의 조세지출예산서는 기능별(예산분류기준별)로 각 항목을 분류하고 직전 연도, 당해 연도, 다음 연도의 3개 연도 조세지출 규모를 제시
 - 조세지출 규모의 경우 직전연도는 실적치 기준으로 작성되지만 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의 조세지출 규모는 전망치의 형태로 추정될 수밖에 없는 조세지출의 고유특성으로 인해 재정지출의 예산규모와는 다르다는 점은 누차 강조되고 이해될 필요가 있음
 - 2011년에 발표된 『2012년도 조세지출예산서』는 기본적으로 전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내용에 조세지출예산제도의 개요를 소개하고 조세지출예산서가 어떻게 작성되는지와 비과세감면 정비 내역을 추가
 - 2012년에 발표된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지출 성과관리 제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향후 추진될 성과관리체계의 근거법 등을 소개하고 있음
 - 전년도에 추가됐던 조세지출예산제도의 개요와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방법을 소개하던 2개의 장을 ‘조세지출 예산서의 연혁 및 작성목적’과 ‘국세감면의 범위’라는 제목의 참고자료 형태로 간략히 제시
 - 또 다른 주요 특징은 조세지출의 성격과 기준조세체계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어서 정비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들을 ‘비망항목(memorandum)’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점임
 - 비망항목은 캐나다의 분류체계로서 조세지출의 성격과 기준조세체계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비과세감면제도를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것임
 - 이처럼 비망항목을 조세지출항목과 별도로 관리하는 이유는 해당 제도의

활용도가 높고 일반적인 과세체계라 할 수 있는 기준조세체계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폐지 가능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임

- 국회를 중심으로 개별 세법에 규정된 항목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비망항목’의 모호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며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는 ‘비망항목’을 ‘개별 세법상 조세지출 항목’으로 명칭을 변경

□ 2014년 이후 조세지출예산서의 편제는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국회 및 감사원 등에서 재정지출과의 통합관리 목적으로 보다 많은 정보를 포함하는 형태로 조세지출예산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부터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까지는 ‘조세지출 예산서의 개요’, ‘연도별 조세지출 개요’, ‘연도별 조세지출 분석’, ‘각 년도 조세지출 정비(또는 조세지출예산서 변경) 현황’, ‘조세지출 항목별 내역’으로 편제되어 발표되고 있음

- 국세감면액을 조세지출, 비망, 경과규정 항목으로 구분하던 기존 체계를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출, 개별세법상 항목, 경과규정 항목으로 명칭 변경

-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2016. 10.)에서 “현재 조세지출예산서에서는 개별 조세지출 항목과 유사한 재정지출 사업을 매칭할 수 없어 중복성 평가가 곤란하므로 유사한 단위사업의 존재 여부, 규모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

- 제Ⅳ장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유사중복성 검토는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인지할 필요

- 조세지출 항목의 경우 정책목적, 대상자, 지원요건이 매우 폭넓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 여러 부처의 예산사업과 연계되는 한편, 매우 제한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특정 재정지출 세부사업 내의 일부 내역사업과 연계되거나 해당 예산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또한 하나의 예산사업이 여러 조세지출 항목과 중복 연계되기도 하지만 각 조세지출 항목 수혜자 모두가 해당 예산사업의 수혜자인지 파악되지 않음
- 본질적으로 재정사업과 조세지출의 수혜자들에 대한 개별 수혜정보를 바탕으로 중복 수혜가 반드시 단순 중복지원인지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 등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유사중복성을 논의하는 수준은 현행처럼 예산분류상 기능별 집계표 수준으로 살펴보고 해당 기능에 정부재원이 과도하게 집중되는지 여부 정도의 검토 이외에 더 수행할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음
- 감사원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조세감면제도 운영실태』(2014. 2.)에서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조세지출의 예산 분야별 집계치만 제시하여 예산의 기능별 분류 기준에 따른 내용이 부실함”을 지적하였음
- 감사원 지적 이후(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이후)에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분야별 집계치 외의 재정지출과 관련된 정보는 제시되지 않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정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시하는 것은 여러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외부기관의 검토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나. 현행 편제 및 내용

- 현재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지출예산제도의 개요, 연도별 분석, 항목별 내역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의3 제2항에서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으로 ① 세출예산 항목별로 집계한 기능별 분석 ② 세목별로 집계한 세목별 분석 ③ 조세특례의 감면방법별 분석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작성되고 있음
-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3년 조세지출예산서부터는³⁾ 수혜자별 분석을 제시하기 시작했으나 수혜자 분류기준에 대한 외부 의견을 반영하여 2014년부터 개선된 양식으로 제시
 - 2013년 수혜자는 중산서민·중소기업과 고소득층·대기업으로 분류되었으나 2014년부터 수혜자를 크게 개인과 기업으로 구분하고, 개인을 서민·중산층과 고소득층으로 세분하고, 기업을 중소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중견 및 일반기업으로 구분하기 시작함

3) 2013년 조세지출예산서에서는 수혜자를 ① 서민·중산층·중소기업 등 ② 고소득층·대기업, ③ 구분 곤란으로 구분하였고, 2014~2017년 조세지출예산서에는 ① 개인(서민·중산층, 고소득층) ② 법인(중소기업, 상호출자기업, 중견기업 및 일반기업) ③ 구분 곤란으로 구분하였음

- 2014년 조세지출예산서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기준에 따른 현황도 추가해서 제시하고 있음

<표 II -3> 조세지출예산서상 국세감면 현황 분류 기준

회계 연도	조세지출예산서 국세감면현황				
	예산분류기준별 (기능별)	세목별	감면방법별	수혜자별	조특법상 분류기준
2011	○	○	○	×	×
2012	○	○	○	×	×
2013	○	○	○	○	×
2014~2017	○	○	○	○	○

- 최근 정부의 유사중복사업의 축소를 통한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여러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지고 있으며 조세특례와 예산사업의 효율적 관리체계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그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2014년 말 제정된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17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심층평가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제도가 유사중복 여부를 조세특례의 타당성 분석의 일환으로 수행해야 함
 - 이후 수행된 심층평가 보고서에는 일정 수준의 중복성 검토가 수행되고 있으나 재정사업 수혜자 정보와 조세특례 수혜자 정보의 비교 검토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수행되기 어려움
 - 대체적으로 심층평가 대상 조세특례제도와 유사한 정책목적의 갖고 있는 예산사업들에 대한 개괄적 검토 및 총량 수준의 비교분석을 통해 두 가지 정책수단의 시너지 효과가 긍정적인지 여부 등을 정성적으로 분석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정성적 분석에 기초한 분석결과는 엄밀한 의미의 유사중복성 검토라 보기 어렵고 유사중복성의 가능성 여부 정도만 추론할 수 있음
 - 특정 재정사업의 수혜자가 유사한 정책목적의 조세지출을 지원받은 경우 이를 반드시 유사중복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없기 때문임
 - * 예를 들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연구개발 보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들의 리스트를 확보하고 이 기업들의 연구 및 인력개발 조세지원제도의 수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현재로는 불가하지만,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과연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이 단순히 중복지원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임

-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예산편성 10대 원칙 중 하나로 ‘세출예산과 조세감면이 불필요하게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제시하고 있고,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는 재정개혁 10대 과제 중 하나로 ‘재정사업과 조세지출 연계 강화’를 제시함
 - 각 부처는 예산 요구 시 사업별 설명서에 정책목적과 수혜대상이 유사한 조세지출 항목 존재 여부, 지원 규모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예산 사업의 지원 여부 검토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2015년부터 각 부처는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성과계획서에 소관 조세지출 항목 모두를 단위사업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함
 - 단위사업과 관련성 있는 소관 조세지출 항목의 ① 제도 개요(법령 조항, 목적, 대상, 일몰 기한) ② 조세지출 실적(최근 5개년) ③ 예산지원과 조세지출과의 관련성에 대해 서술하여야 함
 - 소관 조세지출 항목 중 일부가 성과계획서에서 누락된 경우, 타 부처 소관 조세지출 항목을 관련 조세지출 항목으로 제시한 경우, 관련성이 없는 조세지출 항목을 관련 조세지출 항목으로 제시한 경우 등 적절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임
- 이처럼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 강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에 관한 정보의 공개가 미흡하여 통합적인 재정 관리체계 구축에 조세지출예산서가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음
 - 2011~2012년 조세지출예산서는 예산 분야·부분 분류 코드 순서에 따라 개별 항목별 내역을 제시하였는데 2013년 조세지출예산서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조문 순서에 따라 항목별 내역을 제시함
 - 현재 조세지출예산서는 ‘예산분류기준별(기능별) 조세지출 현황’을 통해 예산 분야별 조세지출 규모 및 비중을 제시하고 있고, 개별 조세지출 항목의 내역을 통해 관련 예산 ‘부분’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음
 -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 강화의 목적이 통합적인 재정관리를 통한 재정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에 있으며 이러한 정책 목적은 타당성을 갖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외부 기관과 여러 전문가들이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 강화를 강조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가용한 정보의 한계를 인식하고 제한적인 정보하에서 달성할 수 있는 성과가 무엇인지 신중히 검토해보면 예산분류 기준별 집계 수준의 연계를 통한 대략적인 추이 파악 이외에 크게 유용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Ⅳ장에서 살펴봄
- 현재 조세지출예산서에는 개별 조세지출 항목의 소관 부처, 유사한 재정 지출 유무, 규모 등에 관한 정보는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중 일부는 추후 공개할 필요도 있음
 - 개별 조세지출 항목의 소관 부처는 조세특례제도의 기본 운영방향의 설정과 조세특례성과평가 수행을 위해 매해 3월말에 발표되는 조세특례 및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에 제시됨
 - 그 밖의 재정사업의 프로그램예산체계에 따른 유사 재정사업 존재 여부 및 규모 등에 관한 정보는 3년에 한번씩 소관부처에서 수행되는 자체평가의 한 항목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공개되지는 않음
 - 정확히 유사중복사업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조세지출 개별 항목과 유사한 정책목적과 갖고 시행되고 있는 주요 재정지출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는 추가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해당 정책목적에 대해 정부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가늠하는 수준의 정보는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Ⅲ. 주요국의 조세지출예산서 비교검토



Ⅲ. 주요국의 조세지출예산서 비교검토

1. 국가별 조세지출 범위 비교

가. 조세지출의 정의

- 조세지출은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조세체계상의 기본원칙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준 조세체계에서 벗어난 특례제도들로 규정됨
 - OECD(1996)에서는 기준조세체계의 개념을 “조세체계상의 일반적인 표준(norm)”이라고 정의하고 여기서 표준(norm)은 세목별 과세대상, 세율구조, 과세구간, 과세단위, 과세기간, 회계 관행에 따른 규정, 행정 효율을 위한 규정, 국제조세 규약 등을 포함
 - 기준조세체계에서 벗어나는 항목으로 정의되는 조세지출은 다음의 다섯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OECD는 제시하고 있음
 - ① 조세지출은 특정 산업, 활동 및 납세자 계층에 혜택을 부여하여야 함
 - ② 조세지출은 조세제도가 아닌 다른 정책수단을 사용하여도 달성할 수 있는 특정한 정책목적을 조세제도를 통하여 이루고자 할 때 발생함
 - ③ 조세제도를 개정함으로써 특정한 조세지출을 폐지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실현가능하여야 함
 - ④ 조세지출은 해당 세목의 범위가 넓어서 적합한 기준조세체계를 설정함으로써 조세지출의 규모를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함
 - ⑤ 동일한 조세제도 내에 특정 조세지출이 부여하는 세제상 혜택을 크게 상쇄시킬 수 있는 다른 항목이 존재하지 않아야 함

〈표 III-1〉 조세지출제도의 특징

	내용
특정성	조세지출은 특정 산업 및 경제활동에 혜택을 제공하여야 함
대체 가능성	조세지출은 조세제도의 효율적 운영과는 상관없는 특정 정책목표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책목표는 조세가 아닌 다른 정책수단으로도 성취할 수 있는 것으로 쉽게 입증될 수 있어야 함
폐지 가능성	특정 조세지출을 폐지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실행 가능하여야 함
기타	조세지출은 규모를 측정하기에 적절한 기준인 기준조세제도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해당 세목의 범위가 넓어야 하며, 특정 조세지출의 혜택을 크게 상쇄시킬 수 있는 다른 항목이 동일 조세제도 내에 존재하지 않아야 함

자료: OECD(1996), 「Tax Expenditures: Recent Experience」

-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조세지출의 정의는 결과적으로 각 국가에서 기준조세체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함
 - OECD(1996)는 기준조세체계 선택 시의 쟁점들로 다음의 다섯 가지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 개인소득세에서 개인과 가구 중 과세단위 선택이 국가마다 서로 상이함
 - 예를 들어, 미국은 납세자가 인별과세와 부부합산 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경우 인별과세를 기본과세단위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문화적 태도와 역사적 관행이 혼합된 결과로서 과세단위의 차이뿐만 아니라 어떤 공제까지 기준조세체계로 포함할 것인지도 국가마다 상이함을 의미
 - *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기본적으로 인별과세 원칙을 준용하고 있으나 다양한 가족공제 제도를 기준조세체계로 분류하는 것으로 OECD(1999)은 보고하고 있음
 - * 한편 영국은 인별과세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다양한 가족 관련 공제를 조세지출로 분류하는 것으로 보고됨
 - 연금 관련 조세지원제도들을 조세지출로 인식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지만 각 개인별로 연금수급률이 다르고 데이터상의 문제로 인해 조세지출 항목으로 분류하지 않는 국가들이 있음
 -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등이 그러한 국가들임

- 또한 연금불입, 운용단계, 수령단계 중 어느 단계에서 과세하는지도 국가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됨
 - * 캐나다는 연금과 관련한 현재의 세제혜택이 일종의 장기적 과세이언이지만 이에 대하여 조세감면으로 분류하여 보고
 - * 영국은 실질적으로 연금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제혜택만을 조세지출로 분류
 - * 미국과 호주는 연금과 관련하여 불입금 과세, 운용 수익 과세, 연금 수령 시 비과세하는 것을 기준조세체계로 분류
- 귀속소득(imputed income)에 대한 비과세를 조세지출로 분류하는지 여부도 국가마다 다소 다르지만 벨기에와 핀란드 등 소수의 국가들만 조세지출로 분류하는 것으로 보고됨
 - 벨기에는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감소분을 조세지출로 보고하고 있으나 이를 이론적으로도 조세지출로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 핀란드는 부동산 가격의 3%를 조세지출로 분류하여 계산
- 개인소득과 법인소득 사이의 이중과세 공제를 조세지출로 분류해야 하는지도 여전히 검토대상이나 다수의 국가들이 이중과세에 대한 공제를 기준조세체계로 분류하고 있음
 - 예외적으로 네덜란드만이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공제분을 조세지출로 분류
- 상각 공제의 경우에도 광의의 자산에서 구체적으로 산출된 경제적 상각 공제를 기준조세체계로 보고 특정 투자목적으로 공제한 경우에만 조세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국가별로 그러한 판단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 벨기에, 포르투갈의 경우 모든 상각공제를 기준조세체계로 분류하고 있으나 아일랜드의 경우 모든 상각공제를 조세지출로 분류함
 - 호주,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등은 가속상각 공제 또는 특별상각 공제와 같이 상각허용규모가 표준상각의 규모보다 큰 경우를 조세지출로 분류함
 - 핀란드의 경우 기준조세체계로 분류하는 범위의 상각률을 규정하는 한편 미국의 경우 조세지출로 분류할 수 있는 범위의 상각률을 규정하는 등 일의적 기준은 찾아보기 어려움
- 기준조세체계의 정의는 과세베이스, 세율구조, 그리고 과세단위에 관한 관점 및 일반적인 조세조항에 관한 상당히 주관적 판단 요소를 수반할 수 있기 때

문에 OECD(2010a)는 “기준조세체계란 국가마다 다르고, 동일한 국가 내에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함

- 결과적으로 국가마다 상이한 기준조세체계의 정의는 국가마다 상이한 조세지출의 정의를 낳게 됨

□ 우리나라의 조세지출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조세체계 관련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OECD(1996)에 기초하고 있음

- 박기백·김우철·박명호(2007)는 각 세목별로 과세기간, 과세단위, 과세대상, 세율구조 등 우리나라의 개별세법에만 적용되는 판정기준이 존재하면 이를 우선 적용하고 이후 OECD(1996)의 기준을 적용

- OECD(1996)가 제시한 기준 중 특정성,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의 3대 기준을 주로 적용하고 조세지출 규모 추정가능성 및 조세지출 효과 상쇄가능성은 보조적으로 활용

- 김종면(2008)은 OECD(1996)의 기준조세체계의 정의와 조세지출의 특징을 그대로 원용하고 국가별 비교를 통해 국가별 조세지출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음

- 장재형·임재현(2015)은 OECD(1996)에서 제시된 특정성과 폐지가능성 기준에 사업적 목적성이라는 기준을 추가하여 조세지출의 범위를 재분류하고 조세지출 관리의 가능성, 즉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한 세수확보 가능성을 올바르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

- 장재형·임재현(2015)에 제시된 사업적 목적성은 “특정한 세액공제 등의 제도가 재정지출과 유사하게 사업적(programmatic)인 성격”을 의미함

- 여기서 제안된 사업적 목적성은 “조세제도의 효율적 운영과는 상관없는 특정한 정책목적을 위해 조세가 아닌 정책수단으로 대체 가능해야 한다”는 OECD 기준의 대체가능성과 다르지 않은 중복적 기준으로 판단됨

- 2013년 비과세감면 정비가 강화되면서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2013년 하반기 작성)부터 이전에 포함되지 않던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항목들이 다수 포함되면서 2012년 조세지출 규모가 이전에 비해 4조원가량 확대되며 시계열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추가적인 정비여력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을 가능성이 큼

-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2012년 하반기 작성)에는 2012년 국세감면액 잠정치 29.7조원 수준으로 보고함
-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2013년 하반기 작성)에는 2012년 국세감면액 실적치를 33.4조원으로 보고하였으며 전년도 조세지출예산서와 큰 차이를 보임
 - *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새롭게 포함된 대표적인 개별법상 조세지출 항목들로는 「부가가치세법」 제42조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2012년 2조 691억원), 「소득세법」 제51조의3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2012년 1조 1,891억원),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저축 소득공제(2012년 7,838억원) 등
- 장재형·임재현(2015)은 이처럼 넓게 정의된 조세지출의 범위를 정비가능한 항목들을 중심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에 큰 의의가 있음

나. 조세지출 식별방법

1) 개요

- 조세지출을 식별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 Craig and Allan(2001)의 세 가지⁴⁾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OECD 회원국들의 기준조세체계 및 조세지출을 조사하였으나 식별방식에 있어서도 국가별로 상이함
 - 호주, 벨기에, 캐나다, 핀란드,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이 개념적 접근(the conceptual approach)을 따르고 있음
 - 개념적 접근방법은 기준조세체계를 추상적이고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각국의 표준조세구조(normal tax structure)를 기준조세체계(benchmark)로 연결시키며 표준조세구조에서 벗어난 경우를 조세지출로 규정함
 - 다시 말해, 기준조세체계를 “특정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지 않는 중립적 가치를 지닌 조세제도”라는 추상적 개념으로 정의함
 - 준거법적 접근(the reference legal approach)을 따르는 대표적인 OECD 회원국은 오스트리아, 프랑스, 일본, 한국, 네덜란드임
 - 준거법적 접근 방법은 기준조세체계에 대한 특정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한 국가의 현행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대상 소득과 기본세율 등에 기초하여 특정 집단 또는 행위에 특혜를 부여하면서 세수 감소 규모를 늘리는 조항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기준조세체계라고 정의함

4) Craig and Allan(2001)

- 각 국가에서 기존에 존재하던 법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며 특정 조항을 분류하는 작업 또한 자의적임
- 그러나 개념적 접근을 기반으로 한 기준조세체계 또한 매우 자의적이며 이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없으므로 현재 법을 기반으로 한 접근법에 따라 기준조세체계를 성립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음
- Brixi et al.(2004)에 따르면, 준거법적 접근방법에서 조세지출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과세체계에서 벗어난 것으로서 특정 납세자 또는 경제행위에 국한되는 제한적인 조세제도로서 이에 대응하는 일반 규정이 존재해야 함
- 이러한 준거법적 접근방법으로 식별된 조세지출의 가장 큰 특징은 OECD에서 제시한 조세지출 특징 중 특정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우리나라와 일본은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세법에서 벗어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Craig and Allan(2001)은 분류하고 있음
- 유사보조금 접근방법(the analogous subsidy approach)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독일이 유일함
- 유사보조금 접근방법은 세금 감면액 산정 시 국가의 직접 보조금 정책과 명백하게 유사한 항목에 한정하여 그와 관련한 세금 감면만을 조세지출로 분류
- 이 경우 세금 감면(tax relief)이 직접 보조금(direct subsidy)을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OECD의 조세지출의 3대 특징 중 대체가능성과 밀접한 연관을 가짐
- 영국은 개념적 접근과 보조금 접근방법이 결합되어 있고, 미국은 개념적 접근과 준거법적 접근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Craig and Allan(2001)에 보고됨

〈표 III-2〉 OECD 회원국의 기준조세체계 접근방법 현황

개념적 접근	준거법적 접근	유사한 보조금 접근
호주, 벨기에, 캐나다, 칠레, 핀란드, 아일랜드, 멕시코,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일본, 한국, 네덜란드	독일

주: 1. 영국은 개념적 접근과 보조금 접근방법이 결합되어 있음
 2. 미국은 개념적 접근과 법적 접근을 모두 사용하고 있음

자료: OECD, "Choosing a Broad Base - Low Rate Approach to Taxation," *OECD Tax Policy Studies*, No. 19, OECD Publishing, 2010

<표 III-3> OECD 회원국의 기준조세체계 접근방법 및 정의

국가명	정의
Australia	- 개념적 접근방법을 모든 기준조세체계에 이용 - 개인과 기업과세 시 실무적인 이슈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정된 Haig-Simons에 기초한 개념적 접근방법 이용
Austria	- 준거법적 기준조세체계 이용
Belgium	- 개념적 기준조세체계 이용 - 의회에 매년 제출하는 보고서상에서 기준조세체계에 대한 정의는 없음
Canada	- 조정된 Haig-Simons 개념을 기반을 한 개념적 접근방법을 소득세와 법인세에 이용
Chile	- 개념적 접근방법 이용
Denmark	- 준거법적 접근방법 이용
Finland	- 조정된 Haig-Simons 개념을 기반으로 한 개념적 기준조세체계를 소득세 분석에 이용 - 준거법적 접근방법은 부가가치세와 상품세에 이용
France	- 준거법적 접근방법 이용
Germany	- 수혜산업에 대한 지출보조금과 유사한 것을 조세지출로 분류함 - 가구를 위한 세금 경감과 같은 항목은 기준조세체계의 일부를 구성하는바, 조세지출로 표시되지 않고 별도로 보여지게 됨
Greece	-
Ireland	- 기준조세체계에 대한 공적인 개념은 없지만 직접세에 한하여 개념적인 접근방법 이용
Italy	- 기준조세체계에 대한 공적인 개념은 없음
Japan	- 준거법적 접근방법 이용
Korea	- 준거법적 접근방법 이용
Mexico	- 개념적 접근방법 이용
Netherlands	- 준거법적 접근방법 이용
Portugal	- 개념적 접근방법 이용
Spain	- 개념적 접근방법 이용
Sweden	- 조정된 Haig-Simons 개념을 기반으로 한 개념적 기준조세체계를 소득세 분석에 이용 - 준거법적 접근방법은 부가가치세와 상품세에 이용
Switzerland	- 포괄소득과세 및 소비과세라는 두 가지의 개념적 접근방법을 이용 - 부가가치세는 오로지 소비과세에 의하여만 측정
United Kingdom	- 개념적 접근과 보조금 접근방법이 결합되어 있음
United States	- Haig-Simons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개념적 접근방법(정상과세구조)와 프로그램적 기능을 수행하는 세법에 있어서의 특별한 예외규정을 아우르는 준거법적 접근방법 이용

자료: OECD, "Choosing a Broad Base - Low Rate Approach to Taxation," *OECD Tax Policy Studies*, No. 19, OECD Publishing, 2010, pp. 51~53.

2) 개념적 접근방법과 준거법적 접근방법의 사례

□ (호주의 사례) 개념적 접근방법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호주의 기준조세체계는 1) 유사한 납세자들 또는 경제활동에 대해서 세제상의 ‘혜택’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고 2) 모든 납세자를 동일하게 대우하는 표준적인 과세체계로 정의하고 있음

○ 개인과 법인의 소득세, 소비세를 포함한 다양한 간접세에 대해서 세원, 세율, 이중과세방지, 과세단위, 과세기간 등과 관련된 기준조세체계를 설정하고 이에 벗어난 조세제도를 조세지출로 규정

- 개인과 법인의 소득세는 Schanz-Haig-Simons 소득의 정의를 바탕으로 소득창출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역사적 원가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음

• Schanz-Haig-Simons 소득은 한 기간 안에 소비할 수 있는 금액과 같은 기간 동안 미래의 소비를 위해 저축을 통해 증가한 순자산의 증가분의 합계

• 호주의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의 개념은 임금, 연금, 사업소득, 실현자본이익, 이자, 로열티, 배당, 동업소득, 정부 이전지출, 분배금, 부가혜택(fringe benefit) 등의 모든 유형의 소득을 포괄

* 개인의 경우 소득의 발생은 현금주의에 기초하고 법인의 경우 발생주의에 기초함

• 소유주가 사용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귀속소득은 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귀속임대료 수입을 위해 발생한 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님

•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그로스-업제도 및 세액공제제도, 누진구조의 개인소득세 세율체계, 저소득층 세액감면, 의료보험료, 일시적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부과금 등은 현행 제도를 기준조세체계로 간주

- 일반소비세를 포함한 간접세에 대한 기준조세체계는 연료, 담배, 주류, 자동차 등의 개별 품목별 및 일반 재화와 용역의 소비에 대한 기준조세체계를 과세대상, 세율, 과세단위, 과세기간에 따라 별도로 설정하고 있음

• 각 품목별로 과세대상 세원과 과세방식, 과세단위, 과세기간을 정의하고 있으나 구체적 세율보다는 종량세 방식 등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수준의 기준조세체계를 정의하고 있음

• 다만 일반소비세의 경우에만 10%의 세율로 과세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세수 감소를 초래하는 세제상의 혜택만이 조세지출의 유형으로 인식되기 쉬우나 호주의 경우 세수 증가를 가져오는 음(-)의 조세지출(negative tax expenditure) 항목들을 포괄하여 관리
 - 예를 들어, 최소기준의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특정 소득 수준을 초과하는 납세자들에게 적용되는 의료보험료 추가과세(Medical Levy Surcharge)의 경우 조세지출로 관리하고 있으나 세부담의 감소가 아닌 세부담의 증가를 초래하여 음(-)의 조세지출 항목으로 분류
 - 또한 자동차 구입에 대해서는 소비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고급차(luxury car)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음(-)의 조세지출로 분류

- (캐나다의 사례) 캐나다의 경우에도 개념적 접근방법에 의거하여 기준조세체계를 설정하고 이에 벗어나는 모든 조세제도를 조세지출로 정의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기준조세체계의 구성요소는 과세단위, 과세기간, 세원, 세율체계 등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짐
 - 경제적 관점과 조세정책의 관점에서 최적으로 간주되는 조세구조를 기준조세체계로 삼는 경우 보다 단순하고 주관적 판단과 해석의 개입이 적음
 - 캐나다의 개인 및 법인의 소득세 기준조세체계는 개인 또는 법인을 과세단위로 삼고 있으며 Haig-Simons 포괄적 소득개념을 기준으로 호주의 경우처럼 일부 항목은 소득으로 보고 있지 않음
 - 증여, 상속, 배우자 또는 자녀부양비 등 개인납세자간 화폐와 자산의 비시장적 이전, 비시장적 가사서비스, 자가거주와 같은 귀속임대료 등은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지만 근로·연금·투자·자본이득·정부이전 등은 소득으로 포괄함
 - 세율의 경우 기본인적공제를 포함하여 현행 세율과 소득구간을 기준조세체계의 세율체계로 정의하고 물가인상을 고려하여 소득구간의 조정도 포괄
 - 연간단위의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개인은 달력을 기준으로, 법인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과세
 - 개인과 법인을 분리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므로 법인소득세 과세 후 분배된 법인소득에 대한 개인 또는 법인단계의 과세에 있어서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그로스업 및 배당세액공제제도와 해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제도는 기준조세체계의 일부로 간주함

- 소비세의 경우 자국에서 최종소비되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수출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기준조세체계로 정의

- (미국의 사례) 미국의 기준조세체계는 개념적 접근방법과 준거법적 접근방법을 혼용하고 있는 것으로 Craig and Allan(2001)은 평가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접근방법은 유사하나 준거법적 접근방법으로 식별된 조세지출 항목은 개념적 접근방법하에서도 조세지출로 식별되지만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 차이가 있음
 - 미국의 조세지출제도는 소득과세제도에 한해서만 정의되고 있으며 Haig-Simons의 포괄적 소득개념에 기초하고 있으나 이러한 포괄적 소득개념이 실무 차원에서 실용적이지 않기 때문에 표준조세기준(normal tax baseline)과 연계하여 기준조세체계를 설정
 - Haig-Simons의 포괄적 소득개념에 따르면 미실현 자본이득도 발생주의에 따라 과세되어야 하지만 Surrey and Mcdaniel(1976)은 이러한 이상적 기준조세체계는 보다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적 소득개념인 실현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 현행 일반 조세제도인 표준조세기준과 개념적 기준조세체계를 연계하여 기준조세체계를 설정하고 1970년대 이후 사용하고 있음
 - 준거법적 접근방법에 따른 기준조세체계는 현행 조세제도에 근간하고 있다는 점에서 표준조세기준과 연계된 개념적 접근방법에 따른 기준조세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가 발생함
 - 법인세의 누진적 세율구조의 경우 표준과세기준과 연계된 개념적 접근방법하에서는 조세지출로 식별되지만 준거법적 접근방법에서는 일반적 적용가능성에 기초하여 기준조세체계로 분류됨
 - 2016년 조세지출예산서상에 최고세율 미만의 세율로 과세하는 미국의 법인세율 체계에 따른 조세지출 항목은 찾을 수 없으며 이는 준거법적 접근방법에 따른 결과임
 - 가속상각의 경우에도 개념적 접근방법에 따르면 조세지출로 식별되지만 일반적 적용가능성에 의해 준거법적 접근방법으로는 기준조세체계에 포함됨

- 임대주택에 대한 가속상각, 임대주택 이외의 건물에 대한 가속상각, 설비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등은 현행 조세지출예산서에 조세지출 항목으로 식별되어 있으며 이는 개념적 접근방법에 따른 식별결과임
- R&D에 대한 조세지원의 경우도 개념적 접근방법에 따르면 이러한 기업의 지출은 자본화되고 일정기간 동안 상각되어야 하므로 비용계상을 허용하는 현행 제도는 조세지출로 식별되지만 일반회계기준에 따라 비용 처리된다는 점과 상각기간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준거법적 접근방법에 의하면 기준조세체계로 간주됨
- R&D 비용처리제도는 미국 조세지출예산서상의 조세지출 항목으로 분류

- (우리나라의 사례) 우리나라의 경우 준거법적 접근방법을 통해 조세지출을 식별하고 있는 것으로 Craig and Allan(2001)은 평가하고 있으나 현재의 조세지출 항목들을 살펴볼 경우 일부 개념적 접근방법이 함께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예를 들어, 국민연금보험료와 같은 사회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포괄적 소득에 대한 과세를 기본조세체계로 보는 개념적 접근방법으로는 조세지출로 식별되지만 준거법적 접근방법으로는 기준조세체계로 볼 수 있음
 - 준거법적 접근방법하에서 조세지출로 식별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납세자 계층이나 경제활동에 국한되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이어야 하며 이에 대응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세규정이 존재해야 함
 - 국민연금제도 대상이 일반 국민으로 보편화되어 있고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과세되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공제하는 현행 제도 자체가 일반적인 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준거법적 접근방법하에서 동 제도는 기준조세체계로 분류됨
 -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도 준거법적 접근방법하에서는 기준조세체계로 분류되어야 함
 - Craig and Allan(2001)은 우리나라의 조세지출 항목들을 준거법적 접근방법에 의해 식별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준거법적 접근방법으로 식별할 경우 기준조세체계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조세지출 항목으로 분류되고 있음

- 이는 우리나라의 조세지출 식별방법이 개념적 접근방법을 함께 사용하고 있음을 시사함

2. 국가별 조세지출예산서 편제 비교

가. 영국

- 영국의 조세지출을 관련 정보는 HMRC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Tax expenditures and ready reckoners statistics”와 “Estimated Costs of Tax Reliefs” 그리고 National Audit Office에서 발표한 “Tax reliefs” 등이 있음
- “Tax expenditures and ready reckoners statistics”는 주요 감면 항목, 소액 감면 항목, 추계곤란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요 감면 항목의 경우에만 ① 조세지출 ② 구조적 감면 ③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는 감면으로 한 단계 더 세분하여 분류하고 있음
 - 대분류: “Estimated costs of the principal tax expenditure and structural reliefs” (주요 감면 항목), “Estimated cost of minor tax allowances and reliefs”(소액 감면 항목), 그리고 “Estimates of cost unavailable”(추계곤란 항목)
 - 주요 감면 항목의 경우 “Tax expenditure”(조세지출 항목), “Structural reliefs” (구조적 조세감면 항목), “Reliefs with Tax Expenditure and Structural Components”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는 감면 항목)로 한 단계 더 분류함
- HMRC의 “Estimated Costs of Tax Reliefs”에 따른 분류 방법⁵⁾
 - 조세감면 항목 중 해당 항목의 세제 효과가 특정 부류의 개인이나 활동, 제품을 돕거나 활성화시키는 경우 “조세지출 항목”으로 분류하기도 하며 통계 자료에서 이러한 분류법에 따라 항목을 분류함
 - 조세감면 항목 중 다수의 공제나 감면혜택은 조세구조상 필수불가결한 항목이므로 이는 “구조적 조세감면 항목”으로 분류함

5) HMRC(2016)의 내용 중 일부 발췌

- 조세감면과 조세지출에 대한 구분이 항상 명료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불가불 불명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항목들이 구조적 성격과 임의적 성격(조세지출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항목들을 “중간적 성격의 조세감면 항목”으로 분류함
- 영국의 경우 한국의 「조세특례제한법」에 준하는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세법상 감면조항들을 조세감면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어 이들을 관리 및 분류하는 특별한 근거법을 찾지 못함
 - National Audit Office에서 발표한 “Tax reliefs”에 따르면 HMRC는 조세감면에 대한 분류를 아직 완전히 체계화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
 - 예를 들어, 연금에 대한 조세지출 항목의 경우 구조적 성격(Structural Componenets)을 갖는 조세감면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조세지출(Tax expenditure)로 분류되어 있는 등 구분의 경계가 불명확함
 - 부수 추계 항목과 추계 곤란 항목의 경우 분류가 되어 있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어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를 제안함
- HMRC의 “Estimated Costs of Tax Reliefs” 보고서는 각 유형에 속하는 개별 항목들에 대한 정보를 하이퍼링크로 연결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보고서 말미에는 통계분석을 수행한 연구결과들의 링크를 제시하고 있음
 - 주요 조세감면 항목에 대한 추계, 소액감면 항목에 대한 추계, 추계곤란 항목에 속하는 개별 항목들을 찾아 볼 수 있는 웹주소가 하이퍼링크되어 있으며 각 링크를 클릭하면 pdf파일과 엑셀파일로 관련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제공
 - 감면제도에 대해 분석을 수행한 HMRC 발간물, 외부 연구결과, HMRC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논문들의 리스트와 해당 자료에 연결되는 하이퍼링크를 제시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하는 어떠한 정보도 찾을 수 없음
 - 영국의 경우 유사보조금 접근방법과 개념적 접근방법을 혼용하여 조세지출 항목을 식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조세지출 항목으로 구분되는 경우 유사한 재정사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으로 재정사업에 대한 정보는 전혀 제공하지 않음

나. 캐나다

- 캐나다의 조세지출보고서인 “Report on Federal Tax Expenditures”는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음
 - Part 1은 조세지출과 기준조세체계의 개념과 추정방법을 설명하고 있음
 - Part 2는 조세지출 추정치와 전망치 집계표와 관련 세제정보를 제시함
 - Part 3는 조세지출 항목별로 세부 정보를 제시함
 - 개별 항목별로 관련 세목, 수혜자, 감면방식, 법적 근거, 정책목표, 기준조세 체계에서 벗어난 이유, 예산분류, 정부의 유사 프로그램, 데이터 출처, 추정 방법, 전망방법, 수혜자 수
 - 예산 분류상 정부의 유사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으나 예산사업의 규모에 대한 정보는 제시되어 있지 않음
 - Part 4는 평가 관련 연구결과를 제시함
 - 2016년 보고서에는 근로소득장려세제에 대한 평가와 기부금세제의 변화에 따른 기부자의 행태변화에 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 2016년도 캐나다 조세지출보고서에서는 총 208개의 조세지출 항목을 정책목적에 따라 구조적 조세지출(Structural), 비구조적 조세지출(Non-Structural), 환불가능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로 구분하여 보고하고 있음
 - 구조적 조세지출은 기준조세체계 내에 존재하는 목적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들로서 비차별적 비용(지불능력)의 인식, 근로소득을 버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의 인식, 정부간 과세조정의 실행, 법률적 결정의 이행, 다년간에 걸친 조세부담 산정, 교육비용의 인식, 세무행정 및 납세순응비용 절감, 특정 경제환경에 대한 지원, 과세체계의 공정성 제고, 이중과세 방지, 유사 상황에 대한 조세중립성 강화 등의 정책목적에 갖고 있음
 - 비구조적 조세지출은 소득보조 및 조세지원, 투자진흥 및 유치, 교육투자 장려, 기타 경제적 목적 달성, 사회적 목적 달성, 고용촉진, 과세단위의 조정 및 확대, 저축장려, 기업활동 지원, 경쟁력 제고 등의 정책목적에 갖고 있음
 - 환불가능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GST/HST 세액공제 제외)는 정부회계 목적을 위한 직접지출로 취급되며 그 이유 때문에 별도의 범주로 분류

다. 미국

- 미국의 조세지출보고서는 예산서의 부속서류 중 하나인 예산분석서(Analytical Perspectives) 제14장에 수록
 - 조세지출이란 비과세, 감면, 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인하여 세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정의
 - 소비의 합에 특정 기간의 순부의 증가를 합한 것으로 정의되는 포괄소득세 기준을 사용
 - 각 조세지출 측정치는 다른 세법 조항이 불변이라는 중요한 가정하에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추정되고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음
 - 기준조세체계(the baseline tax system)로 개념적 접근방법에 기초한 표준조세기준(the normal tax baseline)과 준거조세법 기준(the reference tax law baseline)을 이용

- 조세지출예산서는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별 각 세목 내 예산분류상의 기능에 따라 구분되어 작성
 - 예산상의 기능별 분류는 국방, 국제교류, 일반과학 및 기술, 에너지, 천연자원과 환경, 농업, 산업 및 주택, 운송, 지역개발, 교육·훈련·고용 및 사회사업, 의료, 소득보장, 사회보장, 보훈, 일반보조, 이자소득으로 구분
 - 각 조세지출 항목이 기준조세체계에서 벗어난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이후 예산상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해당하는 개별 제도들의 조세지출 규모와 전망치를 제시
 - 일부 주요 항목들에 대해서는 소득구간별 조세지출 신청건수와 규모를 구분하여 제시함

- 미국의 경우 조세지출과 기준조세체계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항목들에 대한 별도의 용어나 관리체계는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하는 추가적인 정보도 제시되어 있지 않음

라. 호주

- 호주의 Tax Expenditure Statement는 2016년 기준 290개의 조세지출 항목을 보고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150개 항목의 조세지출 규모를 제시하고 있음. 3개의 장과 3개의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 I 장은 보고서의 구성과 기본적인 조세지출 규모 추정방법 및 해석상의 주의점 등을 소개하고 있음
 - 제 II 장은 기본적으로 세수손실법으로 추정한 각 항목별 조세지출 규모를 과거 5년치 실적치와 당해연도를 포함한 3개년 추정치를 조세지출 유형, 추정치의 신뢰도, 도입연도, 관련 법규, 그리고 간략한 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제시
 - 제 III 장은 10개 항목의 조세지출 규모를 세수증가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세수손실법에 따른 추정치와 다른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부록 A에서 연금 관련 기준조세체계는 포괄적 소득과세방식을 준용하여 기여금 납입, 운용수익, 연금수령의 3단계의 시점 중 납입과 운용 단계는 과세하고 연금혜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을 제시하고 연금기여금의 사용자 부담에 대한 소득공제가 조세지출로 분류되는 이유를 설명
 - 부록 B는 각 세목별 기준조세체계에 대한 설명과 추정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부록 C는 전년도 세법개정에 따른 조세지출의 변화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음

- 호주의 경우 예산분류상 조세지출 항목의 구분 등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하는 정보는 찾아볼 수 없음

마. 아일랜드

- 아일랜드의 경우 OECD의 조세지출 정의를 준용하여 2014년부터 조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으며 동 보고서는 크게 세 개의 장으로 구성
 - 제1장에서는 아일랜드의 조세지출의 정의와 매해 재무부에서 직접 수행하는 조세지출 평가에 대해서 소개

- OECD 기준을 준용하는 아일랜드의 조세지출은 기준조세체계하에서 부담해야 할 세금을 특정 납세자에 한하여 줄여주거나 이연해주는 것임을 설명
 - 2015년 조세지출보고서에는 8개의 조세지출 평가보고서가 수록되어 있으며 이 중 3개는 요약본이라는 설명을 제시
 - 제2장은 8개의 조세지출 평가보고서를 제시하고 있음
 - 각 평가보고서는 15쪽 내외의 간략한 형태의 보고서로서 해당 조세지출이 도입 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
 - 하나의 평가보고서가 지나치게 긴 경우 1~2쪽의 요약문만 제시하고 있으며 2015년 보고서에는 3편의 요약문이 게재되어 있음
 - 제3장은 7개 세목에 대한 조세지출 항목의 감면방법, 간략 제도설명, 수혜자 수, 세수손실법에 의한 조세지출 규모를 제시
 - 조세지출규모가 추정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간략히 서술하고 있으며 조세지출 규모는 단년도에 한하여 제시됨
- 조세지출과 기준조세체계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항목에 대한 용어나 설명은 없으며 재정지출과의 연계를 위한 어떤 정보도 제시되어 있지 않음

마. 프랑스

- 프랑스 조세지출예산서상 조세지출의 개념은 일반적인 기준조세체계를 납세자에게 적용하였을 때와 비교하여 국가의 세입 손실이 수반되는 입법 또는 규제조항을 의미함
- 경제적 인센티브 또는 사회적 평등을 목적으로 납세자 또는 거래의 특정 범주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두는 조세 규칙의 예외적 조항으로서 근본적으로 프랑스 세제의 표준을 벗어나는 법률임을 의미함
 - 조세지출은 절대 불변으로 정의될 수 없으며, 발생한 사실을 관찰하고 입법자의 의도를 사후적으로 해석한 결과로 정의되므로 조세지출의 범위는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음
 - 프랑스의 최근 조세지출 재분류 작업의 결과는 2009년 조세지출예산서부터 반영됨

- 프랑스 조세지출예산서는 크게 여섯 개의 장으로 편제되어 있음
 - 제I장은 조세지출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으며 간략히 세목별 조세지출 분류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프랑스 조세지출예산서는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 조세지출을 포괄함
 - 세목별 조세지출 분류기준에 대한 설명에는 세목별로 조세지출 항목으로 보지 않는 제도들을 명시하고 있음
 - 소득세의 누진성과 재분배 원칙을 위한 세금감면제도,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항, 과세이연, 우리나라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유사한 주거용 주택양도에 따른 자본이득 공제 등은 조세지출로 간주되지 않음
 - 소정의 요건을 갖춘 소규모 법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15%의 법인세 경감세율, 이중과세 방지 조항, 일반적인 감가상각, 과거 손실의 이월공제 등은 조세지출로 간주되지 않음
 - 부가가치세의 경우 20%의 표준세율로 과세되지 않지만 필수재 성격의 재화와 용역에 대한 일반 대중의 소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23개 품목의 경감세율 적용항목들은 조세지출로 분류되지 않음
 - * 식음료품·서적 등 5.5%, 예술작품 및 골동품 등 10%, 해외 프랑스령 공공주택 양도이익 등 2.1%의 경감세율 적용 등
 - 제II장은 예산분류기준별 및 세목별 조세지출 총규모를 비롯한 조세지출 규모 증감 이유 등 주요 현황을 제시
 - 제III장은 전년도 조세지출 신규 도입 및 폐지항목 등의 주요 변경사항을 제시하고 제IV장은 당해 연도 재정법안에서 제안된 신규 도입/폐지 및 조세지출 규모 증가/감소 항목들에 대한 설명을 제시
 - 제V장은 개별 조세지출 항목들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제시
 - 항목별 조세지출 규모, 수혜자 수, 예산사업과의 연계 정보, 제시된 조세지출 규모 추정방법 및 신뢰도, 해당 조세지출 항목의 도입·개정·일몰연도 등
 - 제시한 조세지출 규모의 산정 방법은 ① 세금 신고 자료를 이용하여 과세기반을 재구성하여 추정 ② 세금 이외의 데이터에서 과세기반을 재구성하여 추정 ③ 시뮬레이션으로 분류하고 있음
 - 추정된 규모의 신뢰도는 ① 매우 높음 ② 높음 ③ 어렵짐작 ④ 정량화 불가능으로 분류하고 있음

- 제Ⅵ장은 부록으로서 조세지출 항목별 법조문, 수혜자 유형별 조세지출 항목, 재정지출 목적 및 프로그램별 조세지출 항목 분류 등을 제시
 - 재정지출 목적의 분류는 우리나라와 다소 다르지만, 프랑스의 경우 정책목적 을 기준으로 정책목적이 유사한 재정지출 목적 및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조 세지출 항목들을 분류하고 해당 정보를 제시
 - 우리나라의 경우 수혜자의 유형을 개인(중저소득자, 고소득자)과 법인(중소, 중견, 상호출자제한기업, 기타) 등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있으나 프랑스의 경 우 ‘가계’ 또는 ‘기업’으로만 이분하고 수혜자 수를 공개하고 있음

3. 조세지출 규모 및 항목 비교

가. 조세지출 규모 국제비교

-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조세지출 규모는 35.9조원으로 GDP 대비 2.3% 수준이며 미국, 캐나다, 영국 등과 비교하여 크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의 GDP 대비 조세지출 비중을 보이는 국가는 2.27%의 아일랜드이고 3.66%의 프랑스가 세 번째로 낮은 국가임

<표 III-4> 주요 국가의 GDP 대비 조세지출 비중 비교: 2015년 기준

(단위: 자국화폐, %)

국 가	조세지출규모 ¹⁾ (A)	GDP ²⁾ (B)	GDP 대비 조세지출 비율(A/B)
한국(억원)	359,017	15,585,916	2.30
미국(백만달러)	1,232,353	17,946,996	6.87
캐나다(백만CAD)	225,260	1,983,288	11.36
영국(백만£)	203,200	1,870,693.0	10.86
아일랜드(백만EUR)	5,815	255,815.2	2.27
프랑스(백만EUR)	78,337	2,139,964.0	3.66
호주(백만AUD)	135,605	1,609,992.0	8.42

- 자료: 1) 미국: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Analytical Perspectives*, 각 연도
 영국: HMRC, *Estimated cost of tax reliefs, expenditures, & allowances*
 캐나다: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Tax Expenditures and Evaluations*, 2015.
 아일랜드: Department of Finance, Ireland, *Report on tax expenditures*, 2015
 한국: 기획재정부, 『2017 조세지출예산서』, 2016.
 프랑스: République Française, *PLF pour 2016: Evaluations des Voies et Moyens*, 2015.
 호주: The Treasury, Australia, *Tax Expenditure Statement 2015*, 2016.
 2)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한국, 프랑스, 호주: Data extracted on 14 August 2016 16:15 UTC (GMT) from OECD.Stat
 미국: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CD>

- 미국 6.87%, 호주 8.42%, 영국 10.68%, 캐나다 11.36%로 우리나라 GDP 대비 조세지출 비중의 3~5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일부 국가들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조세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은 아니라는 점과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목적을 위해 조세지출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는 점을 시사함

나. 조세지출 항목 비교

- 우리나라 조세지출 항목들 중에서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내역’에 포함된 항목들과 유사한 제도들이 다른 국가들의 조세지출예산서 또는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고자 함
 - 각 국가별로 기준조세체계를 설정하는 방법과 조세지출 식별방법이 서로 다르고 각 국가가 처한 경제 및 사회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조세지출의 범위나 항목을 일괄적으로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우리나라 조세지출예산서의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내역’에 포함된 항목들은 과거 기준조세체계의 성격과 조세지출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어서 ‘비망 항목’으로 구분되었던 제도들이므로 여타 국가에서는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이 제도들에 대한 향후 관리 기초에 대한 시사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우리나라 조세지출 항목 중에서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항목들과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지 여부 및 각 국가의 조세지출예산서 또는 보고서상의 조세지출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표 III-5>와 같이 20개 항목에 대해 유사한 제도를 찾을 수 있었음
 - 정확히 동일한 제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제도의 정책목적과 유사한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을 각 제도별로 파악한 결과임
 - 이외에 19개 여타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항목들은 다른 국가들의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었음
 - 폐광지역 카지노에 대한 개별소비세 저율과세, 방송·신문·교육용 고급사진기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항공기, 반도체 제조·수리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

면 등을 비롯하여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반영된 제도인 것으로 추정됨

○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많을수록 해당 제도는 조세지출로 식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소수이거나 없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항목이 조세지출이 아닌 기준조세체계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념할 필요

- 상속세 관련 감면 항목의 경우 기업상속공제와 유사한 제도는 영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영농상속공제의 경우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이러한 비교결과가 기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가 다른 국가에서는 기준조세체계로 분류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 다만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호주와 캐나다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도들이 기준조세체계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음
- 이처럼 각 국가의 개별세법 체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조세지출예산서 항목만을 비교한 결과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우리나라의 기준조세체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우리나라만의 조세지출 분류기준을 확립할 수 있으나 그러한 기준조세체계에 대한 공식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향후 개선될 필요

○ 우리나라 조세지출예산서는 동 제도를 어떠한 기준으로 조세지출로 분류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세목별 기준조세체계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OECD의 기준을 언급하고 조세지출의 범위를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출,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경과조치 항목들로 구분하고 있지만 각 항목들이 왜 조세지출로 분류되었는지는 파악하기 쉽지 않음
- 특히,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조세지출로 분류되는 이유를 간략하게나마 설명하고 있음

○ 박기백 외(2007)가 최초로 우리나라 기준조세체계를 정립하고 조세지출을 분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기준조세체계의 성격과 조세지출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비망항목으로 구분하는 분류방식을 제안했으나 2014년부터 비망항목을 모두 조세지출로 포괄하게 됨

- 결과적으로 분류체계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기준조세체계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고 타당한 근거 없이 조세지출 항목이 늘어나 비과세감면 정비의 대상이 확대되고 조세지출 규모의 축소 여지가 큰 것으로 잘못 인식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세지출예산서 개편방안을 모색하기에 앞서서 우리나라 기준조세체계를 세목별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표 III-5〉 우리나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항목 비교

우리나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항목	유사한 제도를 조세지출로 분류한 국가
장애인, 환자수송, 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골프선수의 골프장 이용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아일랜드
교육·과학·문화관련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캐나다
기업상속공제	영국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프랑스, 호주
법인기부금의 손금산입	미국, 캐나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비과세	아일랜드, 프랑스, 호주, 미국, 캐나다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	미국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이자소득 비과세	미국, 캐나다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프랑스, 미국, 캐나다
장애인 추가공제	아일랜드, 프랑스, 미국, 캐나다
한부모 추가공제	아일랜드, 프랑스, 캐나다
연금보험료공제	호주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특별공제	호주, 미국
자녀세액공제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호주, 미국, 캐나다
연금계좌세액공제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호주, 미국, 캐나다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호주, 아일랜드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호주, 미국, 캐나다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프랑스, 호주, 미국, 캐나다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호주, 미국, 캐나다

자료: 저자 작성

4. 우리나라 조세지출 항목들에 대한 재검토

- 앞에서 간략히 언급했던 바와 같이, 조세지출예산서가 제공하는 정보가 보다 국가재정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맞는 조세지출 항목들을 설정하고 적절한 추정방법으로 추정 및 전망이 수행될 필요
 - 특히 비과세감면 정비를 하나의 중요 국정과제로 수행하는 경우 정비 가능한 비과세감면제도들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정책의 성과를 보다 공정하게 평가하고 향후 계획에 환류시킬 수 있음
 - 현재의 조세지출예산서에 제시되어 있는 항목들 중 일부는 강한 기준조세체계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정비가 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비 가능한 조세지출 항목으로 인식되고 있음
 - 일부 항목은 기준조세체계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수혜자가 정부기관이어서 조세지출 여부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이러한 항목들은 대체적으로 인적공제 또는 필요경비적 성격의 항목들로서 많은 납세자들이 활용하는 제도이며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결과적으로 이 항목들의 조세지출 규모 증가에 의해서 2013년 이후 추진해 온 비과세감면 정비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세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여전히 정비 여력이 큰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기도 함
 - 이는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라는 중요 국정과제의 추진 방향 및 정책결정과 관련하여 잘못된 의사결정을 초래하여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기준조세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방대한 작업이므로 본 연구 이후에 별도의 과제로 수행될 필요가 있으나 우선 OECD가 제시하고 있는 조세지출의 특징들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조세지출 항목들을 평가하고 조세지출 성과관리제도의 대상으로 삼을 조세지출의 범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중요 국정과제로 수행해왔으나 그 한계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 만약 현행 조세지출 항목 중에서 조세지출로 볼 수 없거나 비과세감면 정비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현재의 조세지출 규모나 국세감면율은 비과세감면 정비의 여력을 과대추정하고 있는 것임
 - 보다 올바른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현행 조세지출제도들을 다시 검토하고 향후 우리가 정비의 대상으로 삼을 조세지출 항목들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비여력을 보다 엄밀히 진단할 필요가 있음
- OECD가 제시하고 있는 특정성,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의 기준을 활용하여 각 조세지출 항목들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관리대상 배제항목, 잠재적 관리대상 조세지출,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지출로 분류하고자 함
- 관리대상 배제항목은 기준조세체계로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특정성이 결여되어 있고, 다른 정책수단으로 대체하는 것도 어려우며, 폐지가능성도 낮은 경우임
 - 잠재적 관리대상 조세지출항목은 특정성이나 대체가능성 중 하나가 충족되지 않은 항목들로서 해당 조세지출 규모나 각 제도의 수혜자 그룹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필요시 해당 제도의 정비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
 - 적극적 관리대상 항목들은 특정성과 대체가능성 요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로서 이해관계자들의 조세저항에 의해 폐지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도 여타 두 요건을 충족하면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
- 이러한 재평가와 조세지출 범위의 재설정에는 관리대상 조세지출의 규모와 국세감면율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시하고 비과세감면 정비의 여력과 한계를 보다 명확히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됨
- 보다 엄밀한 조세지출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각 세목별 기준조세체계가 무엇이고 이 기준조세체계에서 벗어난 여러 항목들 중 어디까지를 조세지출로 볼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는 경우 우리나라 고유의 조세지출을 정의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조세지출예산서에 제시되어 있는 조세지출 항목들을 본 연구에서 재분류하고 재설정하는 대상으로 삼고자 함

가.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검토

-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는 비망항목(memorandum item)으로 구분하여 포함하였고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부터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항목별 내역”으로 재편하였으나 이들은 엄밀히 구분하여 “조특법상 조세지출 항목별 내역”에 포함된 항목과 달리 적극적 관리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과거 비망항목을 구분하여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한 주요 목적은 해당 제도들이 조세지출의 특성과 기준조세체계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어서 적극적 관리의 대상이라기보다는 특이사항이 발견되는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데 있었음
 - 2013년 하반기 2014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로 제출된 조세지출예산서에는 이러한 비망항목들을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항목별 내역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고 조특법상 조세지출 항목별 내역에 이어 공개함으로써 조세지출의 성격만을 갖고 있는 비과세감면제도로서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지출항목으로 오해할 여지가 생김

-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지출의 범위 및 작성 과정에서 조세지출 관리 강화를 위해 그동안 조세지출예산서 작성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항목들을 추가했으나 이 항목들도 조세지출 성격만 갖고 있는지 아니면 기존의 비망항목들처럼 기준조세체계의 성격을 갖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는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부가령§84①), 연금저축 소득공제(소득법§51③),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소득법§51의3) 등 항목을 신규 반영
 - 이후 일부 항목들의 정비를 통해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는 총 39개의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항목이 존재
 - 과거의 분류기준에 따르면 이들은 비망항목으로서 기준조세체계의 성격과 조세지출의 성격을 모두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III-6> 『2017년 조세지출예산서』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39개 항목

	조세지출 내역	법률	조문
1	폐광지역 카지노에 대한 개별소비세 저율과세 등	개소	1③;19의2_3
2	장애인, 환자수송, 영업용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개소	18①3
3	방송·신문·교육용 고급사진기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개소	18①12
4	골프선수의 골프장 이용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개소	19의2_1·2
5	항공기, 반도체 제조·수리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관세	89①
6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관세	90①4
7	장애인용품 관세 감면	관세	91_4·5
8	환경오염방지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관세	95①1·2
9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관세	95①3
10	소액담배·특수제조용 담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	26①10
11	교육·과학·문화 관련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제	부가	27_3
12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부가	42
13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부가	46
14	가업상속공제	상증	18②1
15	영농상속공제	상증	18②2
16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증	23의2
17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52의2
18	법인기부금의 손금산입	법인	24
19	전답 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	소득	12_2가
20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등	소득	12_2다·라
21	대학교원·연구기관 종사자가 받는 연구보조비·활동비 비과세	소득	12_3자
22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비과세	소득	12_3거
23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	소득	12_3너
24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로 인한 급여 비과세	소득	12_3더
25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	16①9 (소득(령)25①)
26	경로 우대자 추가공제	소득	51①1
27	장애인 추가공제	소득	51①2
28	부녀자 추가공제	소득	51①3
29	한부모 추가공제	소득	51①6
30	연금보험료 공제	소득	51의3
31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소득	51의4
32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특별공제	소득	52④·⑤
33	기장세액공제	소득	56의2
34	자녀세액공제	소득	59의2;(구) 소득51①4·5; (구)소득51의2
35	연금계좌세액공제	소득	59의3;(구) 소득51의3①2
36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소득	59의4①; (구)소득52①
37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소득	59의4②; (구)소득52②
38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	59의4③; (구)소득52③
39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소득	59의4④; (구)소득52⑥

- 이러한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항목으로 분류되는 제도들을 특정성,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의 OECD 기준을 준용하여 검토하고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지출 여부를 판단하고 향후 조세지출예산서 작성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OECD 기준을 준용하여 각 항목의 특정성,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을 검토할 때 가장 중점을 두고자 하는 기준은 특정성과 대체가능성임
 - 일반적으로 조세지원제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에서도 정치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개입으로 인해 한 번 도입되면 쉽게 폐지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특정성과 대체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낮은 폐지가능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지출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 폐지가능성의 경우 조세제도의 개편을 통해 행정적으로 폐지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데,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오던 특정성과 대체가능성을 가진 제도가 정치과정상의 이유로 폐지되지 않는다는 현상에 기초하여 조세지출로 분류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특정성과 대체가능성 중 한 가지와 폐지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잠재적 관리대상 조세지출로 보고 과거의 비망항목처럼 지속적으로 그 추이를 살펴보며 필요시 해당 제도의 정비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폐지가능성은 갖고 있더라도 특정성 또는 대체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잠재적 관리대상 조세지출로 분류할 필요
 - 특정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납세자 계층, 특정 산업, 특정한 경제행위 등에 의해 제도 수혜대상자가 특정되지 못하는 일반적인 제도로 볼 수 있기 때문임
 - 대체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특례제도는 특정한 정책목표를 위해 조세지원 이외에 예산사업 등 다른 정책수단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일 수 있음
 -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기준조세체계의 성격이 매우 강한 제도로서 실질적으로 관리대상 조세지출 항목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관리대상 배제) 노후소득 보장 지원을 위한 공적연금 및 사회보장제도 보험료 공제, 보험료 특별세액(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인적 추가공제항목들을 관리대상 조세지원제도로 간주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

-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 대한 사용자부담 보험료 및 개인 부담금 등의 법정 사회보장 기여금은 법에 의해 강제된 지출금액으로서 특정성, 대체가능성, 그리고 폐지가능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므로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국민연금제도를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대상자 확대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보편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정책대상자이므로 특정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동 제도를 보완한 기초노령연금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제도를 재정사업 등과 같은 여타 정책수단으로 대체하거나 폐지할 가능성이 없음
 - 결과적으로 동 제도들은 조세지출이 가져야 할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데 현재 조세지출로 분류되어 조세지출 총규모 확대만 초래하고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 가능성이 실제보다 큰 것으로 잘못 인식될 여지가 있으므로 관리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장성 보험료 특별세액공제의 경우 많은 납세자가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특정성을 갖지 못하고 다양한 유형의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예산사업으로 수행하기도 쉽지 않으므로 대체가능성도 없음
 - 자동차보험과 다양한 손해보험 또는 실손보험 가입자 확대 등으로 인해 폐지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제도를 관리대상 항목으로 보기 어려움
- 자녀세액공제는 2013년까지는 소득공제항목이었으나 고소득계층의 세부담 확대를 위해 세액공제의 형태로 지원방식이 변경된 항목으로서 폐지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축소 등 정비대상 항목으로 보기 어려움
 - 자녀세액공제는 가족을 구성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납세자에 대한 지원 제도로서 보편적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특정성이 강하다고 보기 어려움
 -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고려하여 다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크게 책정되어 있는 등 정책적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양육비 지원제도와 같은 예산사업으로 대체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산사업과 보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대체가능성도 미약함

- 한부모 추가공제 등과 같은 인적 추가공제의 경우 관련 예산사업과 보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대체가능성도 미약하고 납세자 개인의 특정성과 연계하기에 부적절하므로 관리대상에서 배제할 필요
 - 경로 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 추가공제 요건은 납세자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필연적이거나 외생적으로 주어진 요건이라는 측면에서 납세자 개인의 특정한 경제활동과 연계하는 특정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해당 추가공제 요건은 납세자 개인이 특정한 행위를 선택함으로써 충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념할 필요
 - 경로 우대자 추가공제, 장애인 추가공제, 부녀자 추가공제, 한부모 추가공제 등의 인적 추가공제의 경우 노령연금, 장애인 지원사업, 여성 근로자 지원사업, 결혼가정 지원사업 등의 확대를 통해 대체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님
 - 그러나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를 행정적으로 파악하고 해당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 수준을 파악하여 지원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보다 더 큰 행정비용을 초래하므로 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스스로 소득세 신고과정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대체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
 - 총 8개 항목이 관리대상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음
 - 이 항목들은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들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 부담금에 대한 비과세, 연금보험료 공제,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경로우대자·부녀자·한부모·장애인 추가공제 등이 해당됨
- (잠재적 관리대상) 특정성 또는 대체가능성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폐지가능성이 없는 항목들은 잠재적 관리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추이를 지켜보며 필요시 정책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항목으로 분류되고 있던 항목들 중 이 유형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기준조세체계 보완, 기부문화 촉진, 필요경비의 성격을 가짐
 - 우리 사회가 처한 노인빈곤 문제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제도와 보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적연금 활성화 지원제도의 경우 특정성은 갖고 있지만 재정사업으로 완전 대체하기 어려우므로 연금계좌세액공제제도의 경우도 잠재적 관리대상으로 포함할 필요

- (기준조세체계 보완) 「관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의 기준조세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서 특정성은 갖고 있으나 조세지원 이외의 정책수단으로 대체하기 쉽지 않고 폐지가능성도 낮은 제도들이 이 유형에 해당함
 -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공기, 반도체 등의 제조 및 수리용품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는 제도는 완제품의 관세율보다 부품의 관세율이 더 높은 문제를 보완
 -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매입세액 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자로부터 구매한 농수산물 등에 대해 일정 수준의 공제를 허용하는 제도로서 전 단계 매입세액공제 방식의 부가가치세 기준조세체계를 보완
- (기부문화 촉진) 민간의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로서 기부라는 특정행위를 한 납세자의 세부담을 낮춰주므로 특정성 기준은 충족하나 이를 재정사업 등 여타 정책수단으로 대체하기 어렵고 폐지가능성도 낮으므로 잠재적 관리대상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
 - 개인소득세 납세자와 법인세 납세자 중 기부행위를 한 경우 해당 세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개의 항목이 이에 해당
- (필요경비 공제) 인별과세체계에서 납세자의 필요경비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은 기준조세체계의 성격이라 할 수 있으며 특정성과 폐지가능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부양가족에 대한 비용지출 공제는 조세지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잠재적 관리대상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
 -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가 이 유형에 해당함
 -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정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유사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대체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됨
 - 교육비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는 성년의 자녀들에 대한 대학교육비 공제는 조세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연금세액공제제도는 대체가능성과 폐지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므로 잠재적 관리대상으로 분류하여 동 제도를 지속 관찰하되 적극적으로 정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국민연금이 충분히 성숙되어 있고 소득대체율이 높은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지출 항목으로 볼 수 있지만, 노인빈곤율이 사회

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해당 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산사업으로 완전히 대체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 공적연금제도와 달리 사적연금제도의 가입 여부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특정성은 확보된 것으로 평가됨

□ 이외에 장애인 관련 감면제도의 경우 특정성 및 대체가능성이 상당 수준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극적 관리대상으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나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보다 큰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때 정비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잠재적 관리대상으로 분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관세법」에 따른 장애인용품 등의 관세 면제,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장애인, 환자수송, 영업용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그리고 「상증법」에 따른 장애인 수증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를 분류 원칙에 따라 특정성과 대체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적 관리대상으로 분류함
- 특히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장애인, 환자수송, 영업용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제도는 정책적 성격이 더욱 강한 환자수송 및 영업용 승용차와 함께 묶여 있고 동 제도의 주요 수혜대상은 영업용 승용차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극적 관리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표 III-7>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분류결과

조세지출 내역	법률	조문	특정성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	분류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	소득	12_3너	N	N	N	관리대상에서 제외
연금보험료 공제	소득	51의3	N	N	N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소득	59의4①;(구)소득52①	N	N	N	
자녀세액공제	소득	59의2;(구)소득51①4·5;(구)소득51의2	N	Y/N	N	
경로 우대자 추가공제	소득	51①1	N	Y/N	N	
장애인 추가공제	소득	51①2	N	Y/N	N	
부녀자 추가공제	소득	51①3	N	Y/N	N	
한부모 추가공제	소득	51①6	N	Y/N	N	
항공기, 반도체제조·수리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	관세	89①	Y	N	N	잠재적 관리대상
농·수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부가	42	Y	N	N	
법인기부금의 손금산입	법인	24	Y	N	N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소득	59의4④;(구)소득52⑥	Y	N	N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소득	59의4②;(구)소득52②	N	Y	N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	59의4③;(구)소득52③	N	Y	N	
연금계좌세액공제	소득	59의3;(구)소득51의3①2	Y	Y/N	N	적극적 관리대상
전담 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	소득	12_2가	Y	Y	Y	
폐광지역 카지노에 대한 개별소비세 저율과세 등	개소	1③;19의2_3	Y	Y	Y	
장애인, 환자수송, 영업용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개소	18①3	Y	Y	N	
방송·신문·교육용 고급사진기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개소	18①12	Y	Y	Y	
골프선수의 골프장 이용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개소	19의2_1·2	Y	Y	Y	

조세지출 내역	법률	조문	특정성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	분류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관세	90①4	Y	Y	Y	
장애인용품 관세 감면	관세	91_4·5	Y	Y	N	
환경오염방지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관세	95①1·2	Y	Y	Y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관세	95①3	Y	Y	Y	
소액담배·특수제조용 담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	26①10	Y	Y	Y	
교육·과학·문화 관련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제	부가	27_3	Y	Y	Y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부가	46	Y	Y	Y	
가업상속공제	상증	18②1	Y	Y	Y	
영농상속공제	상증	18②2	Y	Y	Y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증	23의2	Y	Y	Y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52의2	Y	Y	Y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등	소득	12_2다·라	Y	Y	Y	
대학교원·연구기관 종사자가 받는 연구보조비·활동비 비과세	소득	12_3자	Y	Y	Y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비과세	소득	12_3거	Y	Y	Y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로 인한 급여 비과세	소득	12_3더	Y	Y	Y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	16①9(소득(령)25①)	Y	Y	Y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소득	51의4	Y	Y	Y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특별공제	소득	52④·⑤	Y	Y	Y	
기장세액공제	소득	56의2	Y	Y	Y	

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출 항목 검토

- 190개 조특법상 조세지출 항목에 대해서도 앞서 사용한 OECD의 세 가지 기준인 특정성,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을 검토하고 각 항목을 관리대상에서 제외, 잠재적 관리대상, 적극적 관리대상으로 구분하여 관리의 실익이 있는 항목들을 중심으로 관리할 필요
 - 우리나라의 조세지출 식별방법은 준거법적 방법과 개념적 방법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 항목들은 준거법적 방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조세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그러나 현행 조세지출예산서에 조특법상 조세지출 항목으로 발표되고 있는 개별 항목들 중에서 관리의 실익이 낮은 항목들이 있으므로 이들을 구분함으로써 비과세감면 정비 여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한계를 파악할 필요
 - 현재 시행 중인 조특법상 조세지원제도들은 준거법적 식별방법에 따르면 조세지출로 보고 적극적 관리대상으로 삼아야 하지만, 개념적 식별방법에 따르면 주관적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지출로 보기 어려운 항목들이 존재
 - 조특법상 조세지출 항목들 중에서 일부 항목들이 대체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이러한 경우는 조세제도 이외에 여타 제도로 해당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로서 대표적인 사례가 과세이연 또는 이월과세의 형태로 해당 세액을 미래에 징수하는 제도들임
 - 또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의 경우 환급형 조세지출의 형태로 관리하고 있으나 정책적으로 제도의 확대 가능성이 있을 뿐 폐지가능성은 없고 재정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통상적인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지출로 보기 힘든 측면이 존재함
 - 이러한 제도들은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지출로 간주하기보다는 그 추이를 살펴보면서 필요시 대응하는 잠재적 관리대상 조세지출로 구분할 필요
- 190개 조특법상 조세지출 항목 중에서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항목은 없으며 41개 항목의 경우 잠재적 관리대상 조세지출 항목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판단됨

- (구조조정) 이들 항목들의 대부분은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미실현 소득에 대한 세액을 과세이연하거나 원활한 구조조정 및 사업 전환을 위해 실현 소득에 대한 세액을 이월과세하는 제도들로서 궁극적으로 미래의 특정 시점에서 징수됨
 - 과세이연 또는 이월과세의 형태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제도들은 쉽게 폐지되기도 어렵지만 해당 세액의 납세시기만 연기해주는 제도로서 동일한 효과를 갖는 여타 정책수단을 찾기 어려워서 대체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총 34개 항목의 조세특례제도가 이와 같은 이유로 잠재적 관리대상 조세지출로 구분됨
- (국제외교) 국제외교 관례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외교관용 승용차 및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및 환급제도는 폐지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수단으로 대체하기도 쉽지 않음
 - 총 2개의 조세특례제도가 이와 같은 이유로 잠재적 관리대상 조세지출 항목으로 구분됨
 - 조특법 제121조의23과 제121조의24에 규정된 외교관용 승용차 및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및 환급제도
- (기부문화 촉진) 기부문화 촉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조특법상 특례제도들은 폐지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여타 정책수단으로 대체하기도 어려움
 - 총 2개의 조세특례제도가 이러한 유형에 해당함
 - 조특법 제75조 기부장려금제도와 제76조의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 (기준조세체계 보완) 매입세액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한 경우에도 일정 범위 내에서 공제를 허용하는 조특법 제108조는 전 단계 매입세액공제 방식의 부가가치세제의 기준조세체계를 보완하는 제도로서 대체가능성 및 폐지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일정 부분 기준조세체계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특례제도의 오남용 가능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제도 활용 정도를 관찰하고 필요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 총 1개의 조세특례제도가 이러한 유형에 해당함
- (저소득층 소득지원) 근로 및 자녀장려를 위한 지원제도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입되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으로 폐지가능성은 없고 조세지출로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므로 잠재적 관리대상으로 분류할 필요

- 캐나다의 경우 통상적인 비환급형 조세지출과 별도로 구분하여 보고 있음
- 조특법 제100조의2~10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제도와 조특법 제100조의27~31에 규정되어 있는 자녀장려금 지급제도가 이 유형에 해당
- 일반적인 비환급형 잠재적 관리대상 조세지출과 구분하여 소득지원제도만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임

□ 이외의 항목들은 특정성과 대체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적극적 관리대상으로 분류됐으나, 장애인 관련 지원제도, 농어민 지원세제, 간접세 지원제도의 경우 잠재적 관리대상으로 분류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조특법에 따른 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의 경우 개별세법상 장애인 지원제도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 관리대상으로 분류됐으나 잠재적 관리대상으로 구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보다 큰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잠재적 관리대상으로 분류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본 연구에서 농어민 지원세제와 간접세 지원제도들을 대부분 적극적 관리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자유무역협정 등의 보완대책으로 농어민 지원을 정비하기 어렵고 간접세 지원제도의 상대적으로 낮은 대체가능성을 고려하여 잠재적 관리대상으로 분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표 III-8>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출 항목 중 잠재적 관리대상

조세지출 내역	조특법 조문	특정성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	분류결과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양도차익 이월과세)	33	Y	N	Y	잠재적 관리대상
기업의 금융채무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34	Y	N	Y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37	Y	N	N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38	Y	N	N	
자회사 매각을 위한 채무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39	Y	N	Y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40	Y	N	Y	
채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44	Y	N	Y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46	Y	N	Y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따른 법인세 과세특례	52	Y	N	Y	
기부장려금	75	Y	N	N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76	Y	N	N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108	Y	N	N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110	Y	N	N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	111의4	Y	N	N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121의23	Y	N	Y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121의24	Y	N	Y	

조세지출 내역	조특별 조문	특정성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	분류결과
수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조세특례	121의25①	Y	N	Y	
수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조세특례	121의25⑦·⑧	Y	N	Y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 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121의26	Y	N	Y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121의27	Y	N	Y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121의28	Y	N	Y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121의29	Y	N	Y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121의30	Y	N	Y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121의31	Y	N	Y	
중소기업간의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31;32	Y	N	N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38의2	Y	N	Y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38의3	Y	N	Y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46의7	Y	N	Y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47의4	Y	N	Y	
근로장려 및 자녀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1) 근로장려금 지급	100의2~10	Y	Y	N	
근로장려 및 자녀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2) 자녀장려금 지급	100의27~31	Y	Y	N	

다. 조세지출 규모 재산정

- 기존 조세지출예산서에 보고된 조세지출 규모는 관리대상 배제 항목, 잠재적 관리대상 항목, 적극적 관리대상 항목을 모두 포괄하고 있어서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축소할 수 있는 총량을 상당 수준 과대평가하고 있음
 - 이처럼 과대평가된 조세지출 규모는 일반대중과 정책입안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할 수 없는 제도들을 성과평가 대상으로 선정하는 문제를 야기함
 - 따라서 앞에서 구분한 관리대상에서 배제해야 할 세수감소분은 조세지출 규모에서 제외해야 함
 - 또한 조세지출의 성격을 갖고 있는 잠재적 관리대상 항목과 적극적 관리대상 항목의 세수감소규모를 구분하여 조세지출예산서에 보고하고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조세지출 규모는 적극적 관리대상 항목의 세수감소 규모로 설정할 필요

- 기발간된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보고하고 있는 기존 국세감면액 총량은 관리대상 배제항목, 경과규정, 잠재적 관리대상 조세지출,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지출로 분해될 수 있으며 각 유형별 감면액은 아래와 같음
 - 2013년 33.8조원 수준이던 기존 국세감면액 규모는 연평균 2.3%의 증가율로 증가하여 2017년 37조원 규모로 추정됨
 - 이러한 기존 국세감면액 규모는 관리대상 배제항목, 경과규정, 잠재적 관리대상 조세지출 규모,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지출 규모의 합계로 구성됨
 - 2013년 5.6조원 수준이던 관리대상 배제항목은 연평균 6.7%씩 증가하여 2017년 7.3조원 규모로 추정됨
 - 경과규정은 매해 약 4천억원 안팎의 규모이며 2017년 3,395억원 수준으로 전망됨
 - 잠재적 관리대상 조세지출 규모는 개별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잠재적 관리대상 조세지출 규모의 합계로서 연평균 3.7%씩 증가하여 2017년 9.6조원 규모로 전망
 - 잠재적 관리대상 조세지출 규모가 연평균 3.7%씩 증가한 주된 원인은 조특법상 잠재적 관리대상(B)이 연평균 15.2%씩 빠르게 증가한 데 있음

- * 이처럼 빠르게 증가한 조특법상 잠재적 관리대상 조세지출 규모는 해당 31개 항목 중 근로장려금 지급제도와 자녀장려금 지급제도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나타남
- ※ 근로장려금 2013년 5,618억원→2017년 12,452억원으로 빠르게 증가
- ※ 2015년 처음 지급된 자녀장려금 2015년 6,555억원→ 2017년 6,033억원으로 소폭 감소하나 신규 도입된 제도로써 2013년 대비 2017년 조세지출 규모는 순증
- 비과세감면의 주된 정비대상인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지출 규모는 연평균 0.4%의 낮은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며 2017년 기준 19.8조원 수준으로 전망
 - 2017년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지출 규모는 2013년 대비 3,100억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증가는 대부분 개별세법상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지출 항목들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조특법상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지출 규모는 2017년 16.9조원 수준으로 2013년 이후 연평균 0.2%씩 감소한 반면 개별세법상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지출 규모는 2017년 2.9조원으로 연평균 4%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I-9> 기존 국세감면액 총량의 구성요인별 분해

(단위: 억원, %)

	2013	2014	2015	2016 전망	2017 전망	연평균 증가율
기존 국세감면액 총량 (A+B+C+D+E+F)	338,351	343,387	359,017	365,075	370,385	2.3
관리대상 배제항목(E)	56,375	60,577	68,288	71,972	72,942	6.7
경과규정(F)	3,759	5,542	4,961	4,083	3,395	-2.5
개별세법 잠재적 관리대상(A)	68,736	65,367	65,188	70,258	70,854	0.8
조특법 잠재적 관리대상(B)	14,461	15,987	24,574	24,252	25,496	15.2
잠재적 관리대상 조세지출 (A+B)	83,197	81,354	89,762	94,510	96,350	3.7
개별세법 적극적 관리대상(C)	24,622	25,619	26,708	27,293	28,800	4.0
조특법 적극적 관리대상(D)	169,954	170,061	169,298	167,217	168,898	-0.2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지출 (C+D)	194,576	195,680	196,005	194,510	197,698	0.4
관리대상 조세지출 (A+B+C+D)	277,773	277,034	285,768	289,019	294,048	1.4

<표 III-10> 국세감면액 및 감면율 추이

(단위: 조원, %)

	2013	2014	2015	2016	2017
국세수입액	201.9	205.5	217.9	232.7	241.8
기존 국세감면액	33.8	34.3	35.9	36.5	37.0
관리대상 조세지출(TE3)	27.8	27.7	28.6	28.9	29.4
잠재적 관리대상 조세지출(TE2)	8.3	8.1	9.0	9.5	9.6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지출(TE1)	19.5	19.6	19.6	19.5	19.8
기존 국세감면율	14.4	14.3	14.1	13.6	13.3
관리대상 감면율(TE3)	12.1	11.9	11.6	11.0	10.8
잠재적 관리대상 감면율(TE2)	4.0	3.8	4.0	3.9	3.8
적극적 관리대상 감면율(TE1)	8.8	8.7	8.3	7.7	7.6

□ 기존 국세감면액을 이용한 국세감면비율은 2013년 14.4%에서 추세적으로 하향 안정화되어 2017년 13.3%로 전망되는 것으로 나타내는데, 이러한 추세는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지출의 감면율(TE1)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나타남

○ 국세감면율 = $100 \times \frac{\text{감면액}}{\text{감면액} + \text{국세수입액}}$

○ 2017년 기존 국세감면율은 2013년 대비 1.1%포인트 낮아졌으며 연간 약 7조원 수준의 관리대상 배제항목을 제외한 관리대상 조세지출(TE3)의 국세감면율은 같은 기간 1.3%포인트 낮아졌음

- 관리대상 조세지출(TE3) 국세감면율: 2013년 12.1% → 2017년 10.8%

○ 그러나 잠재적 관리대상 조세지출 감면율(TE2)은 3.9%를 기준으로 거의 같은 수준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적극적 관리대상 감면율(TE1)은 여타 감면율 지표보다 큰 폭의 인하추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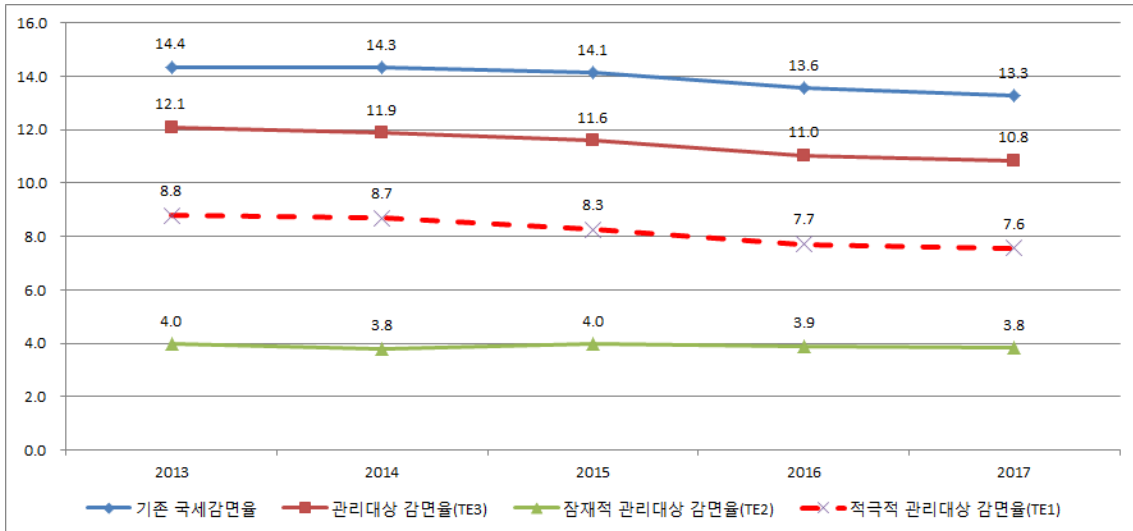
- 근로장려금의 확대와 자녀장려금의 신설과 같은 정책 차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관리대상 조세지출 감면율(TE2)이 분석기간 평균 3.9% 수준에 그친 것은 그간의 비과세감면 정비 노력의 결과로 판단됨

- 적극적 관리대상 감면율(TE1)은 2017년 7.6%로 2013년 대비 1.2%포인트 낮아졌음

- 이러한 결과는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비과세감면 정비 노력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TE1과 TE2를 분리해서 살펴보지 않으면 비과세감면 정비의 결과가 과소평가됨

[그림 III-1] 조세지출 범위기준별 감면을 비교

(단위: %)



IV. 개별 조세지출 항목과 재정지출의 연계



IV. 개별 조세지출 항목과 재정지출의 연계

1.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비교기준

가. 현재의 연계 현황

- 재정건전성 유지와 재정의 효율적 배분 및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며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기능별 분류 총량수준의 연계를 2011 회계연도부터 수행하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국가재정법」 제27조 이관), 「국가재정법」 제34조, 부칙<제8050호, 2006.10.4.> 제6조에 의해 조세지출예산서를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011년 회계연도부터 작성 제출
 - 현재 예산의 기능별 분류 기준에 따라 16개 분야의 조세지출 현황을 아래와 같이 매해 발표하고 있음

- 현재의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기능별 총량 수준의 연계를 보다 강화하여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단위사업 수준의 미시적 연계로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고 일부 시도되기도 했으나 가시적 성과는 없었음
 - 김학수·홍성훈(2012)에서 조세지출 항목별 소관부처를 지정하기 위해 해당 부처의 예산사업 중 유사한 내용의 재정사업을 프로그램예산체계의 단위사업 수준까지 연계한 바 있음
 - 박노욱(2013)은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하는 현행 기능별 총량 중심에서 보다 세분화된 미시적 수준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으나 이후 추진 동력 상실로 더 이상의 진전은 이루어지지 못했음
 - 유사한 정책목적과 수혜대상의 중복 여부를 검토하여 유사중복성을 판단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기재부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유사중복 가능성이 큰 조세지출 규모가 전체의 40% 수준으로 제시
 - 박노욱, 「비과세감면제도 세출예산의 연계 강화 필요성」, 공청회자료, 한국

조세재정연구원, 2013.

- 박노옥(2013)은 구체적으로 정책목적과 수혜자의 유사중복성을 검토하는 방식에 대한 하나의 예시는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유사중복성이 있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음
 - 중소기업, 연구개발, 국제자본거래 등의 20개 분야를 설정하고 해당 분야의 조세지출제도 중 유사중복성이 있는 항목 수와 조세지출 합계 규모만을 제시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는 어려움
- 박노옥(2013)의 결과가 조세지출 정비 또는 관련 재정지출 삭감으로 연계되지는 못했음
 - 정책목적의 유사중복성은 각 부처의 예산사업 성과계획서 등을 이용하여 확인은 가능하지만 수혜자에 대한 정보는 부재
 - 수혜자에 대한 유사중복성을 검토하는 것은 세제실, 예산실, 재정관리국 등 범 기재부 차원에서 노력할 사안임

<표 IV-1> 예산분류기준별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

예산분류기준	2015년		2016년		2017년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1 일반공공행정	22,977	6.4	23,817	6.52	23,380	6.31
2 공공질서 및 안전	-	0	-	0	-	0
3 외교·통일	10	0	9	0	10	0
4 국방	6,690	1.86	7,025	1.92	7,404	2
5 교육	13,019	3.63	12,706	3.48	12,658	3.42
6 문화 및 관광	68	0.02	59	0.02	134	0.04
7 환경	7,125	1.98	6,379	1.75	6,399	1.73
8 사회복지	94,051	26.2	98,341	26.94	103,255	27.88
9 보건	41,304	11.5	43,411	11.89	43,171	11.66
10 농림수산	54,222	15.1	48,539	13.3	49,495	13.36
1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06,668	29.71	107,453	29.43	106,476	28.75
12 교통 및 물류	5,880	1.64	9,012	2.47	7,021	1.9
13 통신	-	0	-	0	-	0
14 국토 및 지역개발	6,963	1.94	8,293	2.27	10,961	2.96
15 과학기술	41	0.01	34	0.01	22	0.01
16 예비비	-	0	-	0	-	0
합 계	359,017	100	365,077	100	370,386	100

주: 세출예산분류항목(총16개) 중 공공질서 및 안전, 통신, 예비비의 경우 그 성격상 해당 국세감면항목이 없음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6.

- 조세지출 수혜자 및 재정지출 수혜자 정보를 구할 수 있더라도 어떤 경우에 유사중복성이 있는지 또는 상호 보완적인지를 검토하는 작업은 또 다른 큰 과제임
- 직접세에 대한 조세지출의 수혜자 정보는 국세청의 적극적 협조를 전제한다면 상대적으로 파악하기 쉽지만 간접세에 대한 조세지출 항목의 수혜자 정보는 관리되지 않고 있어서 한계가 존재함

나. 연계 방법

- 이번 연구에서는 조세지출과 정책 목적, 정책 대상자, 지원 요건(예: 소득 수준, 특정 지역, 정책 대상자의 특정 행위 요건 등)이 유사한 재정지출을 검토하고 연계를 시도함
 - 조세지출과 정책 목적이 유사한 재정지출을 우선 연계함
 - 조세지출의 정책 목적은 해당 항목의 근거 법령과 조세지출예산서의 항목별 도입 목적 부분을 참고함
 - 재정지출의 정책 목적은 각 부처의 2017년 성과계획서, 2017년 예산안 요구 사업설명자료,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함
 - 조세지출 항목에 따라 정책 대상자와 지원 요건이 포괄하는 범위가 다양하게 나타남
 - 정책 대상자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예: 조특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정책 대상자의 범위가 특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예: 조특법 제87조의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가 있음
 - 정책 대상자의 범위가 광범위한 경우 재정지출 사업 중 여러 세부사업과 연계되며 정책 대상자의 범위가 특정적인 경우 재정지출 사업 중 하나의 세부사업 또는 세부사업 내의 일부 내역사업과 연계됨
 - 정책 목적, 정책 대상자의 범위, 지원 요건의 일치성 등을 검토하여 유형을 5가지로 분류함
- 유형 A: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정책 목적, 정책 대상자, 지원 요건이 유사한 경우로서 단 2개의 항목이 이에 해당함

- 경영희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제70조의2)는 농림수산 분야(100)-농업·농촌 부문(101)-농지은행(농지, 용자) 프로그램(2600)-농지은행(농지, 용자) 단위사업(2631)-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용자) 세부사업(343)과 매우 정확히 연계
 - 해당 세부사업의 2017년 예산규모는 2,900억원 규모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조특법 제87조의2)는 농림수산 분야(100)-농업·농촌 부문(101)-저축장려 프로그램(1600)-저축장려 단위사업(1631)-저축장려금 세부사업(301)과 매우 정확히 연계
 - 해당 세부사업의 2017년 예산규모는 849억원 규모
- 유형 B: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정책 목적은 유사하나 조세지출의 정책 대상자가 재정지출의 정책 대상자 범위에 비해 넓은 경우로서 11개의 조세지출 항목에 20개의 재정사업이 연계됨
- 조세지출에 비해 정책목적이 유사한 재정지출 사업은 특정 요건을 더 갖춘 경우에만 지원하는 경우임
 - 조세지출은 소득 구분 없이 지원하는 반면 재정지출은 대상자 중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 등
- 유형 C: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정책 목적은 유사하나 조세지출의 정책 대상자에 비해 재정지출의 정책 대상자 범위가 넓은 경우로서 2개의 조세지출 항목이 이에 해당함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제85조의10)은 농림수산 분야(100)-임업산촌 부문(102)-산림이용 및 복지증진 프로그램(1700)-국유재산 및 산지관리(일반) 단위사업(1736)-국유재산관리 세부사업(302)과 연계됨
 - 동 세부사업에 사유림 매수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정확히 해당 세부사업의 전체 내역사업에 대한 정보는 파악하기 어려움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121조의23)은 농림수산 분야(100)-농업농촌 부문(101)-농가경영안정 프로그램(1000)-농협사업구조개편 프로그램(1003)-농협사업구조개편지원 세부사업(302)과 연계됨
 - 동 세부사업에 농업금융채권(농협사업구조 개편 시 부족 자본금 충당) 이자비용 지원이 포함되어 있음

- 유형 D: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정책 목적은 유사하나 조세지출의 정책 대상자와 재정지출의 정책 대상자가 일부 겹치는 경우로서 103개의 조세지출 항목이 781개의 재정지출 사업과 연계됨
 - D 유형의 연계결과는 <표 IV-3>을 참조하기 바람

- 유형 E: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정책 목적은 유사하나 조세지출의 정책 대상자와 재정지출의 정책 대상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65개의 조세지출항목이 164개의 재정지출 사업과 연계됨
 - 재정지출 사업 중 제도의 기반 구축과 관련된 사업은 소관 부처의 제도 운영과 관련된 지출로 정책 대상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출이 아니어서 조세지출과 정책 대상자가 일치하지 않음
 - 조세지출은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지원인데 재정지출은 부처 직접 수행, 지자체 보조 사업인 경우 명시적인 정책 대상자는 일치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수혜자는 유사함
 - 연금보험료 공제 관련한 조세지출은 연금 보험료 납부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이고 재정지출은 보험금 지급에 관한 것이어서 정책 대상자가 일치하지 않음

3) 연계의 한계

- 유형 C, D의 경우 일부는 내역 사업까지 살펴보고 실제 관련된 내역 사업만 연계해야 실제로 관련된 재정지출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 세부사업까지 연계한 재정지출 규모를 파악하는 경우 과대하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음
 - 대다수의 연계 결과가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정책 대상자가 일부 겹치는 유형 D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재정지출의 내역 사업은 재정지출 사업별로 규모를 제시하는 방식이 다양하고 세부 사업과 같이 코드로 분류할 수도 없으며, 조세지출과 연계된 재정지출의 내역 사업 내에서도 일부는 연관성이 있고 일부는 그렇지 않아서 정확하게 연계된 내역 사업의 규모를 분리해 내기는 어려움

- 조세지출의 정책 대상자, 지원 요건이 다른 항목들에 비해 상당히 포괄적인 경우 다양한 재정지출 세부 사업과 연계되는데 정책 대상자가 일치하는 재정지출 규모를 분리해서 제시하기는 어려움
 -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만을 분리해 내기 어려움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의 사업성 재정사업과 모두 연계해야 하지만 여러 세부사업에 흩어져 있어 확인이 어려움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등

- 연도별로 예산 규모의 변화가 큰 재정지출은 현 시점에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규모를 연계해서 비교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음
 -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관련된 재정지출
 - 사업이 완료되면 세부사업의 예산 규모는 갑자기 크게 감소하고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면 규모가 갑자기 커짐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과 관련된 재정지출
 - 토지 수용이 완료되면 규모가 줄어들고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면 규모가 증가함
 - ‘공공기관이 혁신 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과 관련된 재정지출
 - 지원 대상 기관이 변화함에 따라 규모가 크게 변동함

〈표 IV-2〉 유형 B 연계결과

조세지출			분야		부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특	7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1	산업금융지원	1200	중소기업 성장안정지원	1253	정책지원성과향상(기금)	301	정책자금 지원 성과향상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1	산업금융지원	1200	중소기업 성장안정지원	1254	투융자복합 금융지원(기금)	301	투융자복합 금융(융자)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1	산업금융지원	1200	중소기업 성장안정지원	1261	성장안정자금(기금)	301	신성장기반 자금(융자)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1	산업금융지원	1200	중소기업 성장안정지원	1261	성장안정자금(기금)	302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특	30	080	사회복지	086	노동	1000	고용정책	1043	중소기업청년인턴제	301	중소기업청년인턴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조특	62	140	국토 및 지역개발	142	지역및도시	5500	지역개발	5538	혁신도시	302	공공기관 이차보전 지원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	72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1000	농가경영안정	1003	농협사업구조개편	302	농협사업구조개편지원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200	동반성장지원	4231	기업간협력 증진	302	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
지방 시·군 소재 비영리 의료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조특	74④	090	보건	091	보건의료	2700	공공보건 의료확충	2750	의료취약지 지원	300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77	120	교통 및 물류	121	도로	1500	고속도로 건설	1531	고속도로조사 설계	302	고속도로접도구역매수
			140	국토 및 지역개발	141	수자원	5300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	5333	하천편입토지 보상(총액계상)	461	하천편입 토지보상

조세지출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94	080	사회복지	086	노동	1300	고용평등 실현	1345	일·가정양립 지원	351	직장어린이 집지원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	106①11	080	사회복지	084	보육·가족 및여성	2500	저출산대응및인구정책지원	2533	저출산대응 인구정책	305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	조특	106②19; 116①28; 118①19	060	문화 및 관광	063	체육	5300	스포츠산업 육성 및 국제교류	5361	국제체육 지원	311	2018 평창동계 올림픽경기 대회 지원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특	109①	070	환경	073	대기	1600	기후변화 대응및대기보전	1633	자동차배출 가스관리	302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	소득	12_3년	080	사회복지	086	노동	1000	고용정책	1055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300	사회보험 사각지대해소
			080	사회복지	086	노동	1000	고용정책	1037	사회적 기업육성	301	사회적기업 육성
			080	사회복지	086	노동	1000	고용정책	1037	사회적 기업육성	312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생활)
			080	사회복지	086	노동	1000	고용정책	1037	사회적 기업육성	313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세종)
			080	사회복지	086	노동	7000	고용노동 행정지원	7041	제주이관 업무지원	309	사회적기업 육성(특행)

〈표 IV-3〉 유형 D 연계결과

조세지출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조특	5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1	산업금융지원	1200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1254	투융자복합금융지원(기금)	301	투융자복합금융(융자)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1	산업금융지원	1200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1261	성장안정자금(기금)	301	신성장기반자금(융자)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1	산업금융지원	1200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1261	성장안정자금(기금)	302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6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52	창업기업지원융자(기금)	301	창업기업자금(융자)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52	창업기업지원융자(기금)	302	창업성공패키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10①1·2·3	130	통신	131	방송통신	4500	정보통신방송산업진흥	4535	정보통신산업융합원천기술	324	전자정보다바이스산업원천기술개발(R&D, 정보화)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2	시스템산업글로벌전문기술개발	303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1	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	303	자동차산업핵심기술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1	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	302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10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38	바이오·의료기술개발	401	바이오·의료기술개발(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10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38	바이오·의료기술개발	403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R&D)(미래부)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10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38	바이오·의료기술개발	404	뇌과학원천기술개발(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10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38	바이오·의료기술개발	405	포스트게놈 신산업육성을 위한 다부처 유전체 사업(R&D)(미래부)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1	다부처기술개발	403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R&D)(산업부)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1	다부처기술개발	405	포스트게놈 신산업육성을 위한 다부처 유전체 사업(R&D)(산업부)
			090	보건	091	보건의료	3000	보건의료산업육성	3031	보건의료연구개발	403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R&D)
			090	보건	091	보건의료	3000	보건의료산업육성	3031	보건의료연구개발	405	포스트게놈 신산업육성을 위한 다부처 유전체 사업(R&D)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2500	농식품기술개발정책연구	2531	농식품기술개발	405	포스트게놈 신산업육성을 위한 다부처 유전체 사업(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10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39	나노·소재기술개발	401	나노·소재기술개발(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10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39	나노·소재기술개발	402	나노융합 2020(R&D)(미래부)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10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39	나노·소재기술개발	403	미래소재디스커버리지원(R&D)

조세지출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600	신산업진흥	3691	창의산업핵심기술개발	302	나노융합산업핵심기술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1	다부처기술개발	402	나노융합2020(R&D)(산업부)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900	전력기술개발	5901	전력공급기술	301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R&D)
		070	환경	072	폐기물	1400	자원순환사회 형성 촉진	1437	자원순환 기술개발(R&D)	308	폐자원에너지화 기술개발(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10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59	체세대정보·컴퓨팅기술 개발	401	체세대정보·컴퓨팅기술개발(R&D)
		130	통신	131	방송통신	4500	정보통신방송산업진흥	4531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 개발	302	디지털콘텐츠원천기술개발(R&D, 정보화)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10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34	문화콘텐츠산업 기술지원	602	첨단 융복합 콘텐츠 기술개발(R&D)
		060	문화및관광	061	문화예술	1200	콘텐츠산업 육성	1234	문화콘텐츠산업 기술지원	602	문화기술 연구개발(R&D)
		070	환경	072	폐기물	1100	상하수 및 토양지하수 관리	1144	상하수도 및 토양지하수	302	CO2 저장 환경관리기술개발(R&D)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2500	농식품기술개발정책연구	2531	농식품기술개발	420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R&D)
		070	환경	072	폐기물	1100	상하수 및 토양지하수 관리	1144	상하수도 및 토양지하수	301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1	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	306	조선해양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1	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	305	스마트공장고도화기술개발(R&D)
		130	통신	131	방송통신	4500	정보통신방송산업진흥	4535	정보통신산업융합원천기술	326	사물인터넷융합기술개발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300	우주개발진흥	1331	인공위성개발	401	다목적실용위성개발(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300	우주개발진흥	1331	인공위성개발	404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300	우주개발진흥	1331	인공위성개발	406	소형위성개발(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300	우주개발진흥	1331	인공위성개발	410	차세대중형위성개발(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300	우주개발진흥	1332	우주발사체개발	402	한국형발사체 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900	전력기술개발	5902	전력수요기술	301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400	원자력진흥	1432	방사선이용기술개발	403	방사선기술개발사업(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400	원자력진흥	1432	방사선이용기술개발	407	방사선 연구기반 확충(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400	원자력진흥	1434	원자력연구개발사업	401	원자력기술개발사업(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400	원자력진흥	1434	원자력연구개발사업	402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900	전력기술개발	5901	전력공급기술	303	원자력핵심기술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3	소재부품산업핵심기술개발	301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3	소재부품산업핵심기술개발	302	소재부품기술개발(R&D)

조세지출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1600	과학기술기반조성	1654	연구성과확산지원	402	기업부설연구소운영·지원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200	산업기술진흥	3274	인력양성(R&D)	301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200	산업기술진흥	3274	인력양성(R&D)	30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2	산업기술지원	2100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2134	기술개발지원(R&D)	301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2	산업기술지원	2100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2134	기술개발지원(R&D)	302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2	산업기술지원	2100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2134	기술개발지원(R&D)	303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2	산업기술지원	2100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2134	기술개발지원(R&D)	305	공정·품질기술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2	산업기술지원	2100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2134	기술개발지원(R&D)	306	제품서비스기술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2	산업기술지원	2100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2134	기술개발지원(R&D)	309	창업성장기술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2	산업기술지원	2100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2134	기술개발지원(R&D)	310	중소기업R&D역량제고(R&D)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조특	10의2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100	산업경쟁력기반구축	3171	산업기술기반구축	301	산업융합기반구축(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100	산업경쟁력기반구축	3171	산업기술기반구축	302	창의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100	산업경쟁력기반구축	3171	산업기술기반구축	303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100	산업경쟁력기반구축	3171	산업기술기반구축	304	시스템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100	산업경쟁력기반구축	3171	산업기술기반구축	305	R&D관리기관지원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100	산업경쟁력기반구축	3171	산업기술기반구축	306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4	미래성장동력	301	창의산업미래성장동력(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4	미래성장동력	302	시스템산업미래성장동력(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4	미래성장동력	303	소재부품산업미래성장동력(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2	공공기술개발	301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2	공공기술개발	302	국민안전증진기술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2	공공기술개발	303	소형무장헬기연계민수헬기핵심기술개발사업(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2	공공기술개발	304	다목적실용위성기술개발(R&D)

조세지출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2	공공기술개발	305	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및운영(R&D)(산업부)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1	다부처기술개발	303	민군기술협력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1	다부처기술개발	402	나노융합2020(R&D)(산업부)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1	다부처기술개발	403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R&D)(산업부)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1	다부처기술개발	405	포스트게놈 신산업육성을 위한 다부처유전체사업(R&D)(산업부)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3	우수기술역량강화	301	우수기술연구센터(ATC)(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3	우수기술역량강화	302	사업화연계기술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600	신산업진흥	3672	로봇산업진흥	301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600	신산업진흥	3672	로봇산업진흥	312	한국로봇산업진흥원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600	신산업진흥	3691	창의산업핵심기술개발	301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600	신산업진흥	3691	창의산업핵심기술개발	302	나노융합산업핵심기술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600	신산업진흥	3691	창의산업핵심기술개발	303	지식서비스산업핵심기술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600	신산업진흥	3691	창의산업핵심기술개발	304	엔지니어링핵심기술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600	신산업진흥	3688	산업융합진흥	305	제조업소프트웨어강화지원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600	신산업진흥	3688	산업융합진흥	306	메디컬융합소재산업 활성화사업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600	신산업진흥	3692	창의산업글로벌전문기술개발	301	창의산업전문기술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600	신산업진흥	3692	창의산업글로벌전문기술개발	302	디자인혁신역량강화(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600	신산업진흥	3649	바이오분야국제협약이행	301	바이오분야국제협약이행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600	신산업진흥	3649	바이오분야국제협약이행	302	바이오나노산업개발형생태계조성 촉진사업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700	에너지기술개발	5702	에너지공급기술	301	자원개발기술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700	에너지기술개발	5702	에너지공급기술	302	에너지자원순환기술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700	에너지기술개발	5701	에너지수요기술	301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에특)(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700	에너지기술개발	5701	에너지수요기술	302	LED시스템조명2.0(R&D)

조세지출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700	에너지기술개발	5701	에너지수요기술	310	에너지안전기술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900	전력기술개발	5901	전력공급기술	301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900	전력기술개발	5901	전력공급기술	303	원자력핵심기술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900	전력기술개발	5901	전력공급기술	304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900	전력기술개발	5902	전력수요기술	301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900	전력기술개발	5902	전력수요기술	302	전력피크대응을 위한 ESS실증연구(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900	전력기술개발	5902	전력수요기술	304	멀티터미널직류송배전시스템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900	전력기술개발	5902	전력수요기술	305	ESS 기술개발사업(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6000	전력기술기반확충	6002	기반구축	301	전력표준화및인증지원사업(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6000	전력기술기반확충	6002	기반구축	302	친환경전지용합실증화단지 구축(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6000	전력기술기반확충	6002	기반구축	310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R&D) (산업부)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1	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	301	전자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1	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	302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1	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	303	자동차산업핵심기술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1	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	304	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4	소재부품산업글로벌전문 기술개발	301	소재부품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4	소재부품산업글로벌전문 기술개발	302	센서산업고도화전문기술개발사업(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2	시스템산업글로벌전문 기술개발	301	전자시스템전문기술개발사업(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2	시스템산업글로벌전문 기술개발	302	생산시스템산업전문기술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2	시스템산업글로벌전문 기술개발	303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61	대체물질기술개발	462	대체물질활용기술개발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3	소재부품산업핵심기술개발	301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3	소재부품산업핵심기술개발	302	소재부품기술개발(R&D)

조세지출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3	소재부품산업핵심기술개발	303	전자부품산업핵심기술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600	방사성폐기물관리	5634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	303	방폐물관리기술개발(R&D)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1600	과학기술기반조성	1636	연구개발특구육성	401	연구개발특구육성(R&D)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1600	과학기술기반조성	1636	연구개발특구육성	402	연구개발특구운영및인프라지원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200	기초연구진흥	1235	기초연구기반구축사업	410	기초연구기반구축(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200	기초연구진흥	1235	기초연구기반구축사업	411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지원(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200	기초연구진흥	1234	기초연구지원	301	개인기초연구(미래부)(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200	기초연구진흥	1234	기초연구지원	302	집단연구지원(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10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58	첨단융합기술개발	401	STEAM연구(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10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58	첨단융합기술개발	402	글로벌 프론티어지원(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10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58	첨단융합기술개발	404	무인이동체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10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58	첨단융합기술개발	411	국가전략프로젝트(R&D)(미래부)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10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38	바이오·의료기술개발	401	바이오·의료기술개발(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10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38	바이오·의료기술개발	403	법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R&D)(미래부)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10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38	바이오·의료기술개발	404	뇌과학원천기술개발(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10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38	바이오·의료기술개발	405	포스트게놈 신산업육성을 위한 다부처 유전체 사업(R&D)(미래부)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10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39	나노·소재기술개발	401	나노·소재기술개발(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10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39	나노·소재기술개발	402	나노융합 2020(R&D)(미래부)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10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39	나노·소재기술개발	403	미래소재디스커버리지원(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10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60	에너지·환경기술개발	401	친환경에너지타운(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10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39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사업	402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기금,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10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44	공공복지 안전 연구개발	401	공공복지 안전 연구(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10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44	공공복지 안전 연구개발	402	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및운용(R&D)(미래부)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10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60	에너지·환경기술개발	401	핵융합기초연구(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10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60	에너지·환경기술개발	403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10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60	에너지·환경기술개발	404	해양극저기초원천기술개발(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10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65	재난재해대응기술개발	402	재난안전플랫폼기술개발(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10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59	차세대정보·컴퓨팅기술개발	401	차세대정보·컴퓨팅기술개발(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300	우주개발진흥	1334	달 탐사 사업	401	달 탐사(R&D)

조세지출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300	우주개발진흥	1333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407	우주핵심기술개발(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300	우주개발진흥	1331	인공위성개발	401	다목적실용위성개발(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300	우주개발진흥	1331	인공위성개발	404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R&D) (미래부)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300	우주개발진흥	1331	인공위성개발	406	소형위성개발(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300	우주개발진흥	1331	인공위성개발	410	차세대중형위성개발(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300	우주개발진흥	1332	우주발사체개발	402	한국형발사체 개발(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100	원자력진흥	1448	SMART 고도화 공동개발사업	401	SMART 고도화 공동개발사업(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400	원자력진흥	1432	방사선이용기술개발	403	방사선기술개발사업(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400	원자력진흥	1432	방사선이용기술개발	407	방사선 연구기반 확충(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400	원자력진흥	1436	원자력평화적이용체제구축	401	원자력평화적이용체제구축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400	원자력진흥	1436	원자력평화적이용체제구축	404	우주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400	원자력진흥	1436	원자력평화적이용체제구축	408	IAEA 기술협력부담금(ODA)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400	원자력진흥	1448	대단위 다목적 전자선 실증연구센터	401	대단위 다목적 전자선 실증연구센터(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400	원자력진흥	1440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402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 및 실증(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400	원자력진흥	1442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	402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400	원자력진흥	1434	원자력연구개발사업	401	원자력기술개발사업(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400	원자력진흥	1434	원자력연구개발사업	402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R&D)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4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	401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4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	40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4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	403	한국전기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4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	404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4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	40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 지원(R&D)(401)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4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	402	국가핵융합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R&D)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4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	404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조세지출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4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	405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4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	407	한국천문연구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4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	408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4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	409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4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	41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4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	412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4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	415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4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	416	녹색기술센터 연구 운영비 지원(R&D)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4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	422	한국생산기술 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4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	42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4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	424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 (R&D)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4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	425	한국식품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R&D)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4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	426	한국기계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R&D)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4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	427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R&D)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4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	428	안전성평가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 (R&D)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4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	42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4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	43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4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	431	재료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R&D)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4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	432	세계김치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R&D)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4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	403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광주바이오에너지연구원 지원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4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	404	제조업ICT융합지원동 건립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4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	405	부산동남권지역본부 이전사업

조세지출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4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	409	한국전기연구원 광주전력변환연구시험센터지원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4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	41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분원 설치(R&D)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31	직할출연연구기관지원	403	울산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31	직할출연연구기관지원	751	울산과학기술원 BTL 정부지급금 지원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500	원자력안전연구	1501	원자력안전연구(R&D)	401	원자력안전연구개발(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500	원자력안전연구	1501	원자력안전연구(R&D)	402	핵비확산 및 핵안보 이행기술개발(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500	원자력안전연구	1501	원자력안전연구(R&D)	403	원자력안전연구기획평가(R&D)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000	출연연구기관지원	2031	직할출연연구기관지원(R&D)	40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000	출연연구기관지원	2031	직할출연연구기관지원(R&D)	402	한국원자력통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000	출연연구기관지원	2031	직할출연연구기관지원(R&D)	403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운영비 지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11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2500	농식품기술개발정책연구	2531	농식품기술개발	405	포스트게놈 신산업육성을 위한 다부처 유전체 사업(R&D)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2500	농식품기술개발정책연구	2531	농식품기술개발	420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R&D)
			060	문화및관광	061	문화예술	1200	콘텐츠산업 육성	1234	문화콘텐츠산업 기술지원	602	문화기술 연구개발(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10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34	문화콘텐츠산업 기술지원	602	첨단 융복합 콘텐츠 기술개발(R&D)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1600	과학기술기반조성	1636	연구개발특구육성	401	연구개발특구육성(R&D)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1600	과학기술기반조성	1636	연구개발특구육성	402	연구개발특구운영및인프라지원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200	기초연구진흥	1235	기초연구기반구축사업	410	기초연구기반구축(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200	기초연구진흥	1235	기초연구기반구축사업	411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지원(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200	기초연구진흥	1234	기초연구지원	301	개인기초연구(R&D)(미래부)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200	기초연구진흥	1234	기초연구지원	302	집단연구지원(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10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58	첨단융합기술개발	401	STEAM연구(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10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58	첨단융합기술개발	402	글로벌 프론티어지원(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10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58	첨단융합기술개발	404	무인이동체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10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58	첨단융합기술개발	411	국가전략프로젝트(R&D)(미래부)	

조세지출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10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38 바이오·의료기술개발	401 바이오·의료기술개발(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10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38 바이오·의료기술개발	403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R&D)(미래부)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10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38 바이오·의료기술개발	404 뇌과학원천기술개발(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10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38 바이오·의료기술개발	405 포스트게놈 신산업육성을 위한 다부처 유전체 사업(R&D)(미래부)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10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39 나노·소재기술개발	401 나노·소재기술개발(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10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39 나노·소재기술개발	402 나노융합 2020(R&D)(미래부)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10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39 나노·소재기술개발	403 미래소재디스커버리지원(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10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60 에너지·환경기술개발	401 친환경에너지타운(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10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39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사업	402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기금,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10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44 공공복지 안전 연구개발	401 공공복지 안전 연구(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10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44 공공복지 안전 연구개발	402 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및운용(R&D)(미래부)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10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60 에너지·환경기술개발	401 핵융합초연구(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10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60 에너지·환경기술개발	403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10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60 에너지·환경기술개발	404 해양극저기초원천기술개발(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10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65 재난재해대응기술개발	402 재난안전플랫폼기술개발(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10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59 차세대정보·컴퓨팅기술개발	401 차세대정보·컴퓨팅기술개발(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300 우주개발진흥	1334 달 탐사 사업	401 달 탐사(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300 우주개발진흥	1333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407 우주핵심기술개발(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300 우주개발진흥	1331 인공위성개발	401 다목적실용위성개발(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300 우주개발진흥	1331 인공위성개발	404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R&D)(미래부)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300 우주개발진흥	1331 인공위성개발	406 소형위성개발(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300 우주개발진흥	1331 인공위성개발	410 차세대중형위성개발(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300 우주개발진흥	1332 우주발사체개발	402 한국형발사체 개발(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100 원자력 진흥	1448 SMART 고도화 공동개발사업	401 SMART 고도화 공동개발사업(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400 원자력 진흥	1432 방사선이용기술개발	403 방사선기술개발사업(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400 원자력 진흥	1432 방사선이용기술개발	407 방사선 연구기반 확충(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400 원자력 진흥	1436 원자력평화적이용체제구축	401 원자력평화적이용체제구축

조세지출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400	원자력진흥	1436	원자력평화적이용체제구축	404	우주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400	원자력진흥	1436	원자력평화적이용체제구축	408	IAEA 기술협력부담금(ODA)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400	원자력진흥	1448	대단위 다목적 전자선 실증연구센터	401	대단위 다목적 전자선 실증연구센터(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400	원자력진흥	1440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402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 및 실증(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400	원자력진흥	1442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	402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400	원자력진흥	1434	원자력연구개발사업	401	원자력기술개발사업(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400	원자력진흥	1434	원자력연구개발사업	402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R&D)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4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	401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4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	40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4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	403	한국전기연구원 연구운영비지원(R&D)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4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	404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4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	40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 지원(R&D)(401)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4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	402	국가핵융합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R&D)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4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	404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4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	405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4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	407	한국천문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4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	408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4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	409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4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	41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4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	412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4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	415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조세지출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4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	416	녹색기술센터 연구 운영비 지원(R&D)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4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	42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4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	42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4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	424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R&D)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4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	425	한국식품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4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	426	한국기계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4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	427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4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	428	안전성평가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 (R&D)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4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	42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4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	43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4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	431	재료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R&D)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4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	432	세계김치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R&D)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4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	403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광주바이오에너지연구센터 지원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4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	404	제조업ICT융합지원동 건립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4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	405	부산동남권 지역본부 이전사업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4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	409	한국전기연구원 광주전력변환연구시험센터지원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4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	41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분원 설치(R&D)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31	직할출연연구기관지원	403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31	직할출연연구기관지원	751	울산과학기술원 BTL 정부지급금 지원
		130	통신	131	방송통신	4500	정보통신방송산업진흥	4531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 개발	302	디지털콘텐츠원천기술개발(R&D, 정보화)
		130	통신	131	방송통신	4500	정보통신방송산업진흥	4535	정보통신산업융합원천기술	324	전자정보디바이스산업원천기술개발(R&D, 정보화)
		130	통신	131	방송통신	4500	정보통신방송산업진흥	4535	정보통신산업융합원천기술	326	사물인터넷융합기술개발
		090	보건	091	보건의료	3000	보건의료산업육성	3031	보건의료연구개발	403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R&D)

조세지출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090	보건	091	보건의료	3000	보건의료산업육성	3031	보건의료연구개발	405	포스트게놈 신산업육성을 위한 다부처 유전체 사업(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100	산업경쟁력기반구축	3171	산업기술기반구축	301	산업융합기반구축(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100	산업경쟁력기반구축	3171	산업기술기반구축	302	창의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100	산업경쟁력기반구축	3171	산업기술기반구축	303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100	산업경쟁력기반구축	3171	산업기술기반구축	304	시스템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100	산업경쟁력기반구축	3171	산업기술기반구축	305	R&D관리기관지원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100	산업경쟁력기반구축	3171	산업기술기반구축	306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200	산업기술진흥	3274	인력양성(R&D)	301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200	산업기술진흥	3274	인력양성(R&D)	302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61	대체물질기술개발	462	대체물질활용기술개발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1	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	301	전자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1	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	302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1	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	303	자동차산업핵심기술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1	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	304	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1	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	305	스마트공장고도화기술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1	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	306	조선해양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1	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	309	국가전략프로젝트(R&D)(산업부)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2	시스템산업글로벌전문기술개발	301	전자시스템전문기술개발사업(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2	시스템산업글로벌전문기술개발	302	생산시스템산업전문기술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2	시스템산업글로벌전문기술개발	303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3	소재부품산업핵심기술개발	301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3	소재부품산업핵심기술개발	302	소재부품기술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3	소재부품산업핵심기술개발	303	전자부품산업핵심기술개발(R&D)

조세지출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4	소재부품산업글로벌전문기술개발	301	소재부품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4	소재부품산업글로벌전문기술개발	302	센서산업고도화전문기술개발사업(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600	신산업진흥	3649	바이오분야국제협약이행	301	바이오분야국제협약이행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600	신산업진흥	3649	바이오분야국제협약이행	302	바이오나노산업개발형생태계조성 촉진사업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600	신산업진흥	3672	로봇산업진흥	301	지능형로봇보급및확산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600	신산업진흥	3672	로봇산업진흥	312	한국로봇산업진흥원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600	신산업진흥	3688	산업융합진흥	305	제조업소프트파워강화지원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600	신산업진흥	3688	산업융합진흥	306	메디컬융합소재산업활성화사업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600	신산업진흥	3691	창의산업핵심기술개발	301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600	신산업진흥	3691	창의산업핵심기술개발	302	나노융합산업핵심기술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600	신산업진흥	3691	창의산업핵심기술개발	303	지식서비스산업핵심기술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600	신산업진흥	3691	창의산업핵심기술개발	304	엔지니어링핵심기술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600	신산업진흥	3692	창의산업글로벌전문기술개발	301	창의산업전문기술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600	신산업진흥	3692	창의산업글로벌전문기술개발	302	디자인혁신역량강화(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1	다부처기술개발	303	민군기술협력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1	다부처기술개발	402	나노융합2020(R&D)(산업부)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1	다부처기술개발	403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R&D)(산업부)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1	다부처기술개발	405	포스트케놈 신산업육성을 위한 다부처유전체사업(R&D)(산업부)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2	공공기술개발	301	항공우주주부품기술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2	공공기술개발	302	국민안전증진기술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2	공공기술개발	303	소형무장헬기연계민수헬기핵심기술개발사업(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2	공공기술개발	304	다목적실용위성기술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2	공공기술개발	305	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및운영(R&D)(산업부)

조세지출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3	우수기술역량강화	301	우수기술연구센터(ATC)(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3	우수기술역량강화	302	사업화연계기술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4	미래성장동력	301	창의산업미래성장동력(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4	미래성장동력	302	시스템산업미래성장동력(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4	미래성장동력	303	소재부품산업미래성장동력(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600	방사성폐기물관리	5634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	303	방폐물관리기술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700	에너지기술개발	5702	에너지공급기술	301	자원개발기술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700	에너지기술개발	5702	에너지공급기술	302	에너지자원순환기술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700	에너지기술개발	5701	에너지수요기술	301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에특)(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700	에너지기술개발	5701	에너지수요기술	302	LED시스템조명2.0(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700	에너지기술개발	5701	에너지수요기술	310	에너지안전기술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900	전력기술개발	5901	전력공급기술	301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900	전력기술개발	5901	전력공급기술	303	원자력핵심기술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900	전력기술개발	5901	전력공급기술	304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900	전력기술개발	5902	전력수요기술	301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900	전력기술개발	5902	전력수요기술	302	전력피크대응을 위한 ESS실증연구(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900	전력기술개발	5902	전력수요기술	304	멀티터미널직류송배전시스템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900	전력기술개발	5902	전력수요기술	305	ESS 기술개발사업(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6000	전력기술기반확충	6002	기반구축	301	전력표준화및인증지원사업(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6000	전력기술기반확충	6002	기반구축	302	친환경전지융합실증화단지구축(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6000	전력기술기반확충	6002	기반구축	310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R&D)(산업부)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500	원자력안전연구	1501	원자력안전연구(R&D)	401	원자력안전연구개발(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500	원자력안전연구	1501	원자력안전연구(R&D)	402	핵비확산 및 핵안보 이행기술개발(R&D)

조세지출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500	원자력안전연구	1501	원자력안전연구(R&D)	403	원자력안전연구기획평가(R&D)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000	출연연구기관지원	2031	직할출연연구기관지원(R&D)	40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000	출연연구기관지원	2031	직할출연연구기관지원(R&D)	402	한국원자력통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2000	출연연구기관지원	2031	직할출연연구기관지원(R&D)	403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운영비 지원
			070	환경	072	폐기물	1100	상하수 및 토양지하수 관리	1144	상하수도 및 토양지하수	302	CO ₂ 저장 환경관리기술개발(R&D)
			070	환경	072	폐기물	1100	상하수 및 토양지하수 관리	1144	상하수도 및 토양지하수	301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R&D)
			070	환경	072	폐기물	1400	자원순환사회 형성 촉진	1437	자원순환 기술개발(R&D)	308	폐자원에너지화 기술개발(R&D)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2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100	SW산업활성화	3186	기술확산지원	304	SW기술자산 활용촉진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2	산업기술지원	2100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2163	기술개발장려촉진	304	혁신기술의 체계화 및 융복합교류촉진지원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1300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촉진	1332	특허기술 활용촉진	303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	12의2	150	과학기술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1600	과학기술기반조성	1636	연구개발특구역육성	401	연구개발특구역육성(R&D)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12의3;12의4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31	벤처성장인프라지원	303	M&A활성화지원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61	사업전환및제도약지원(기금)	301	제도약지원자금(융자)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61	사업전환및제도약지원(기금)	302	사업전환촉진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24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100	산업경쟁력기반구축	3160	생산성향상지원	302	제조기반설계기술고도화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100	산업경쟁력기반구축	3160	생산성향상지원	304	ICT융합스마트공공보급확산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25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000	농산물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	3032	농산물유통개선(농특)	456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000	농산물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	3033	농산물유통개선(농안기금)	311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융자)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000	농산물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	3033	농산물유통개선(농안기금)	330	공용도매시장 시설현대화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000	농산물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	3033	농산물유통개선(농안기금)	350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2100	양곡관리	2131	식량생산유통지원	430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2400	친환경농업육성	2452	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	305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융자)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100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4155	전통시장및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지특)	301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지특,생활기반)

조세지출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100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4152	전통시장및중소유통물류 기반조성(지특)	301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기반조성(지특, 제주)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100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4156	전통시장및중소유통물류 기반조성(지특)	301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기반조성(지특, 세종)
			100	농림수산	103	수산·어촌	3000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3041	안전한수산물공급관리(지특)	350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
			100	농림수산	103	수산·어촌	3000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3040	수산물유통개선(농특)	307	수산물 물류 표준화
			100	농림수산	103	수산·어촌	3000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3040	수산물유통개선(농특)	309	소비지분산 물류센터 지원
			100	농림수산	103	수산·어촌	3000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3040	수산물유통개선(농특)	310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080	사회복지	086	노동	4100	산업재해예방	4158	산재예방시설용자(용자)	350	산재예방시설용자(용자)
			080	사회복지	086	노동	4100	산업재해예방	4151	클린사업장조성	350	클린사업장조성지원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500	에너지안전관리	5532	가스안전관리용자	301	가스안전관리(용자)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1300	농축수산물 안전성 제고	1331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301	축산식품안전관리
			090	보건	93	식품의약안전	1000	식품안전성제고	1032	식품 안전기반 구축	300	HACCP제도 활성화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300	국내외자원개발	5334	광물자원개발용자	301	해외자원개발특별용자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25의2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100	기후변화및에너지자원정책	5141	에너지이용효율향상(용자)	302	에너지절약시설설치(용자)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400	에너지공급체계구축	5467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301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용자)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400	에너지공급체계구축	5452	신재생에너지보급(기급)	303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070	환경	071	상하수도·수질	1100	상하수 및 토양지하수 관리	1148	하수처리시설확충(환특)	314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400	에너지공급체계구축	5452	신재생에너지보급(기급)	309	태양광 재활용센터 구축 기반 조성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25의3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700	축산업진흥	3735	친환경축산(축발)	329	가축분뇨처리지원(용자)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700	축산업진흥	3735	친환경축산(축발)	330	가축분뇨처리지원
			070	환경	071	상하수도·수질	1200	수질보전 및 관리	1230	기타 오염원 관리	301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070	환경	072	폐기물	1500	자원순환 기반 구축	1531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309	재활용시설설치
			070	환경	072	폐기물	1500	자원순환 기반 구축	1538	재활용 및 처리시설 설치	318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070	환경	072	폐기물	1400	자원순환사회 형성 촉진	1432	재활용산업육성	301	재활용산업육성용자(용자)
			070	환경	073	대기	1600	기후변화대응 및 대기보전	1632	저공해자동차 보급	302	천연가스자동차보급 기타 민간용자(용자)

조세지출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070	환경	073	대기	1600	기후변화대응 및 대기보전	1633	자동차배출가스 관리	301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조특	26	080	사회복지	086	노동	1000	고용정책	1045	고용유지지원금	350	고용유지지원금
			080	사회복지	086	노동	1000	고용정책	1046	고용촉진지원금	350	고용창출장려금
			080	사회복지	086	노동	1000	고용정책	1056	지역고용촉진지원	351	지역고용촉진지원금
			080	사회복지	086	노동	1000	고용정책	1043	중소기업청년인턴제	301	중소기업청년인턴제
			080	사회복지	086	노동	1000	고용정책	1050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350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080	사회복지	086	노동	1000	고용정책	1060	세대간상생고용지원	350	세대간상생고용지원
			080	사회복지	086	노동	1400	장애인고용증진	1455	장애인고용유지	306	장애인고용관리지원
			080	사회복지	086	노동	1400	장애인고용증진	1452	장애인고용장려금	303	장애인고용장려금
			080	사회복지	086	노동	1300	고용평등실현	1347	고령자고용촉진지원	350	장년고용안정지원금
		080	사회복지	086	노동	1300	고용평등실현	1345	일·가정양립지원	350	고용안정장려금	
청년고용증대세제	조특	29의5	080	사회복지	086	노동	1000	고용정책	1050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350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080	사회복지	086	노동	1000	고용정책	1060	세대간상생고용지원	350	세대간상생고용지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특	30	080	사회복지	086	노동	1000	고용정책	1050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350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080	사회복지	086	노동	1400	장애인고용증진	1455	장애인고용유지	306	장애인고용관리지원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조특	30의2	080	사회복지	086	노동	1300	고용평등실현	1345	일·가정양립지원	350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30의3	080	사회복지	086	노동	1000	고용정책	1045	고용유지지원금	350	고용유지지원금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특	30의4	080	사회복지	086	노동	1000	고용정책	1046	고용촉진지원금	350	고용창출장려금
			080	사회복지	086	노동	1000	고용정책	1056	지역고용촉진지원	351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30의5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52	창업기업지원용자(기금)	301	창업기업자금(용자)
중소기업 간의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조특	31;32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61	사업전환 및 제도약지원 (기금)	301	제도약지원자금(용자)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61	사업전환 및 제도약지원 (기금)	302	사업전환촉진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31	벤처성장인프라지원	303	M&A활성화지원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33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61	사업전환 및 제도약지원 (기금)	302	사업전환촉진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61	사업전환 및 제도약지원 (기금)	301	제도약지원자금(용자)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33의2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61	사업전환 및 제도약지원 (기금)	302	사업전환촉진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61	사업전환 및 제도약지원 (기금)	301	제도약지원자금(용자)

조세지출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기업의 금융채무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34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61	사업전환및제도약지원(기금)	301	제도약지원자금(용자)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37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31	벤처성장인프라지원	303	M&A활성화지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38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31	벤처성장인프라지원	303	M&A활성화지원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38의2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61	사업전환 및 제도약지원(기금)	301	제도약지원자금(용자)
내국법인의 외국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38의3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61	사업전환 및 제도약지원(기금)	301	제도약지원자금(용자)
자회사 매각을 위한 채무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39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61	사업전환 및 제도약지원(기금)	301	제도약지원자금(용자)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특	40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61	사업전환 및 제도약지원(기금)	301	제도약지원자금(용자)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44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61	사업전환 및 제도약지원(기금)	301	제도약지원자금(용자)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46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61	사업전환 및 제도약지원(기금)	301	제도약지원자금(용자)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46의7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31	벤처성장인프라지원	303	M&A활성화지원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47의4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61	사업전환 및 제도약지원(기금)	301	제도약지원자금(용자)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따른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	52	010	일반·지방행정	014	재정·금융	1100	금융정책	1131	금융구조조정지원	310	전입금환급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	60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200	지역경제경쟁력강화	4232	지역투자유치활성화	306	지역투자촉진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200	지역경제경쟁력강화	4232	지역투자유치활성화	307	지역투자촉진(세종)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	61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200	지역경제경쟁력강화	4232	지역투자유치활성화	306	지역투자촉진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200	지역경제경쟁력강화	4232	지역투자유치활성화	307	지역투자촉진(세종)
수도권과밀억제권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63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200	지역경제경쟁력강화	4232	지역투자유치활성화	306	지역투자촉진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200	지역경제경쟁력강화	4232	지역투자유치활성화	307	지역투자촉진(세종)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조특	63의2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200	지역경제경쟁력강화	4232	지역투자유치활성화	306	지역투자촉진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200	지역경제경쟁력강화	4232	지역투자유치활성화	307	지역투자촉진(세종)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64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4200	농촌지역개발 및 도농교류활성화	4240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300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4200	농촌지역개발 및 도농교류활성화	4242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300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제주)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4200	농촌지역개발 및 도농교류활성화	4230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300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세종)

조세지출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조특	66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200	경쟁력제고	3233	과수 및 원예경쟁력제고	303	과수 생산유통지원(용자)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200	경쟁력제고	3233	과수 및 원예경쟁력제고	304	과수 생산유통지원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200	경쟁력제고	3233	과수 및 원예경쟁력제고	350	원예시설현대화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200	경쟁력제고	3233	과수 및 원예경쟁력제고	360	원예시설현대화(용자)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200	경쟁력제고	3232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투자)	410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지자체)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200	경쟁력제고	3232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용자)	420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용자)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1100	농업경영체육성	1150	농식품전문투자펀드출자	300	농식품포태펀드출자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000	농산물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	3032	농산물유통개선(농특)	456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000	농산물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	3033	농산물유통개선(농안기금)	350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000	농산물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	3033	농산물유통개선(농안기금)	351	농산물마케팅지원
			100	농림수산	104	식품업	2800	식품산업육성	2833	식품안전 및 규격(농특)	310	국가인증 농식품지원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1000	농가경영안정	1031	농업재해보험	300	농업재해보험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700	축산업진흥	3733	축산업경쟁력제고	331	축산물직거래활성화 지원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700	축산업진흥	3733	축산업경쟁력제고	332	축산물직거래활성화 지원(용자)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700	축산업진흥	3735	친환경축산(축발)	329	가축분뇨처리지원(용자)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700	축산업진흥	3735	친환경축산(축발)	330	가축분뇨처리지원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2600	농지은행(농지, 용자)	2631	농지은행(농지, 용자)	343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용자)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2600	농지은행(농지, 용자)	2631	농지은행(농지, 용자)	350	농지규모화(용자)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2600	농지은행(농지, 용자)	2631	농지은행(농지, 용자)	400	농지매입비축(용자)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2100	양곡관리	2131	식량생산유통지원	350	들녘경영체육성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2400	친환경농업육성	2430	친환경농자재	301	친환경농자재지원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4200	농촌지역개발 및 도농교류활성화	4240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300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4200	농촌지역개발 및 도농교류활성화	4242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300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제주)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4200	농촌지역개발 및 도농교류활성화	4230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300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세종)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등	조특	67	100	농림수산	103	수산·어촌	2800	식품산업육성	2836	수산물가공(생활)	301	수산물가공산업육성(생활)
			100	농림수산	103	수산·어촌	2800	식품산업육성	2835	수산물가공(제주)	302	수산물가공산업육성(제주)

조세지출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100	농림수산	103	수산·어촌	3000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3040	수산물유통개선(농특)	307	수산물 물류 표준화
			100	농림수산	103	수산·어촌	3100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3140	친환경어업(농특)	300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100	농림수산	103	수산·어촌	3100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3140	친환경어업(농특)	301	친환경양식어업육성
			100	농림수산	103	수산·어촌	3100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3140	친환경어업(농특)	303	친환경 어구보급
			100	농림수산	103	수산·어촌	3100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3140	친환경어업(농특)	335	고효율 어선유류비절감장비지원(지자체)
			100	농림수산	103	수산·어촌	3100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3140	친환경어업(농특)	350	수산물수출 전략품목 육성
			100	농림수산	103	수산·어촌	3100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3140	친환경어업(농특)	351	관상어산업육성
			100	농림수산	103	수산·어촌	3100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3140	친환경어업(예특)	410	친환경에너지보급 및 용수관리
			100	농림수산	103	수산·어촌	3400	수산경영	3440	수산경영안정	311	수산장비(임대)활용(지자체)
			100	농림수산	103	수산·어촌	3400	수산경영	3443	재해대책	300	어업재해보험
			100	농림수산	103	수산·어촌	3400	수산경영	3450	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	301	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
			100	농림수산	103	수산·어촌	3400	수산경영	3465	어업경영자금(기금)	302	수산장비구입지원(용자)
			100	농림수산	103	수산·어촌	3400	수산경영	3465	어업경영자금(기금)	303	긴급경영안정자금(용자)
			100	농림수산	103	수산·어촌	3400	수산경영	3465	어업경영자금(기금)	370	수산모태펀드출자
			100	농림수산	103	수산·어촌	3400	수산경영	3465	어업경영자금(기금)	420	영이자금(용자)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특	68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200	경쟁력제고	3233	과수 및 원예경쟁력제고	303	과수 생산유통지원(용자)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200	경쟁력제고	3233	과수 및 원예경쟁력제고	304	과수 생산유통지원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200	경쟁력제고	3233	과수 및 원예경쟁력제고	350	원예시설현대화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200	경쟁력제고	3233	과수 및 원예경쟁력제고	360	원예시설현대화(용자)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200	경쟁력제고	3232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투자)	410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지자체)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200	경쟁력제고	3232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용자)	420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용자)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1100	농업경영체육성	1150	농식품전문투자펀드출자	300	농식품모태펀드출자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000	농산물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	3032	농산물유통개선(농특)	456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000	농산물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	3033	농산물유통개선(농안기금)	350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000	농산물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	3033	농산물유통개선(농안기금)	351	농산물마케팅지원
			100	농림수산	104	식품업	2800	식품산업육성	2833	식품안전 및 규격(농특)	310	국가인증 농식품지원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1000	농가경영안정	1031	농업재해보험	300	농업재해보험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700	축산업진흥	3733	축산업경쟁력제고	331	축산물직거래활성화 지원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700	축산업진흥	3733	축산업경쟁력제고	332	축산물직거래활성화 지원(용자)

조세지출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700	축산업진흥	3735	친환경축산(축발)	329	가축분뇨처리지원(용자)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700	축산업진흥	3735	친환경축산(축발)	330	가축분뇨처리지원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2600	농지은행(농지, 용자)	2631	농지은행(농지, 용자)	343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용자)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2600	농지은행(농지, 용자)	2631	농지은행(농지, 용자)	350	농지규모화(용자)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2600	농지은행(농지, 용자)	2631	농지은행(농지, 용자)	400	농지매입비축(용자)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2100	양곡관리	2131	식량생산유통지원	350	들녘경영체육성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2400	친환경농업육성	2430	친환경농자재	301	친환경농자재지원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4200	농촌지역개발 및 도농교류활성화	4240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300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4200	농촌지역개발 및 도농교류활성화	4242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300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제주)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4200	농촌지역개발 및 도농교류활성화	4230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300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세종)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69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1000	농가경영안정	1031	직접피해지원(FTA기금)	393	폐업지원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69의2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1000	농가경영안정	1031	직접피해지원(FTA기금)	393	폐업지원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	72	010	일반·지방행정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1200	지역발전	1249	새마을금고지원	300	새마을금고 및 행정공제회 건전성 제고
			100	농림수산	103	수산·어촌	3400	수산경영	3431	수협경제사업활성화	301	수협지도경제사업활성화
학교법인·국립대학병원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조특	74①	050	교육	052	고등교육	2800	대학교육 역량강화(기금,용자)	2861	사학시설자금용자	300	사학시설자금용자(사학진흥기금)
			050	교육	052	고등교육	2200	대학교육 역량강화	2256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300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R&D)
			050	교육	053	평생·직업교육	4600	산학연 협력 활성화	4603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	300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 전문대학 지원
			050	교육	053	평생·직업교육	4600	산학연 협력 활성화	4601	학교기업지원사업	300	학교기업지원사업(R&D)
			050	교육	053	평생·직업교육	4100	평생직업교육 체제 구축	4134	평생학습 활성화지원	300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지원
			050	교육	052	고등교육	2200	대학교육 역량강화	2261	국립대학법인 운영 지원	300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050	교육	052	고등교육	2200	대학교육 역량강화	2261	국립대학법인 운영 지원	301	인천대학교 법인화 성과관리사업
			080	사회복지	089	사회복지일반	2600	사회복지기반조성	2631	사회복지사업지원	303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
			080	사회복지	089	사회복지일반	2600	사회복지기반조성	2631	사회복지사업지원	308	민간사회복지지원육성지원
			050	교육	052	고등교육	2200	대학교육 역량강화	2235	국립대학병원 여건개선	301	국립대병원지원
			090	보건	091	보건의료	2700	공공보건의료확충	2744	지방대병원 특화육성	315	공공보건의료기관 병문안 문화개선 지원

조세지출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090	보건	091	보건의료	3500	암 및 원폭 한센인 지원	3531	국립암센터운영	300	암연구소 및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운영(R&D)
			090	보건	091	보건의료	2700	공공보건의료확충	2743	지방의료원 등 육성	304	지역거점병원공공성강화
			090	보건	091	보건의료	2700	공공보건의료확충	2736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강화	500	지방의료원 등 정보화 지원(정보화)
			060	문화및관광	061	문화예술	1500	창의적문화정책구현	1551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	300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생활)
			060	문화및관광	061	문화예술	1500	창의적문화정책구현	1553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제주)	300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제주)
			060	문화및관광	061	문화예술	1500	창의적문화정책구현	1555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세종)	300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세종)
			060	문화및관광	061	문화예술	2100	인문정신문화진흥 및 문화기반 육성	2131	도서관정보·정책체계활성화	301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 환경개선
			060	문화및관광	061	문화예술	2100	인문정신문화진흥 및 문화기반 육성	2133	박물관 정책 활성화	300	박물관 진흥지원
			060	문화및관광	061	문화예술	2100	인문정신문화진흥 및 문화기반 육성	2133	박물관 정책 활성화	301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060	문화및관광	061	문화예술	1600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1631	문화예술단체지원	300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
			060	문화및관광	063	체육	5300	스포츠산업 육성 및 국제교류	5361	국제체육 지원	302	국제대회 국내개최 지원
			060	문화및관광	063	체육	5300	스포츠산업 육성 및 국제교류	5361	국제체육 지원	311	2018평창동계올림픽경기대회 지원
			060	문화및관광	063	체육	5300	스포츠산업 육성 및 국제교류	5361	국제체육 지원	320	2017무주세계대관도선수권대회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감면	조특	77	010	일반·지방행정	014	재정·금융	2000	국유토지비축(기획재정부)	2035	비축토지매입	300	비축토지매입
			120	교통및물류	121	도로	1800	민자도로건설및관리	1831	민자유치사업지원	303	민자유치건설보조금
			120	교통및물류	122	철도	2600	일반철도건설	2631	일반철도건설	349	대곡·소사 복선전철
			120	교통및물류	122	철도	2600	일반철도건설	2631	일반철도건설	350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120	교통및물류	122	철도	2600	일반철도건설	2632	일반철도조사설계	348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120	교통및물류	122	철도	2800	광역철도건설	2833	광역철도건설지원	311	신안산선 복선전철
			120	교통및물류	122	철도	2800	광역철도건설	2833	광역철도건설지원	318	수도권광역급행철도
			120	교통및물류	122	철도	2800	광역철도건설	2833	광역철도건설지원	319	진접선 복선전철
			120	교통및물류	122	철도	2800	광역철도건설	2833	광역철도건설지원	320	하남선 복선전철
			120	교통및물류	122	철도	2800	광역철도건설	2833	광역철도건설지원	324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120	교통및물류	122	철도	2800	광역철도건설	2833	광역철도건설지원	326	대구권광역철도
			120	교통및물류	125	항공·공항	3500	일반공항건설및관리	3538	소형공항건설	302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120	교통및물류	125	항공·공항	3600	항공발전지원	3632	소음대책	301	공항소음대책

조세지출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120	교통및물류	123	도시철도	3000	도시철도건설	3031	지하철건설지원	320	광주도시철도2호선건설
			120	교통및물류	123	도시철도	3000	도시철도건설	3031	지하철건설지원	322	양산도시철도 건설
			120	교통및물류	122	철도	2800	광역철도건설지원	2833	광역철도건설지원	304	수원-인천복선전철
			120	교통및물류	122	철도	2800	광역철도건설지원	2833	광역철도건설지원	311	신안산선복선전철
			120	교통및물류	122	철도	2800	광역철도건설지원	2833	광역철도건설지원	315	별내선 복선전철
			120	교통및물류	122	철도	2800	광역철도건설지원	2833	광역철도건설지원	318	수도권광역급행철도
			120	교통및물류	122	철도	2800	광역철도건설지원	2833	광역철도건설지원	319	진접선 복선전철
			120	교통및물류	122	철도	2800	광역철도건설지원	2833	광역철도건설지원	324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120	교통및물류	122	철도	2800	광역철도건설지원	2833	광역철도건설지원	326	대구권광역철도
			120	교통및물류	122	철도	2800	광역철도건설지원	2833	광역철도건설지원	327	안삼-하양 복선전철
			070	환경	071	상하수도·수질	1300	4대강 유역관리	1334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한강)	301	토지등의 매수
			070	환경	071	상하수도·수질	1300	4대강 유역관리	1337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낙동강)	301	토지등의 매수
			070	환경	071	상하수도·수질	1300	4대강 유역관리	1340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금강)	301	토지등의 매수
		070	환경	071	상하수도·수질	1300	4대강 유역관리	1343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영산강)	301	토지등의 매수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	85의6①·②	080	사회복지	086	노동	1000	고용정책	1037	사회적기업육성	301	사회적기업 육성
			080	사회복지	086	노동	1000	고용정책	1037	사회적기업육성	312	사회적기업육성(일자리창출, 생활)
			080	사회복지	086	노동	1000	고용정책	1037	사회적기업육성	313	사회적기업육성(일자리창출, 세종)
			080	사회복지	086	노동	7000	고용노동행정지원	7041	제주이관업무지원	309	사회적기업육성(특행)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85의8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200	지역경제경쟁력강화	4232	지역투자유치활성화	306	지역투자촉진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200	지역경제경쟁력강화	4232	지역투자유치활성화	307	지역투자촉진(세종)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88의2	080	사회복지	085	노인·청소년	2100	노인생활안정	2131	노인복지지원	300	기초연금지급
			080	사회복지	082	취약계층지원	1500	장애인생활안정지원	1531	장애인소득보장	300	장애수당(기초)
			080	사회복지	082	취약계층지원	1500	장애인생활안정지원	1531	장애인소득보장	301	장애수당(차상위 등)
			080	사회복지	082	취약계층지원	1500	장애인생활안정지원	1531	장애인소득보장	305	장애인연금
			080	사회복지	087	보훈	1100	보훈심사및보상	1132	보훈보상금	300	보상금
			080	사회복지	087	보훈	1100	보훈심사및보상	1137	수시보상금	308	사망일시금
			080	사회복지	087	보훈	1100	보훈심사및보상	1137	수시보상금	310	영주귀국정착금
			080	사회복지	087	보훈	3100	보훈선양	3141	독립유공자에우	401	독립유공자및유족지원
		080	사회복지	087	보훈	2200	생활안정지원	2259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387	국가유공자대부(용자)	

조세지출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080	사회복지	087	보훈	1100	보훈심사및보상	1133	수당	301	간호수당
			080	사회복지	087	보훈	1100	보훈심사및보상	1133	수당	304	고엽제 수당
			080	사회복지	087	보훈	2100	보훈의료복지	2155	고엽제지원	368	고엽제환자검진
			080	사회복지	087	보훈	2100	보훈의료복지	2160	국가유공자등복지지원	430	국가유공자등 위로격려
			080	사회복지	087	보훈	2100	보훈의료복지	2259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388	5.18민주유공자대부(음자)
			080	사회복지	081	기초생활보장	1100	기초생활보장	1131	기초생활급여	300	생계급여
			080	사회복지	081	기초생활보장	1100	기초생활보장	1131	기초생활급여	303	해산장제급여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94	080	사회복지	086	노동	1000	고용정책	1047	고용창출지원사업	351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음자)
			080	사회복지	086	노동	1400	장애인고용증진	1453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304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080	사회복지	086	노동	1400	장애인고용증진	1455	장애인고용유지	306	장애인고용관리지원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95의2	080	사회복지	088	주택	1000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	1034	주택정책지원	302	주거급여지원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96	080	사회복지	088	주택	1400	임대주택지원(출자)	1440	임대주택지원	402	다가구매입임대출자
			080	사회복지	088	주택	1400	임대주택지원(출자)	1440	임대주택지원	403	전세임대경상보조
			080	사회복지	088	주택	1400	임대주택지원(출자)	1440	임대주택지원	404	국민임대출자
			080	사회복지	088	주택	1400	임대주택지원(출자)	1440	임대주택지원	407	영구임대출자
			080	사회복지	088	주택	1400	임대주택지원(출자)	1440	임대주택지원	408	행복주택출자
근로장려 및 자녀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1) 근로장려금 지급	조특	100의2~10	080	분야	086	노동	1000	고용정책	1036	대상별취업지원	301	취업성공패키지지원(일반)
			080	사회복지	086	노동	3000	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	3062	근로자생활안정대부(음자)	306	생활안정자금대부(음자)
			080	사회복지	086	노동	3000	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	3064	신용보증대위변제	308	신용보증대위변제
			080	사회복지	081	기초생활보장	1100	기초생활보장	1131	기초생활급여	300	생계급여
근로장려 및 자녀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2) 자녀장려금 지급	조특	100의27~31	080	사회복지	084	보육·가족및여성	3100	보육지원강화	3133	영유아보육료지원	331	영유아보육료지원
			080	사회복지	084	보육·가족및여성	3100	보육지원강화	3133	영유아보육료지원	336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080	사회복지	084	보육·가족및여성	3100	보육지원강화	3141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300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080	사회복지	081	기초생활보장	1100	기초생활보장	1131	교육급여	300	교육급여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102	100	농림수산	102	임업산촌	1500	산림자원육성	1534	탄소흡수원확충	300	조림
			100	농림수산	102	임업산촌	1500	산림자원육성	1534	탄소흡수원확충	302	숯가꾸기
			100	농림수산	102	임업산촌	1500	산림자원육성	1538	임업인정책자금 및 기술지도	300	산림사업종합자금(음자금)
			100	농림수산	102	임업산촌	1500	산림자원육성	1538	임업인정책자금 및 기술지도	301	산림사업종합자금(이차보전)

조세지출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제3차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104의14	120	교통및물류	126	물류등기타	4000	물류정책	4034	물류산업지원	309	물류산업지원
대학 재정 진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조특	104의16	050	교육	052	고등교육	2800	대학교육역량강화(기금, 융자)	2861	사학시설자금융자	300	사학시설자금융자(사학진흥기금)(융자)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04의19	080	사회복지	088	주택	1100	분양주택등지원	1134	분양주택지원(융자)	401	분양주택(융자)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04의22	060	문화및관광	063	체육	5100	생활체육육성	5161	생활체육 활성화	307	체육·문화예술사업의지원
			060	문화및관광	063	체육	5500	장애인체육육성	5561	장애인체육 육성	301	장애인 체육활성화 지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104의24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200	지역경제경쟁력강화	4232	지역투자유치활성화	306	지역투자촉진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200	지역경제경쟁력강화	4232	지역투자유치활성화	307	지역투자촉진(세종)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900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	4901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	302	투자유치기반조성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104의25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400	에너지공급체계구축	5432	석유안정공급	303	석유유통구조개선
방위산업물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특	105①1	040	국방	043	방위력개선	7000	방위사업 종합지원	7032	방위산업 진흥(일반)	305	방위산업 육성지원
			105①3	120	교통및물류	123	도시철도	3000	도시철도건설	3031	지하철건설지원	311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120	교통및물류	123	도시철도	3000	도시철도건설	3031	지하철건설지원	312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120	교통및물류	123	도시철도	3000	도시철도건설	3031	지하철건설지원	315	서울도시철도 9호선(3단계) 건설
			120	교통및물류	123	도시철도	3000	도시철도건설	3031	지하철건설지원	316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
			120	교통및물류	123	도시철도	3000	도시철도건설	3031	지하철건설지원	320	광주도시철도2호선건설
			120	교통및물류	123	도시철도	3000	도시철도건설	3031	지하철건설지원	322	양산도시철도 건설
			120	교통및물류	123	도시철도	3000	도시철도건설	3031	지하철건설지원	323	서울지하철7호선석남연장
			120	교통및물류	123	도시철도	3000	도시철도건설	3031	지하철건설지원	327	도시철도 내진보강 지원
			120	교통및물류	123	도시철도	3000	도시철도건설	3032	경량전철건설지원	309	신림선 경전철 건설
			120	교통및물류	122	철도	2800	광역철도건설지원	2833	광역철도건설지원	304	수원-인천복선전철
			120	교통및물류	122	철도	2800	광역철도건설지원	2833	광역철도건설지원	311	신안산선복선전철
			120	교통및물류	122	철도	2800	광역철도건설지원	2833	광역철도건설지원	315	별내선 복선전철
			120	교통및물류	122	철도	2800	광역철도건설지원	2833	광역철도건설지원	316	신분당선(용산-강남)
			120	교통및물류	122	철도	2800	광역철도건설지원	2833	광역철도건설지원	318	수도권광역급행철도
			120	교통및물류	122	철도	2800	광역철도건설지원	2833	광역철도건설지원	319	진접선 복선전철
			120	교통및물류	122	철도	2800	광역철도건설지원	2833	광역철도건설지원	320	하남선 복선전철
			120	교통및물류	122	철도	2800	광역철도건설지원	2833	광역철도건설지원	321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120	교통및물류	122	철도	2800	광역철도건설지원	2833	광역철도건설지원	324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조세지출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120	교통및물류	122	철도	2800	광역철도건설지원	2833	광역철도건설지원	325	도봉산-옥정 복선전철
			120	교통및물류	122	철도	2800	광역철도건설지원	2833	광역철도건설지원	326	대구권광역철도
			120	교통및물류	122	철도	2800	광역철도건설지원	2833	광역철도건설지원	327	안심-하양 복선전철
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특	105①4	080	사회복지	082	취약계층지원	1500	장애인생활안정지원	1532	장애인사회참여 기반조성	304	장애인보조기구지원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특	105①5·6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700	축산업진흥	3760	축사시설현대화(FTA)	332	축사시설현대화(용자)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700	축산업진흥	3760	축사시설현대화(FTA)	346	축사시설현대화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2400	친환경농업육성	2430	친환경농자재	301	친환경농자재지원
			100	농림수산	103	수산·어촌	3400	수산경영	3465	어업경영자금(기금)	302	수산장비구입지원(용자)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특례	조특	105의2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700	축산업진흥	3760	축사시설현대화(FTA)	332	축사시설현대화(용자)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700	축산업진흥	3760	축사시설현대화(FTA)	346	축사시설현대화
			100	농림수산	103	수산·어촌	3400	수산경영	3465	어업경영자금(기금)	302	수산장비구입지원(용자)
국민주택 및 동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	106①4	080	사회복지	088	주택	1100	분양주택등지원	1134	분양주택지원(용자)	401	분양주택(용자)
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	106①9	070	환경	073	대기	1600	기후변화대응및대기보전	1632	저공해자동차보급	301	천연가스자동차보급
전기 시내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	106①9의2	070	환경	073	대기	1600	기후변화대응및대기보전	1633	자동차배출가스관리	301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개인택시용 차량 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	106①9의3	120	교통및물류	126	물류등기타	4900	대중교통육성	4931	대중교통체계구축	316	택시산업지원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	106①10	090	보건	091	보건의료	4800	질병관리본부지원	4860	희귀질환자지원	306	희귀질환자지원
임산물 중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	106①12	100	농림수산	102	임업산촌	1500	산림자원육성	1535	임업생산 및 목재활용 증진	303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
농·어민이 직수입하는 농·축산·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	106②9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700	축산업진흥	3760	축사시설현대화(FTA)	332	축사시설현대화(용자)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700	축산업진흥	3760	축사시설현대화(FTA)	346	축사시설현대화
			100	농림수산	103	수산·어촌	3400	수산경영	3465	어업경영자금(기금)	302	수산장비구입지원(용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감면	조특	106의7	120	교통및물류	126	물류등기타	4900	대중교통육성	4931	대중교통체계구축	316	택시산업지원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특	108	070	환경	072	폐기물	1400	자원순환사회 형성 촉진	1432	재활용산업육성	301	재활용산업육성용자(용자)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특	109④	070	환경	073	대기	1600	기후변화대응및대기보전	1633	자동차배출가스관리	301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조특	111의3	120	교통및물류	126	물류등기타	4900	대중교통육성	4931	대중교통체계구축	316	택시산업지원
창업중소기업의 용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조특	116①19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52	창업기업지원용자(기금)	301	창업기업자금(용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	117①1·2·2의3·2의4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32	창업활성화지원	302	창업사업화지원

조세지출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32	창업활성화지원	308	중소기업 재기지원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52	창업기업지원용자(기금)	301	창업기업자금(용자)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52	창업기업지원용자(기금)	302	창업성공패키지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에 대한 관세 감면	조특	118①3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400	에너지공급체계구축	5467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301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용자)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400	에너지공급체계구축	5452	신재생에너지보급(기금)	303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 감면	조특	118의2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200	지역경제경쟁력강화	4232	지역투자유치활성화	306	지역투자촉진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200	지역경제경쟁력강화	4232	지역투자유치활성화	307	지역투자촉진(세종)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900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	4901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	302	투자유치기반조성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	121의2;121의4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900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	4901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	302	투자유치기반조성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900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	4901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	302	투자유치기반조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	121의20	060	문화및관광	061	문화예술	2000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2032	문화중심도시조성	300	문화중심도시조성 및 운영
			060	문화및관광	061	문화예술	2000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2032	문화중심도시조성	301	문화중심도시조성(지자체)
수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조세특례	조특	121의25①	100	농림수산	103	수산·어촌	3400	수산경영	3431	수협경제사업활성화	301	수협지도경제사업활성화
			100	농림수산	103	수산·어촌	3400	수산경영	3431	수협경제사업활성화	301	수협지도경제사업활성화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 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21의26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61	사업전환및제도약지원(기금)	301	제도약지원자금(용자)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21의27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61	사업전환및제도약지원(기금)	301	제도약지원자금(용자)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특	121의28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61	사업전환및제도약지원(기금)	301	제도약지원자금(용자)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21의29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61	사업전환및제도약지원(기금)	301	제도약지원자금(용자)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21의30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61	사업전환및제도약지원(기금)	301	제도약지원자금(용자)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21의31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61	사업전환및제도약지원(기금)	301	제도약지원자금(용자)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조특	140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300	국내외자원개발	5333	광물자원개발	302	해외자원개발조사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300	국내외자원개발	5334	광물자원개발용자	301	해외자원개발특별용자
장애인, 환자수송, 영일용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개소	18①3	080	사회복지	082	취약계층지원	1500	장애인생활안정지원	1542	장애인권익증진 및 자립생활지원	301	장애인운전교육장 입학 및 순회교육
			120	교통및물류	126	물류등기타	4900	대중교통육성	4932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30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세지출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골프선수의 골프장 이용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개소	19의2_1·2	090	보건	091	보건의료	2800	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	2835	119구급 운영지원	315	119구급대 지원		
			120	교통및물류	126	물류등기타	4900	대중교통육성	4931	대중교통체계구축	316	택시산업지원		
			060	문화및관광	063	체육	5200	전문체육육성	5261	대한체육회 지원	312	우수선수양성지원		
항공기, 반도체 제조·수리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관세	89①	120	교통및물류	126	물류등기타	4100	국토교통연구개발	4161	항공기술연구	301	항공안전기술개발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2	공공기술개발	301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R&D)		
			130	통신	131	방송통신	4500	정보통신방송산업진흥	4535	정보통신산업융합 원천기술	324	전자정보디바이스산업원천기술개발(R&D, 정보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관세	90①4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1	다부처기술개발	303	민군기술협력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1	다부처기술개발	402	나노융합2020(R&D)(산업부)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1	다부처기술개발	403	범부처전주거신약개발(R&D)(산업부)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1	다부처기술개발	405	포스트게놈 신산업육성을 위한 다부처유전체사업(R&D)(산업부)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2	공공기술개발	301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2	공공기술개발	302	국민안전증진기술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2	공공기술개발	303	소형무장헬기연계민수헬기핵심 기술개발사업(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2	공공기술개발	304	다목적실용위성기술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3	우수기술역량강화	301	우수기술연구센터(ATC)(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3	우수기술역량강화	302	사업화연계기술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4	미래성장동력	301	창의산업미래성장동력(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4	미래성장동력	302	시스템산업미래성장동력(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4	미래성장동력	303	소재부품산업미래성장동력(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700	에너지기술개발	5702	에너지기술개발	5702	에너지공급기술	301	자원개발기술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700	에너지기술개발	5702	에너지기술개발	5702	에너지공급기술	302	에너지자원순환기술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700	에너지기술개발	5701	에너지기술개발	5701	에너지수요기술	301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에트)(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700	에너지기술개발	5701	에너지기술개발	5701	에너지수요기술	302	LED시스템조명2.0(R&D)

조세지출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700	에너지기술개발	5701	에너지수요기술	310	에너지안전기술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900	전력기술개발	5901	전력공급기술	301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900	전력기술개발	5901	전력공급기술	303	원자력핵심기술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900	전력기술개발	5901	전력공급기술	304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900	전력기술개발	5902	전력수요기술	301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900	전력기술개발	5902	전력수요기술	302	전력피크대응을 위한 ESS실증연구(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900	전력기술개발	5902	전력수요기술	304	멀티터미널직류송배전시스템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900	전력기술개발	5902	전력수요기술	305	ESS 기술개발사업(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1	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	301	전자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1	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	302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1	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	303	자동차산업핵심기술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1	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	304	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4	소재부품산업글로벌전문기술개발	301	소재부품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4	소재부품산업글로벌전문기술개발	302	센서산업고도화전문기술개발사업(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2	시스템산업글로벌전문기술개발	301	전자시스템전문기술개발사업(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2	시스템산업글로벌전문기술개발	302	생산시스템산업전문기술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2	시스템산업글로벌전문기술개발	303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61	대체물질기술개발	462	대체물질활용기술개발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3	소재부품산업핵심기술개발	301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3	소재부품산업핵심기술개발	302	소재부품기술개발(R&D)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500	주력산업진흥	3573	소재부품산업핵심기술개발	303	전자부품산업핵심기술개발(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10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58	첨단융합기술개발	401	STEAM연구(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10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58	첨단융합기술개발	402	글로벌 프론티어지원(R&D)

조세지출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10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58 첨단융합기술개발	404 무인이동체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10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58 첨단융합기술개발	411 국가전략프로젝트(R&D)(미래부)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10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38 바이오·의료기술개발	401 바이오·의료기술개발(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10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38 바이오·의료기술개발	403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R&D)(미래부)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10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38 바이오·의료기술개발	404 뇌과학원천기술개발(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10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38 바이오·의료기술개발	405 포스트게놈 산업융성을 위한 다부처 유전체 사업(R&D)(미래부)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10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39 나노·소재기술개발	401 나노·소재기술개발(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10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39 나노·소재기술개발	402 나노융합 2020(R&D)(미래부)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10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39 나노·소재기술개발	403 미래소재디스커버리지원(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10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60 에너지·환경기술개발	401 친환경에너지타운(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10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39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사업	402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기금,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10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44 공공복지 안전 연구개발	401 공공복지 안전 연구(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10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44 공공복지 안전 연구개발	402 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및운용(R&D)(미래부)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10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60 에너지·환경기술개발	401 핵융합기초연구(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10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60 에너지·환경기술개발	403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10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60 에너지·환경기술개발	404 해양극저기초원천기술개발(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10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65 재난재해대응기술개발	402 재난안전플랫폼기술개발(R&D)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10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159 차세대정보·컴퓨팅기술개발	401 차세대정보·컴퓨팅기술개발(R&D)
장애인용품 관세 감면	관세	91_4·5	080	사회복지	082	취약계층지원	1500 장애인생활안정지원	1532 장애인사회참여 기반조성	304 장애인보조기구지원
			090	보건	091	보건의료	4800 질병관리본부지원	4860 회귀질환자지원	306 회귀질환자지원
환경오염방지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관세	95①1·2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700 축산업진흥	3735 친환경축산(축발)	329 가축분뇨처리지원(용자)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700 축산업진흥	3735 친환경축산(축발)	330 가축분뇨처리지원
			070	환경	071	상하수도·수질	1200 수질보전 및 관리	1230 기타 오염원 관리	301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070	환경	072	폐기물	1500 자원순환 기반 구축	1531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309 재활용시설설치
			070	환경	072	폐기물	1500 자원순환 기반 구축	1538 재활용 및 처리시설 설치	318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070	환경	072	폐기물	1400 자원순환사회 형성 촉진	1432 재활용산업육성	301 재활용산업육성용자(용자)

조세지출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비과세	소득	12_3거	080	사회복지	086	노동	1000	고용정책	1035	해외취업지원	304	해외취업지원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소득	51①1	080	사회복지	085	노인·청소년	2100	노인생활안정	2131	노인복지지원	300	기초연금지급
장애인 추가공제	소득	51①2	080	사회복지	082	취약계층지원	1500	장애인생활안정지원	1531	장애인소득보장	300	장애수당(기초)
			080	사회복지	082	취약계층지원	1500	장애인생활안정지원	1531	장애인소득보장	301	장애수당(차상위 등)
			080	사회복지	082	취약계층지원	1500	장애인생활안정지원	1531	장애인소득보장	305	장애인연금
한부모 추가공제	소득	51①6	080	사회복지	084	보육·가족및여성	2100	가족기능강화	2131	한부모가족지원(기금)	431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080	사회복지	084	보육·가족및여성	2100	가족기능강화	2131	한부모가족지원(기금)	433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특별공제	소득	52④·⑤	080	사회복지	088	주택	1200	구입·전세자금	1231	주택구입·전세자금(용자)	401	주택구입·전세자금(용자)
자녀세액공제	소득	59의2;(구) 소득51①4 ·5;(구)소 득51의2	080	사회복지	084	보육·가족및여성	3100	보육지원강화	3133	영유아보육료지원	331	영유아보육료지원
			080	사회복지	084	보육·가족및여성	3100	보육지원강화	3133	영유아보육료지원	336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080	사회복지	084	보육·가족및여성	3100	보육지원강화	3141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300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080	사회복지	081	기초생활보장	1100	기초생활보장	1131	교육급여	300	교육급여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52의2	080	사회복지	082	취약계층지원	1500	장애인생활안정지원	1531	장애인소득보장	300	장애수당(기초)
			080	사회복지	082	취약계층지원	1500	장애인생활안정지원	1531	장애인소득보장	301	장애수당(차상위 등)
			080	사회복지	082	취약계층지원	1500	장애인생활안정지원	1531	장애인소득보장	305	장애인연금

〈표 IV-4〉 유형 E 연계결과

조세지출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6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31	벤처성장인프라지원	301	벤처기업경쟁력강화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31	벤처성장인프라지원	302	벤처캐피탈선진화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31	벤처성장인프라지원	303	M&A활성화지원
상생결제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7의4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100	산업경쟁력기반구축	3135	대중소기업동반성장	301	대중소기업동반성장인프라구축
			010	일반·지방행정	016	일반행정	1300	중소기업경쟁여건개선	1331	대중소기업간 거래태개선 및 동반성장시책추진	400	대중소기업간 거래태개선 및 동반성장시책추진
상생결제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7의4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200	동반성장지원	4231	기업간협력증진	301	대중소기업간협력증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조특	8의3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100	산업경쟁력기반구축	3135	대중소기업동반성장	301	대중소기업동반성장인프라구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조특	8의3	010	일반·지방행정	016	일반행정	1300	중소기업경쟁여건개선	1331	대중소기업간 거래태개선 및 동반성장시책추진	400	대중소기업간 거래태개선 및 동반성장시책추진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200	동반성장지원	4231	기업간협력증진	301	대중소기업간협력증진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2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1300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촉진	1332	특허기술 활용촉진	302	특허정보활용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조특	13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32	창업활성화지원	301	창업저변확대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32	창업활성화지원	302	창업사업화지원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32	창업활성화지원	303	창업선도대학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32	창업활성화지원	305	윈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32	창업활성화지원	308	중소기업 재기지원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52	창업기업지원용자(기금)	301	창업기업자금(용자)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52	창업기업지원용자(기금)	302	창업성공패키지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31	벤처성장인프라지원	302	벤처캐피탈선진화

조세지출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4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32	창업활성화지원	301	창업저변확대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32	창업활성화지원	302	창업사업화지원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32	창업활성화지원	303	창업선도대학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32	창업활성화지원	305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32	창업활성화지원	308	중소기업 재기지원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52	창업기업지원용자(기금)	301	창업기업자금(용자)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52	창업기업지원용자(기금)	302	창업성공패키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	16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32	창업활성화지원	301	창업저변확대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32	창업활성화지원	302	창업사업화지원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32	창업활성화지원	303	창업선도대학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32	창업활성화지원	305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32	창업활성화지원	308	중소기업 재기지원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52	창업기업지원용자(기금)	301	창업기업자금(용자)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52	창업기업지원용자(기금)	302	창업성공패키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과세특례	조특	16의2,16의3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31	벤처성장인프라지원	302	벤처캐피탈선진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조특	18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900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	4901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	302	투자유치기반조성
			080	사회복지	086	노동	5000	국제고용노동협력	5033	외국인력관리지원	308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

조세지출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8의2	080	사회복지	086	노동	5000	국제고용노동협력	5033	외국인력관리지원	308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24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100	산업경쟁력기반구축	3160	생산성향상지원	301	국가생산성혁신기반구축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25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3200	산업기술진흥	3237	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	301	산업기술보안기반구축
환경보전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조특	25의3	070	환경	073	대기	1600	기후변화대응 및 대기보전	1634	대기오염물질 관리(환투)	303	악취취약지역 및 시설관리대책
			070	환경	073	대기	1600	기후변화대응 및 대기보전	1634	대기오염물질 관리(환투)	304	대기유해물질관리
			070	환경	071	상하수도·수질	1200	수질보전 및 관리	1232	산업폐수 관리	302	공단폐수처리시설
			070	환경	071	상하수도·수질	1200	수질보전 및 관리	1232	산업폐수 관리	304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070	환경	075	해양환경	4300	해양오염관리	4333	해양오염방제	300	해양오염예방활동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25의4	090	보건	093	식품의약품안전	2000	의약품 안전성 제고	2031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300	의약품안전 감시 및 대응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29의2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400	중소기업인력지원	5441	국립마이스터고육성	301	국립공고(마이스터고)육성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29의3	080	사회복지	084	보육·가족및여성	1200	여성능력개발 및 일자리지원강화	1231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311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핵심인력 성과보상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특	29의6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400	중소기업인력지원	5431	중소기업인력양성및취업촉진	302	인력유입인프라조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특	30	080	사회복지	084	보육·가족및여성	1200	여성능력개발 및 일자리지원강화	1231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311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46의8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32	창업활성화지원	301	창업지원확대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32	창업활성화지원	302	창업사업화지원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32	창업활성화지원	303	창업선도대학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32	창업활성화지원	305	윈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32	창업활성화지원	308	중소기업 계기지원

조세지출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52	창업기업지원용자(기금)	301	창업기업자금(용자)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52	창업기업지원용자(기금)	302	창업성공패키지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31	벤처성장인프라지원	302	벤처캐피탈선진화
			010	일반·지방행정	014	재정·금융	1100	금융정책	1131	금융구조조정지원	360	소송 및 법적절차비
			010	일반·지방행정	014	재정·금융	1100	금융정책	1131	금융구조조정지원	370	기타정리자문경비등
			140	국토및지역개발	142	지역및도시	5600	도시정책	5632	도시개발	302	부동산투자회사 감독 및 검사지원
기부장려금	조특	75	080	사회복지	089	사회복지일반	2600	사회복지기반조성	2631	사회복지사업지원	312	나눔문화확산
정치자금의손금산입특례등	조특	76	010	일반·지방행정	011	입법및선거관리	1100	선거의공정한관리	1132	정당발전지원	321	정치후원금조성활성화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77	040	국방	042	전력유지	2500	군사시설건설및운영	2535	부지매입	301	부지매입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77의3	140	국토및지역개발	142	지역및도시	5500	지역개발	5551	개발제한구역지원	301	개발제한구역관리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	85의6①·②	080	사회복지	086	노동	1400	장애인고용증진	1453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304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특	86의3	110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4100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4131	소상공인지원(기금)	319	소상공인제기지원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87의6	140	국토및지역개발	142	지역및도시	5600	도시정책	5632	도시개발	302	부동산투자회사 감독 및 검사지원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조특	88의5,89의3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1000	농가경영안정	1003	농협사업구조개선	302	농협사업구조개선지원
			100	농림수산	103	수산·어촌	3400	수산경영	3431	수협경제사업활성화	301	수협지도경제사업활성화
			010	일반·지방행정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1200	지역발전	1249	새마을금고지원	300	새마을금고 및 행정공제회 건진성 제고
해외자원개발투자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91의6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300	국내외자원개발	5333	광물자원개발	302	해외자원개발조사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300	국내외자원개발	5334	광물자원개발용자	301	해외자원개발특별용자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94	080	사회복지	086	노동	3000	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	3061	근로자복지지원	301	근로자복지지원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96	080	사회복지	088	주택	1400	임대주택지원(출자)	1440	임대주택지원	409	임대주택리츠출자

조세지출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97의3	080	사회복지	088	주택	1400	임대주택지원(출자)	1440	임대주택지원	402	다가구매입임대출자
			080	사회복지	088	주택	1400	임대주택지원(출자)	1440	임대주택지원	403	전세임대경상보조
			080	사회복지	088	주택	1400	임대주택지원(출자)	1440	임대주택지원	404	국민임대출자
			080	사회복지	088	주택	1400	임대주택지원(출자)	1440	임대주택지원	407	영구임대출자
			080	사회복지	088	주택	1400	임대주택지원(출자)	1440	임대주택지원	408	행복주택출자
			080	사회복지	088	주택	1400	임대주택지원(출자)	1440	임대주택지원	409	임대주택리츠출자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97의4	080	사회복지	088	주택	1400	임대주택지원(출자)	1440	임대주택지원	402	다가구매입임대출자
			080	사회복지	088	주택	1400	임대주택지원(출자)	1440	임대주택지원	403	전세임대경상보조
			080	사회복지	088	주택	1400	임대주택지원(출자)	1440	임대주택지원	404	국민임대출자
			080	사회복지	088	주택	1400	임대주택지원(출자)	1440	임대주택지원	407	영구임대출자
			080	사회복지	088	주택	1400	임대주택지원(출자)	1440	임대주택지원	408	행복주택출자
			080	사회복지	088	주택	1400	임대주택지원(출자)	1440	임대주택지원	409	임대주택리츠출자
			080	사회복지	088	주택	1400	임대주택지원(출자)	1440	임대주택지원	402	다가구매입임대출자
			080	사회복지	088	주택	1400	임대주택지원(출자)	1440	임대주택지원	403	전세임대경상보조
			080	사회복지	088	주택	1400	임대주택지원(출자)	1440	임대주택지원	404	국민임대출자
			080	사회복지	088	주택	1400	임대주택지원(출자)	1440	임대주택지원	407	영구임대출자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조특	97의6	140	국토및지역개발	142	지역및도시	5600	도시정책	5632	도시개발	302	부동산투자회사 감독 및 검사지원
	조특	97의7	080	사회복지	088	주택	1400	임대주택지원(출자)	1440	임대주택지원	402	다가구매입임대출자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080	사회복지	088	주택	1400	임대주택지원(출자)	1440	임대주택지원	403	전세임대경상보조
			080	사회복지	088	주택	1400	임대주택지원(출자)	1440	임대주택지원	404	국민임대출자
			080	사회복지	088	주택	1400	임대주택지원(출자)	1440	임대주택지원	407	영구임대출자
			080	사회복지	088	주택	1400	임대주택지원(출자)	1440	임대주택지원	408	행복주택출자
			080	사회복지	088	주택	1400	임대주택지원(출자)	1440	임대주택지원	409	임대주택리츠출자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조특	101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1	산업금융지원	1200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1254	투융자복합금융지원(기금)	301	투융자복합금융(융자)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1	산업금융지원	1200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1261	성장안정자금(기금)	301	신성장기반자금(융자)

조세지출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1	산업금융지원	1200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1261	성장안정자금(기금)	302	긴급경영안정자금(용자)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104의8	010	일반·지방행정	014	재정·금융	7100	국세행정지원	7133	국세행정 전산화(정보화)	500	국세행정 전산화(정보화)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104의18	050	교육	052	고등교육	2200	대학교육 역량강화	2256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300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R&D)
			050	교육	053	평생·직업교육	4600	산학연 협력 활성화	4603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	300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 전문대학 지원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400	중소기업인력지원	5441	국립마이스터고육성	301	국립공고(마이스터고)육성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04의28	060	문화및관광	063	체육	5300	스포츠산업 육성 및 국제교류	5361	국제체육 지원	311	2018평창동계올림픽경기대회 지원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특	105①5·6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1000	농가경영안정	1067	농업기계장비	324	농기계임대
			100	농림수산	103	수산·어촌	3400	수산경영	3440	수산경영안정	311	수산장비(임대)활용(지자체)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특례	조특	105의2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1000	농가경영안정	1067	농업기계장비	324	농기계임대
			100	농림수산	103	수산·어촌	3400	수산경영	3440	수산경영안정	311	수산장비(임대)활용(지자체)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조특	106①1;111①2	100	농림수산	103	수산·어촌	3400	수산경영	3440	수산경영안정	312	어업인복지지원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	106①4의5	080	사회복지	088	주택	1400	임대주택지원(출자)	1440	임대주택지원	407	영구임대출자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	106①5	120	교통및물류	126	물류등기타	6000	기후변화대응	6001	온실가스감축	301	배출권거래제
			070	환경	073	대기	1600	기후변화대응 및 대기보전	1637	기후변화협약대응	302	온실가스관리인프라구축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200	경쟁력제고	3232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투자)	411	온실가스관리인프라구축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5100	기후변화 및 에너지자원정책	5142	기후변화협약대응	309	온실가스감축제도운영
농·어민이 직수입하는 농·축산·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	106②9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1000	농가경영안정	1067	농업기계장비	324	농기계임대
			100	농림수산	103	수산·어촌	3400	수산경영	3440	수산경영안정	311	수산장비(임대)활용(지자체)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조특	106의2①2	120	교통및물류	124	해운·항만	6100	해운사업 선진화	6134	도서지역 해상교통 지원(일반)	300	낙도보조항로결손보상금
			120	교통및물류	124	해운·항만	6100	해운사업 선진화	6134	도서지역 해상교통 지원(일반)	301	내항여객선운임보조(지자체)

조세지출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120	교통및물류	124	해운·항만	6100	해운사업 선진화	6134	도서지역 해상교통 지원(일반)	302	국고여객선 건조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조특	107의3	060	문화및관광	062	관광	4300	외래관광객유치	4361	해외관광객유치활동사업	306	의료 및 웰니스 관광육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	117①1·2·2의3·2의4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32	창업활성화지원	301	창업저변확대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32	창업활성화지원	303	창업선도대학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100	창업환경조성	5132	창업활성화지원	305	윈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31	벤처성장인프라지원	302	벤처캐피탈선진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	121의2;121의4	120	교통및물류	126	물류등기타	2700	경제자유구역사업추진	2733	경제자유구역지원	302	구역청투자유치지원
			120	교통및물류	126	물류등기타	2700	경제자유구역사업추진	2733	경제자유구역지원	409	기타 기반시설 지원
			120	교통및물류	126	물류등기타	2700	경제자유구역사업추진	2733	경제자유구역지원	415	주요기반시설지원
			140	국토및지역개발	142	지역및도시	5500	지역개발	5554	제주국제자유도시기반시설 지원	302	제주국제자유도시기반시설지원 (선도프로젝트)
			140	국토및지역개발	142	지역및도시	5500	지역개발	5557	새만금개발사업지원	302	동서도로 건설
			140	국토및지역개발	142	지역및도시	5500	지역개발	5557	새만금개발사업지원	309	남북도로 건설
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조특	121의13	060	문화및관광	062	관광	4100	관광진흥기반확충	4154	기초 관광자원개발(제주)	300	관광자원개발(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조특	121의14(삭제) 부칙제62조	060	문화및관광	062	관광	4100	관광진흥기반확충	4154	기초 관광자원개발(제주)	300	관광자원개발(제주)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	121의17	060	문화및관광	062	관광	4500	관광레저도시육성	4551	관광레저 개발 육성	301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경제발전)
			120	교통및물류	126	물류등기타	2000	해양정책 및 영토관리	2031	해양정책 및 문화기반조성	311	동북아 해양관광레저특구 조성지원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조특	121의21	010	일반·지방행정	014	재정·금융	1400	금융산업 글로벌화	1431	금융관련 국제협력	301	금융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추진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	121의22	090	보건	091	보건의료	3000	보건산업육성	3036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	301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경제)

조세지출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26의3	010	일반·지방행정	014	재정·금융	1100	과세기반확충	1131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300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지원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126의6	010	일반·지방행정	014	재정·금융	3100	성실납세 및 민생지원	3133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300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법인기부금의 손금산입	법인	24	080	사회복지	089	사회복지일반	2600	사회복지기반조성	2631	사회복지사업지원	312	나눔문화확산
폐광지역 카지노에 대한 개별소비세 저율과세 등	개소	1③;19의2_3	060	문화및관광	062	관광	4100	관광진흥기반확충	4161	관광자원활성화	300	폐광지역 관광상품개발
환경오염방지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관세	95①1·2	070	환경	071	상하수도·수질	1200	수질보전 및 관리	1232	산업폐수 관리	302	공단폐수처리시설
			070	환경	071	상하수도·수질	1200	수질보전 및 관리	1232	산업폐수 관리	304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비과세	소득	12_3거	030	통일·외교	031	통일	3200	개성공단지원	3232	개성공단 사업지원	303	개성공단 운영 제도화
부녀자 추가공제	소득	51①3	080	사회복지	084	보육·가족및여성	1200	여성능력개발 및 일자리지원강화	1231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311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080	사회복지	083	공적연금	7600	국민연금운영(급여지급)	7631	국민연금급여지급	401	국민연금급여지급
연금보험료공제		51의3	080	사회복지	083	공적연금	3000	공무원연금급여지급	3031	퇴직급여	311	퇴직급여
			080	사회복지	083	공적연금	3000	공무원연금급여지급	3032	퇴직수당	312	퇴직수당
			080	사회복지	083	공적연금	3000	공무원연금급여지급	3033	재해보상급여	313	재해보상급여
			080	사회복지	083	공적연금	4300	군인연금(연금정책)	4331	군인연금	301	퇴직급여
			080	사회복지	083	공적연금	4300	군인연금(연금정책)	4331	군인연금	302	퇴직수당
			080	사회복지	083	공적연금	4300	군인연금(연금정책)	4331	군인연금	303	재해보상급여
			080	사회복지	083	공적연금	6100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지급	6131	연금급여	400	연금급여(사립학교연금기금)
			080	사회복지	083	공적연금	6100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지급	6132	재해보상급여	401	재해보상급여(사립학교연금기금)
			080	사회복지	083	공적연금	6100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지급	6133	퇴직수당급여	402	퇴직수당급여(사립학교연금기금)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소득	51의4	080	사회복지	088	주택	2600	주택금융지원	2631	주연보운영(주연보계정)	301	구상권관리
			080	사회복지	088	주택	2600	주택금융지원	2631	주연보운영(주연보계정)	302	보증료환급
			080	사회복지	088	주택	2600	주택금융지원	2631	주연보운영(주연보계정)	303	대위변제
			080	사회복지	088	주택	2600	주택금융지원	2631	주연보운영(주연보계정)	304	판매장려수당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소득	59의4④;(㉠) 소득52⑥	080	사회복지	089	사회복지일반	2600	사회복지기반조성	2631	사회복지사업지원	312	나눔문화확산

2. 개별 조세지출항목과 재정지출의 연계 결과

- (중복연계의 문제) 세부사업의 내역사업 예산규모가 파악되지 않아서 세부사업에서 연계를 시도하는 경우 예산기능별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기준별 재정지출 현황이 과대 집계될 가능성이 큼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부 내역사업에 대한 예산규모 파악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D-Brain의 개편과정에 상당한 노력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정지출과의 연계 수준을 예산규모까지 확대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가능한 수준의 연계는 하나의 조세지출 항목에 연계할 수 있는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 정도로 판단됨
 - 제Ⅲ장에서 살펴봤듯이, 주요 국가들 중 조세지출예산서 또는 보고서에 재정지출 사업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국가는 캐나다와 프랑스뿐임
 - 캐나다와 프랑스의 경우에도 해당 조세지출과 가장 연관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재정지출 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만 제공할 뿐 예산규모를 제시하지는 않음

- (기금의 문제) 기금 사업의 대부분이 용자사업이므로 정책목적이나 사업내용이 조세지출과 유사하더라도 용자의 이자차액만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조세지출 항목과 연계된 기금사업의 대부분이 용자사업이므로 대출자가 시장에서 지불해야 할 높은 이자비용과 기금예산을 통해 용자를 받고 지불하는 낮은 이자비용의 차이만큼이 실질적인 지원규모지만 현재 가용한 정보하에서는 이러한 이자차액을 계산할 수 없음
 - 결과적으로 조세지출 항목과 정책목적이나 사업내용이 유사한 기금의 용자규모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재정지출 규모를 과대계상할 가능성이 매우 큼

-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금의 용자규모와 중복 연계된 결과를 이용하여 예산분류기준별 조세지출 및 재정지출 현황과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기준에 따른 조세지출 및 재정지출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이 집계됨

- 「조세특례제한법」상 23개 분류기준에 따라 조세지출 항목들과 이와 연계되는 재정지출의 규모와 비중은 아래의 <표 IV-5>에 제시되어 있음
 -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모두 국민생활안정 분야에 가장 큰 비중의 재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외에 연구개발, 중소기업, 지역균형발전, 저축지원, 근로 및 자녀장려 등에 큰 비중의 재원을 지출하고 있음
 - 대부분 유사한 비중으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에서 각 분야별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국민생활안정, 저축지원, 그리고 연구개발 분야의 경우 조세지출보다는 재정지출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남
 - 중소기업, 투자촉진, 간접국세 분야의 경우 재정지출 비중보다는 조세지출 비중이 높게 나타남
- 16개 예산분류 기준에 따라 연계한 결과는 <표 IV-6>에 제시되어 있음
 - 조세지출의 경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가장 큰 비중의 재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재정지출의 경우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큰 비중의 재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조세지출의 경우 사회복지 분야에 두 번째로 큰 비중의 재원을 지출하는 한편 재정지출의 경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두 번째로 큰 비중의 재원을 지출하고 있음
 - 사회복지 분야의 재정지출 비중은 6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집계되고 동 분야의 재정지출 자원배분 비중은 20% 초중반 수준으로 나타남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한 조세지출 자원배분 비중은 30%를 소폭 하회하는 수준이고 재정지출 자원배분 비중은 20% 수준으로 나타남
 - 이외에 조세지출의 경우 농림수산, 보건, 일반지방행정 분야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의 재원을 배분하고 있으며 재정지출의 경우 과학기술과 농림수산 분야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재원이 배분되고 있음

<표 IV-5>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기준에 따른 조세지출 및 재정지출 현황

(단위: 억원, %)

분야	2015년(실적)				2016년(전망)				2017년(전망)				
	조세지출	(비중)	재정지출	(비중)	조세지출	(비중)	재정지출	(비중)	조세지출	(비중)	재정지출	(비중)	
1	중소기업	19,066.24	5.39	56,681.12	4.58	21,197.00	5.87	50,272.17	3.14	22,466.00	6.12	45385.7	2.66
2	연구개발	32,295.36	9.12	181,429.09	14.67	25,048.45	6.94	245,974.80	15.36	24,676.68	6.72	263385.6	15.44
3	국제자본거래	60.00	0.02	0.00	0.00	46.00	0.01	0.00	0.00	48.00	0.01	0.0	0.00
4	투자촉진	12,865.10	3.63	26,273.95	2.12	16,240.25	4.50	27,590.37	1.72	13,750.13	3.75	28831.3	1.69
5	고용지원	2,098.36	0.59	7,395.71	0.60	2,786.70	0.77	8,144.07	0.51	3,203.83	0.87	8747.4	0.51
6	기업구조조정	734.41	0.21	53,388.29	4.32	433.62	0.12	57,033.50	3.56	392.54	0.11	61956.2	3.63
7	금융기관구조조정	0.00	0.00	2,127.01	0.17	0.00	0.00	3,107.09	0.19	0.00	0.00	2996.0	0.18
8	지역균형발전	18,185.36	5.14	51,352.27	4.15	15,670.12	4.34	46,967.49	2.93	18,375.14	5.01	49831.8	2.92
9	공익사업지원	4,030.93	1.14	39,894.02	3.23	4,120.59	1.14	44,210.82	2.76	4,285.37	1.17	42904.5	2.51
10	저축지원	14,302.00	4.04	141,013.42	11.40	13,839.00	3.83	150,058.14	9.37	15,451.00	4.21	157420.4	9.23
11	국민생활안정	110,364.00	31.17	477,845.93	38.63	116,022.58	32.14	749,359.96	46.79	117,803.65	32.10	821021.2	48.12
12	근로·자녀장려	17,180.00	4.85	75,803.83	6.13	17,250.00	4.78	81,850.87	5.11	18,485.00	5.04	86046.9	5.04
13	기타직접국세	9,315.40	2.63	36,756.97	2.97	10,033.96	2.78	40,267.14	2.51	10,296.29	2.81	36457.9	2.14
14	간접국세	86,770.95	24.51	65,394.27	5.29	92,072.38	25.51	74,896.51	4.68	92,065.94	25.09	79299.6	4.65
15	외국인투자	2,281.04	0.64	3,047.01	0.25	1,626.01	0.45	2,464.75	0.15	1,427.01	0.39	2723.0	0.16
16	제주국제자유도시육성	1,789.00	0.51	28.36	0.00	1,235.92	0.34	33.00	0.00	1,411.03	0.38	153.0	0.01
17	기업도시	58.00	0.02	175.00	0.01	43.00	0.01	202.00	0.01	54.00	0.01	289.0	0.02
18	지역발전	0.05	0.00	679.33	0.05	0.17	0.00	517.10	0.03	0.08	0.00	719.4	0.04
19	농협구조개편	760.00	0.21	1,605.28	0.13	891.00	0.25	1,695.20	0.11	934.00	0.25	583.5	0.03
20	공적자금회수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	0.00
21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구조개편	0.00	0.00	117.20	0.01	0.00	0.00	139.08	0.01	0.00	0.00	298.3	0.02
22	사업재편 계획	0.00	0.00	12,720.00	1.03	0.00	0.00	15,300.00	0.96	0.00	0.00	15300.0	0.90
23	기타	21,899.42	6.19	3,183.00	0.26	22,434.71	6.21	1,403.95	0.09	21,863.86	5.96	2,019.4	0.12
	합계	354,055.62	100.00	1,236,911.06	100.00	360,991.46	100.00	1,601,488.01	100.00	366,989.55	100.00	1,706,370.1	100.00

<표 IV-6> 예산분류기준별 조세지출 및 재정지출 현황

(단위: 억원, %)

예산분류기준		2015년(실적)				2016년(전망)				2017년(전망)			
		조세지출	(비중)	재정지출	(비중)	조세지출	(비중)	재정지출	(비중)	조세지출	(비중)	재정지출	(비중)
1	일반지방행정	31,711.00	8.96	1,335.11	0.11	34,196.00	9.47	1,686.81	0.11	34,759.00	9.47	1,818.96	0.11
2	공공질서 및 안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3	외교·통일	10.12	0.00	1.22	0.00	9.01	0.00	1.38	0.00	9.07	0.00	3.01	0.00
4	국방	6,689.00	1.89	154.78	0.01	7,025.00	1.95	240.76	0.02	7,403.00	2.02	225.18	0.01
5	교육	13,067.36	3.69	13,721.27	1.11	12,756.61	3.53	13,351.85	0.83	12,719.64	3.47	14,712.04	0.86
6	문화 및 관광	52.27	0.01	3,142.81	0.25	58.46	0.02	16,126.91	1.01	134.23	0.04	15,062.55	0.88
7	환경	7,125.24	2.01	14,774.90	1.19	6,379.00	1.77	19,172.14	1.20	6,400.00	1.74	22,353.63	1.31
8	사회복지	81,010.23	22.88	720,451.87	58.25	84,692.41	23.46	1,019,541.69	63.66	88,806.39	24.20	1,102,932.56	64.64
9	보건	41,256.86	11.65	3,204.17	0.26	43,359.36	12.01	3,265.74	0.20	43,109.22	11.75	3,240.32	0.19
10	농림수산	54,221.81	15.31	68,942.19	5.57	48,540.10	13.45	65,027.02	4.06	49,495.26	13.49	65,192.60	3.82
1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06,080.45	29.96	298,498.75	24.13	106,666.11	29.55	323,881.82	20.22	106,153.33	28.93	336,950.45	19.75
12	교통 및 물류	5,834.06	1.65	31,101.07	2.51	8,988.05	2.49	30,076.26	1.88	7,021.08	1.91	27,577.10	1.62
13	통신	0.00	0.00	3,271.13	0.26	0.00	0.00	2,280.00	0.14	0.00	0.00	1,943.41	0.11
14	국토 및 지역개발	6,955.86	1.96	1,008.21	0.08	8,287.35	2.30	2,362.80	0.15	10,957.33	2.99	2,820.49	0.17
15	과학기술	41.36	0.01	77,303.58	6.25	34.00	0.01	104,472.83	6.52	22.00	0.01	111,537.81	6.54
16	예비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합 계		354,055.62	100.00	1,236,911.06	100.00	360,991.46	100.00	1,601,488.01	100.00	366,989.55	100.00	1,706,370.11	100.00

3. 시사점

- 이상에서 살펴본 조세지출 항목과 재정지출 프로그램예산체계의 단위사업 수준까지의 연계결과는 예산 규모를 제시하기보다는 캐나다나 프랑스의 사례를 참고하여 연관 예산사업의 단위사업 수준의 간략한 설명을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판단됨
-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를 통해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인정되나 현실적으로 예산규모 수준까지의 비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세부사업의 세제 내역사업에 대한 정보가 가용하고 특정 분야 또는 부문의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여타 분야 또는 부문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유사·중복성을 논의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함
-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유사·중복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수혜자 그룹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나 이는 범부처 차원의 대규모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대한 작업으로 예상됨
 -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방대한 개별 수혜자 정보의 구축과 부처별 구축자료의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 수준을 진일보시키기 위해서는 캐나다나 프랑스의 조세지출예산서와 같이 해당 조세지출 항목과 정책목적 등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재정사업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추가하는 정도의 노력은 의미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취지에서 각 조세지출 항목별로 연계된 유사한 재정지출 단위사업 내지 세부사업의 정보를 서술한 샘플을 <부록 B>에 수록함

V. 개선방안



V. 개선방안

1. 조세지출제도의 재분류

- 현행 조세지출제도를 적극적 관리대상과 소극적 관리대상으로 구분하여 조세특례 제도의 성과평가대상을 적극적 관리대상으로 삼고 해당 제도들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출 필요
 -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지출 항목들을 향후 비과세감면 정비의 주 대상 항목으로 삼고 비과세감면 정비 여지에 대한 보다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필요
 - 잠재적 관리대상의 경우 향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의 대상이라기보다는 해당 제도들의 확대 또는 축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면밀히 검토하는 수준의 관리노력을 기울일 필요
 - 이러한 분류는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크게 좌우되므로 다양한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TF를 구성하고 우리나라 기준조세체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기준조세체계를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조세지출의 범위를 설정할 필요

2. 조세지출예산서의 편제 개편

- 기준조세체계에 대한 정립을 통해 조세지출의 범위를 설정하게 되면 해당 항목이 조세지출로 분류된 이유를 추가함으로써 조세지출에 대한 일반적 이해도를 제고할 필요
- 조세지출 규모 추정방법, 조세지출 항목별 수혜자 수, 프로그램예산체계 분류코드, 주요 연관 예산사업에 대한 간략 설명 등 조세지출 항목에 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개편할 필요

- 심층평가 결과의 요약본을 게재하여 평가결과를 보다 널리 알림으로써 일반 대중과 정책입안자들의 조세지출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향후 제도개편에 적극 활용할 필요

3.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

- 살펴본 주요 국가들 중 조세지출예산과 재정지출예산을 연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는 캐나다로서 조세지출과 유사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정도를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의 연계 결과를 토대로 살펴볼 때 유사한 재정사업의 내용 정도를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중복연계를 통해 재정사업 규모가 과대평가될 수 있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계에 있어서 여러 한계가 존재하므로 예산 규모에 대한 정보를 조세지출 예산서에 수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다만 중복연계된 재정사업들 중 해당 조세지출과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단위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캐나다의 조세지출보고서와 같은 형태로 제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여러 개선 및 개편 작업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나라의 기준조세체계를 재정립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공개함으로써 조세지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임
 - 조세지출 항목 중에서 적극적으로 정비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비과세감면 정비의 여력과 한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의 그러한 노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 우리나라의 기준조세체계인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학계 및 정책담당자의 노력이라 판단됨

참 고 문 헌

- 국회예산정책처,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2016.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_조세감면제도 운영실태」, 2014.
- 기획재정부,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14.
- _____,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15.
- 김종면, 「기준조세체계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재정포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8, pp. 6~18.
- 김학수·홍성훈, 『조세특례 기본계획 작성방안 연구』, 기타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 대한민국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_____, 『조세지출보고서』, 각 연도.
- 박기백·김우철·박명호, 『우리나라 기준조세체계 정립 및 조세지출 분류 방안』, 200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박노욱, 「비과세감면제도 세출예산의 연계 강화 필요성」, 공청회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 장재형·임재현, 「조세지출 범위에 관한 연구」, 『조세학술논집』, 31(2), 2015, pp. 1~45,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 Bixi, H.P., Valenduc, C.M.A. and Z.L. Swift, (ed.), *Tax Expenditures- Shedding Light on Government Spending through the Tax System: Lessons from Developed and Transition Economies*, The World Bank, Washington ,D.C., 2004.
- Craig, J. and Allan, W., “Fiscal Transparency, Tax Expenditures, and Budget Process;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IMF Working Paper, Washington DC, 2001.
-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Tax Expenditures and Evaluations*, 2015.
- Department of Finance, Ireland, *Report on tax expenditures*, 2015.
- OECD, *Tax Expenditures in OECD Countries*, 1996, 2010.

_____, *Tax Expenditures: Recent Experience*, 1996

_____, “Choosing a Broad Base – Low Rate Approach to Taxation,” *OECD Tax Policy Studies*, No. 19, OECD Publishing, 2010.

République Française, PLF pour 2016: Evaluations des Voies et Moyens, 2015.

The Treasury, Australia, *Tax Expenditure Statement 2015*, 2016.

UK HMRC, *Estimated cost of tax reliefs, expenditures & allowances*, 2016.

U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Analytical Perspectives*, 각 연도.

부 록



<부록 A>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출 항목들 중 적극적 관리대상 내역

<부표 1>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출 항목들 중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지출 내역	조특법 조문	일몰연도	특정성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	분류결과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5	2018	Y	Y	Y	적극적 관리대상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6	2018	Y	Y	Y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7	2017	Y	Y	Y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1	2018	Y	Y	Y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12	2018	Y	Y	Y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13	2017	Y	Y	Y	
창업자 등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14	2017	Y	Y	Y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16	2017	Y	Y	Y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18	2018	Y	Y	Y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20	없음	Y	Y	N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21	없음	Y	Y	N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24	2017	Y	Y	Y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25	2017	Y	Y	Y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26	2017	Y	Y	Y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30	2018	Y	Y	Y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60	2017	Y	Y	Y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61	2017	Y	Y	Y	

조세지출 내역	조특법 조문	일몰연도	특정성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	분류결과
공공기관 이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62	2018	Y	Y	Y	적극적 관리대상
수도권과밀억제권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63	2017	Y	Y	Y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64	2018	Y	Y	Y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66	2018	Y	Y	Y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등	67	2018	Y	Y	Y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68	2018	Y	Y	Y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69	2018	Y	Y	Y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70	없음	Y	Y	N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71	2017	Y	Y	Y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72	2017	Y	Y	Y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77	2018	Y	Y	Y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94	2018	Y	Y	Y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96	2016	Y	Y	Y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101	2017	Y	Y	Y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102	2018	Y	Y	Y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114	없음	Y	Y	Y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 면제	115	없음	Y	Y	Y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140	2016	Y	Y	Y	
근로장려 및 자녀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1) 근로장려금지급	100의2~10	없음	Y	Y	N	
근로장려 및 자녀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2) 자녀장려금지급	100의27~31	없음	Y	Y	N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0①1·2·3	2018	Y	Y	Y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104의11	2018	Y	Y	Y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104의12	2018	Y	Y	Y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04의14	2018	Y	Y	Y	

조세지출 내역	조특법 조문	일몰연도	특정성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	분류결과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104의16	없음	Y	Y	Y	적극적 관리대상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104의18	2016	Y	Y	Y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104의19	없음	Y	Y	Y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04의21	없음	Y	Y	Y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104의22	없음	Y	Y	Y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104의24	2018	Y	Y	Y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104의25	2016	Y	Y	Y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104의26	2017	Y	Y	Y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04의27	2017	Y	Y	Y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104의28	2018	Y	Y	Y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104의8	없음	Y	Y	Y	
방위산업물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105①1	없음	Y	Y	Y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105①3	2018	Y	Y	Y	
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105①4	없음	Y	Y	N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105①5·6	2017	Y	Y	Y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특례	105의2	없음	Y	Y	Y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106①1;111①2	2018	Y	Y	Y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06①10	없음	Y	Y	Y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06①11	2017	Y	Y	Y	
임산물 중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06①12	2017	Y	Y	Y	
공장·학교 등의 급식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06①2	2018	Y	Y	Y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06①3	2018	Y	Y	Y	
국민주택 및 동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06①4	없음	Y	Y	Y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06①4의2·4의3	2017	Y	Y	Y	

조세지출 내역	조특법 조문	일몰연도	특정성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	분류결과
노인복지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06①4의4	없음	Y	Y	Y	적극적 관리대상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06①4의5	2018	Y	Y	Y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06①5	2017	Y	Y	Y	
천연가스(CNG)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06①9	2018	Y	Y	Y	
전기 시내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06①9의2	2017	Y	Y	Y	
개인택시용 차량 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06①9의3	2017	Y	Y	Y	
포물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	106②16;116①26;118①17	2016	Y	Y	Y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	106②19;116①28;118①19	2018	Y	Y	Y	
농·어민이 직수입하는 농·축산·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06②9	2017	Y	Y	Y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106의2①1	2018	Y	Y	Y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106의2①2	2018	Y	Y	Y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106의7	2018	Y	Y	Y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107의3	2017	Y	Y	Y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109①	2018	Y	Y	Y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109④	2017	Y	Y	Y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10의2	2018	Y	Y	Y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111의2	2016	Y	Y	Y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111의3	2018	Y	Y	Y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116①	없음	Y	Y	Y	
창업중소기업의 용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116①19	2018	Y	Y	Y	
구조조정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면제	117①	없음	Y	Y	Y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117①1·2·2의3·2의4	2017	Y	Y	Y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에 대한 관세 경감	118①3	2017	Y	Y	Y	

조세지출 내역	조특법 조문	일몰연도	특정성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	분류결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 감면	118의2	2018	Y	Y	Y	적극적 관리대상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121의10	2018	Y	Y	Y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121의11	2018	Y	Y	Y	
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121의13	없음	Y	Y	Y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121의14(삭제) 부칙제62조	2017	Y	Y	Y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21의17	2018	Y	Y	Y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21의2;121의4	없음	Y	Y	Y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21의20	2018	Y	Y	Y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121의21	2018	Y	Y	Y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21의22	2016	Y	Y	Y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 등 면제	121의3	없음	Y	Y	Y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21의8	2018	Y	Y	Y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21의9	2018	Y	Y	Y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122의3	2018	Y	Y	Y	
금사업자와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122의4	2016(금) /2018 (스크랩)	Y	Y	Y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26의2	2016	Y	Y	Y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126의3	없음	Y	Y	Y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26의6	없음	Y	Y	Y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126의7	2017	Y	Y	Y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2의2	2018	Y	Y	Y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12의3;12의4	2018	Y	Y	Y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136③	2017	Y	Y	Y	
비거주자 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141의2	없음	Y	Y	Y	

조세지출 내역	조특법 조문	일몰연도	특정성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	분류결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과세특례	16의2;16의3	2018	Y	Y	Y	적극적 관리대상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18의2	2016	Y	Y	Y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5의2	2016	Y	Y	Y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5의3	2016	Y	Y	Y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5의4	2016	Y	Y	Y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9의2	2017	Y	Y	Y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9의3	2017	Y	Y	Y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9의4	2017	Y	Y	Y	
청년고용증대세제	29의5	2017	Y	Y	Y	
핵심인력 성과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29의6	신설	Y	Y	Y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30의2	2016	Y	Y	Y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30의3	2018	Y	Y	Y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30의4	2018	Y	Y	Y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30의5	없음	Y	Y	N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30의6	없음	Y	Y	N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전환사업 소득법인세)	33의2	2018	Y	Y	Y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46의8	2018	Y	Y	Y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55의2⑤	2018	Y	Y	Y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63의2	2017	Y	Y	Y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69의2	2017	Y	Y	Y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70의2	없음	Y	Y	N	
학교법인·국립대학병원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74①	2016	Y	Y	Y	

조세지출 내역	조특법 조문	일몰연도	특정성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	분류결과
지방시·군소재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74④	2016	Y	Y	Y	적극적 관리대상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77의2	2018	Y	Y	Y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77의3	2017	Y	Y	Y	
상생결제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7의4	신설	Y	Y	Y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85의10	2017	Y	Y	Y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85의6①·②	2016	Y	Y	Y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85의7	2018	Y	Y	Y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85의8	2017	Y	Y	Y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85의9	2018	Y	Y	Y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86의3	없음	Y	Y	Y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87②	없음	Y	Y	Y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87의2	2017	Y	Y	Y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87의6	2016	Y	Y	Y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88의2	2019	Y	Y	Y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88의4	없음	Y	Y	N	
조합등출자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88의5;89의3	2018	Y	Y	Y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8의3	2016	Y	Y	Y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91의15	2016	Y	Y	Y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비과세특례	91의17	2017	Y	Y	Y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과세특례	91의18	2018	Y	Y	Y	
해외자원개발투자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91의6	2016	Y	Y	Y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95의2	없음	Y	Y	Y	

조세지출 내역	조특법 조문	일몰연도	특정성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	분류결과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97의3	없음	Y	Y	Y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97의4	없음	Y	Y	Y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97의5	2017	Y	Y	Y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97의6	2017	Y	Y	Y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97의7	신설	Y	Y	Y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99의4	2017	Y	Y	Y	

<부록 B> 조세지출 항목별 연관 예산사업 내역

순번	조세지출 내역	법률	조문	소관 부처	프로그램 코드	프로그램명	단위사업 코드	단위사업명	단위사업 주요 내용
1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조특	5	중소기업청	1200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1254	투융자복합금융지원 (기금)	기술성, 성장가치 우수한 중소기업에 융자, 투자 복잡한 방식으로 자금 지원
				중소기업청	1200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1261	성장안정자금(기금)	성장유망 중소기업에 신성장기반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6	중소기업청	5100	창업환경조성	5152	창업기업지원용자 (기금)	창업기업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 창업성공패키지
				중소기업청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31	벤처성장인프라지원	벤처기업 채용 및 마케팅 지원, 엔젤 투자 활성화, 창투자 평가 및 공시 제도 운영, M&A 기업 진단 비용 지원, M&A 거래 정보망 운영 등
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특	7	중소기업청	1200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1253	정책지원성과향상 (기금)	기업 진단, 청년 전용 창업 연계 지원(교육, 멘토링), 제도약 지원 자금 연계 지원(상담, 멘토링) 등
				중소기업청	1200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1254	투융자복합금융지원 (기금)	기술성, 성장가치 우수한 중소기업에 융자, 투자 복잡한 방식으로 자금 지원
				중소기업청	1200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1261	성장안정자금(기금)	성장유망 중소기업에 신성장기반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4	상생결재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7의4	공정거래위원회	1300	중소기업경쟁여건개선	1331	대중소기업간 거래태개선 및 동반성장시책추진	불공정거래행위 실태 점검 등
				산업통상자원부	3100	산업경쟁력기반구축	3135	대중소기업동반성장	동반성장 실태 조사 등
				중소기업청	4200	동반성장지원	4231	기업간협력증진	상생협력 기반구축 및 활성화(상생협력 구매 상담회, 대·중소기업 협력 재단 운영 등)

순번	조세지출 내역	법률	조문	소관 부처	프로그램 코드	프로그램명	단위사업 코드	단위사업명	단위사업 주요 내용
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조특	8의3	공정거래위원회	1300	중소기업경쟁여건개선	1331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시책추진	불공정거래행위 실태 점검 등
				산업통상자원부	3100	산업경쟁력기반구축	3135	대중소기업동반성장	동반성장 실태 조사 등
				중소기업청	4200	동반성장지원	4231	기업간협력증진	상생협력 기반구축 및 활성화(상생협력 구매 상담회, 대·중소기업 협력 재단 운영 등)
6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⁶⁾	조특	10①1·2·3	산업통상자원부	3200	산업기술진흥	3274	인력양성(R&D)	산업기술 인재 양성,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 인력 지원 등
				산업통상자원부	3600	신산업진흥	3691	창의산업핵심기술개발	신산업 분야(바이오, 나노, 지식 서비스, 엔지니어링 등) 핵심기술 개발 지원
7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⁷⁾	조특	10의2	미래창조과학부	2200	출연연구기관지원	224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
8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⁸⁾	조특	11	산업통상자원부	3200	산업기술진흥	3274	인력양성(R&D)	산업기술 인재 양성,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 인력 지원 등
				산업통상자원부	3600	신산업진흥	3691	창의산업핵심기술개발	신산업 분야(바이오, 나노, 지식 서비스, 엔지니어링 등) 핵심기술 개발 지원
9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2	미래창조과학부	3100	SW산업활성화	3186	기술확산지원	SW기술자산의 공유 활용 촉진 지원
				중소기업청	2100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2163	기술개발장려촉진	국내외 기업 간 기술 교류 지원
				특허청	1300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촉진	1332	특허기술 활용촉진	특허정보활용 인프라 구축,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10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	12의2	미래창조과학부	1600	과학기술기반조성	1636	연구개발특구역육성	연구개발 특구 육성

순번	조세지출 내역	법률	조문	소관 부처	프로그램 코드	프로그램명	단위사업 코드	단위사업명	단위사업 주요 내용
11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12의3; 12의4	중소기업청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31	벤처성장인프라지원	벤처기업 채용 및 마케팅 지원, 엔젤 투자 활성화, 창투자 평가 및 공시 제도 운영, M&A 기업 진단 비용 지원, M&A 거래 정보망 운영 등
				중소기업청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61	사업전환및제도약지원(기금)	사업전환지원자금, 구조개선자금, 재창업자금 지원
1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조특	13	중소기업청	5100	창업환경조성	5132	창업활성화지원	창업사업화 지원, 창업저변확대, 창업선도대학, 중소기업 재기 지원 등
				중소기업청	5100	창업환경조성	5152	창업기업지원용자(기금)	창업기업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 창업성공패키지
				중소기업청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31	벤처성장인프라지원	벤처기업 채용 및 마케팅 지원, 엔젤 투자 활성화, 창투자 평가 및 공시 제도 운영, M&A 기업 진단 비용 지원, M&A 거래 정보망 운영 등
13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4	중소기업청	5100	창업환경조성	5132	창업활성화지원	창업사업화 지원, 창업저변확대, 창업선도대학, 중소기업 재기 지원 등
				중소기업청	5100	창업환경조성	5152	창업기업지원용자(기금)	창업기업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 창업성공패키지
				중소기업청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31	벤처성장인프라지원	벤처기업 채용 및 마케팅 지원, 엔젤 투자 활성화, 창투자 평가 및 공시 제도 운영, M&A 기업 진단 비용 지원, M&A 거래 정보망 운영 등
1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	16	중소기업청	5100	창업환경조성	5132	창업활성화지원	창업사업화 지원, 창업저변확대, 창업선도대학, 중소기업 재기 지원 등
				중소기업청	5100	창업환경조성	5152	창업기업지원용자(기금)	창업기업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 창업성공패키지
				중소기업청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31	벤처성장인프라지원	벤처기업 채용 및 마케팅 지원, 엔젤 투자 활성화, 창투자 평가 및 공시 제도 운영, M&A 기업 진단 비용 지원, M&A 거래 정보망 운영 등

순번	조세지출 내역	법률	조문	소관 부처	프로그램 코드	프로그램명	단위사업 코드	단위사업명	단위사업 주요 내용
15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과세특례	조특	16의2; 16의3	중소기업청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31	벤처성장인프라지원	벤처기업 채용 및 마케팅 지원, 엔젤 투자 활성화, 창투자 평가 및 공시 제도 운영, M&A 기업 진단 비용 지원, M&A 거래 정보망 운영 등
16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조특	18	고용노동부	5000	국제고용노동협력	5033	외국인력관리지원	양질의 외국인력 선발 및 공급, 외국인 근로자 고충 해결 등
				산업통상자원부	4900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	4901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	외국인 투자기업의 토지매입비, 현금지원 등
17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8의2	고용노동부	5000	국제고용노동협력	5033	외국인력관리지원	양질의 외국인력 선발 및 공급, 외국인 근로자 고충 해결 등
18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조특	20	기획재정부	-	-	-	-	정책 목적이 유사한 단위사업을 찾기 어려움
19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특	21	-	-	-	-	-	정책 목적이 유사한 단위사업을 찾기 어려움
20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24	산업통상자원부	3100	산업경쟁력기반구축	3160	생산성향상지원	국가 생산성 혁신 기반 구축, ICT 융합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제조기반 설계 기술 고도화 등
21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조특	25	고용노동부	4100	산업재해예방	4151	클린사업장조성	기술 및 재정능력 취약한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보조
				고용노동부	4100	산업재해예방	4158	산재예방시설용자(용자)	사업장의 재해예방 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장기저리로 용자
2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25의2	산업통상자원부	5100	기후변화및에너지자원정책	5141	에너지이용효율향상(용자)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투자비 용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5400	에너지공급체계구축	5452	신재생에너지보급(기금)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등
				산업통상자원부	5400	에너지공급체계구축	5467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등
				환경부	1100	상하수 및 토양지하수 관리	1148	하수처리시설확충(환특)	하수처리장 확충,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등

순번	조세지출 내역	법률	조문	소관 부처	프로그램 코드	프로그램명	단위사업 코드	단위사업명	단위사업 주요 내용
23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¹⁰⁾	조특	25의3	환경부	1500	자원순환 기반 구축	1538	재활용 및 처리시설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등
				환경부	1600	기후변화대응 및 대기보전	1633	자동차배출가스 관리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등
24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25의4	식품의약품안전처	2000	의약품 안전성 제고	2031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
25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¹¹⁾	조특	26	고용노동부	1000	고용정책	1045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기업 지원
				고용노동부	1000	고용정책	1046	고용촉진지원금	고용 기회 확대 기업 지원
26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29의2	중소기업청	5400	중소기업인력지원	5441	국립마이스터고육성	국립 마이스터고 지원
27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29의3	여성가족부	1200	여성능력개발 및 일자리지원강화	1231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28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29의4	고용노동부	3000	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	-	-	정책 목적이 유사한 단위사업을 찾기 어려움
29	청년고용증대세제	조특	29의5	고용노동부	1000	고용정책	1050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원
				고용노동부	1000	고용정책	1060	세대간 상생 고용 지원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편,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 지원
30	핵심인력 성과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특	29의6	중소기업청	5400	중소기업인력지원	5431	중소기업 인력양성 및 취업촉진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금(내일채움공제) 관리 운영 등
3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특	30	고용노동부	1000	고용정책	1043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청년 미취업자에게 중소기업 등의 인턴기회 제공
				고용노동부	1000	고용정책	1050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원
				고용노동부	1400	장애인고용증진	1455	장애인고용유지	장애인 근로 지원인, 사업장 장애인 편의시설 등 지원
				여성가족부	1200	여성능력개발 및 일자리지원강화	1231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순번	조세지출 내역	법률	조문	소관 부처	프로그램 코드	프로그램명	단위사업 코드	단위사업명	단위사업 주요 내용
32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조특	30의2	고용노동부	1300	고용평등실현	1345	일·가정양립지원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3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30의3	고용노동부	1000	고용정책	1045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기업 지원
3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특	30의4	고용노동부	1000	고용정책	1046	고용촉진지원금	고용 기회 확대 기업 지원
				고용노동부	1000	고용정책	1056	지역고용촉진지원	자치단체주도 일자리 사업 지원
3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30의5	중소기업청	5100	창업환경조성	5152	창업기업지원용자(기금)	창업기업 시설 및 운전자금 용자, 창업성공패키지
36	기업의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30의6	중소기업청	1200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	-	정책 목적이 유사한 단위사업을 찾기 어려움
37	중소기업 간의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조특	31; 32	중소기업청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31	벤처성장인프라지원	벤처기업 채용 및 마케팅 지원, 엔젤 투자 활성화, 창투자 평가 및 공시 제도 운영, M&A 기업 진단 비용 지원, M&A 거래 정보망 운영 등
				중소기업청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61	사업전환 및 제도약지원(기금)	사업전환지원자금, 구조개선자금, 재창업자금 지원
38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33	중소기업청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61	사업전환 및 제도약지원(기금)	사업전환지원자금, 구조개선자금, 재창업자금 지원
39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33의2	중소기업청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61	사업전환 및 제도약지원(기금)	사업전환지원자금, 구조개선자금, 재창업자금 지원
40	기업의 금융채무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34	중소기업청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61	사업전환 및 제도약지원(기금)	사업전환지원자금, 구조개선자금, 재창업자금 지원
41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37	중소기업청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31	벤처성장인프라지원	벤처기업 채용 및 마케팅 지원, 엔젤 투자 활성화, 창투자 평가 및 공시 제도 운영, M&A 기업 진단 비용 지원, M&A 거래 정보망 운영 등

순번	조세지출 내역	법률	조문	소관 부처	프로그램 코드	프로그램명	단위사업 코드	단위사업명	단위사업 주요 내용
4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38	중소기업청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31	벤처성장인프라지원	벤처기업 채용 및 마케팅 지원, 엔젤 투자 활성화, 창투자 평가 및 공시 제도 운영, M&A 기업 진단 비용 지원, M&A 거래 정보망 운영 등
43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38의2	중소기업청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61	사업전환 및 제도약지원(기금)	사업전환지원자금, 구조개선자금, 재창업자금 지원
44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38의3	중소기업청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61	사업전환 및 제도약지원(기금)	사업전환지원자금, 구조개선자금, 재창업자금 지원
45	자회사 매각을 위한 채무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39	중소기업청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61	사업전환 및 제도약지원(기금)	사업전환지원자금, 구조개선자금, 재창업자금 지원
46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특	40	중소기업청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61	사업전환 및 제도약지원(기금)	사업전환지원자금, 구조개선자금, 재창업자금 지원
47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44	중소기업청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61	사업전환 및 제도약지원(기금)	사업전환지원자금, 구조개선자금, 재창업자금 지원
48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46	중소기업청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61	사업전환 및 제도약지원(기금)	사업전환지원자금, 구조개선자금, 재창업자금 지원
49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46의7	중소기업청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31	벤처성장인프라지원	벤처기업 채용 및 마케팅 지원, 엔젤 투자 활성화, 창투자 평가 및 공시 제도 운영, M&A 기업 진단 비용 지원, M&A 거래 정보망 운영 등
50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46의8	중소기업청	5100	창업환경조성	5132	창업활성화지원	창업사업화 지원, 창업저변확대, 창업선도대학, 중소기업 재기 지원 등
				중소기업청	5100	창업환경조성	5152	창업기업지원융자(기금)	창업기업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 창업성공패키지
				중소기업청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31	벤처성장인프라지원	벤처기업 채용 및 마케팅 지원, 엔젤 투자 활성화, 창투자 평가 및 공시 제도 운영, M&A 기업 진단 비용 지원, M&A 거래 정보망 운영 등

순번	조세지출 내역	법률	조문	소관 부처	프로그램 코드	프로그램명	단위사업 코드	단위사업명	단위사업 주요 내용
51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47의4	중소기업청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61	사업전환 및 재도약지원(기금)	사업전환지원자금, 구조개선자금, 재창업자금 지원
52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따른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	52	금융위원회	1100	금융정책	1131	금융구조조정지원	금융구조조정지원(전입금 환급, 소송 및 법적 절차비, 기타 정리 자문경비 등)
53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55의2⑤	국토교통부	5600	도시정책	5632	도시개발	도시정책 종합 연구, 부동산투자회사 감독 및 검사지원 등
54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	60	산업통상자원부	4200	지역경제경쟁력강화	4232	지역투자유치활성화	지방 이전 기업, 지방 신·증설, 국내 유턴, 개성공단 기업 지원
55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	61	산업통상자원부	4200	지역경제경쟁력강화	4232	지역투자유치활성화	지방 이전 기업, 지방 신·증설, 국내 유턴, 개성공단 기업 지원
56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조특	62	국토교통부	5500	지역개발	5538	혁신도시	혁신도시 건설 지원, 공공기관 이차보전 지원
57	수도권과밀억제권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63	산업통상자원부	4200	지역경제경쟁력강화	4232	지역투자유치활성화	지방 이전 기업, 지방 신·증설, 국내 유턴, 개성공단 기업 지원
58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조특	63의2	산업통상자원부	4200	지역경제경쟁력강화	4232	지역투자유치활성화	지방 이전 기업, 지방 신·증설, 국내 유턴, 개성공단 기업 지원
59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64	농림축산식품부	4200	농촌지역개발 및 도농교류활성화	4230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농촌 자원 기반으로 1,2,3차 복합 산업화 촉진
				농림축산식품부	4200	농촌지역개발 및 도농교류활성화	4240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농촌 자원 기반으로 1,2,3차 복합 산업화 촉진
				농림축산식품부	4200	농촌지역개발 및 도농교류활성화	4242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농촌 자원 기반으로 1,2,3차 복합 산업화 촉진

순번	조세지출 내역	법률	조문	소관 부처	프로그램 코드	프로그램명	단위사업 코드	단위사업명	단위사업 주요 내용
60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¹²⁾	조특	66	농림축산식품부	2100	양곡관리	2131	식량생산유통지원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및 시설 지원, 들녘경영체 육성
				농림축산식품부	3200	경쟁력제고	3233	과수 및 원예경쟁력제고	과수생산 유통 지원, 원예시설 현대화 등
				농림축산식품부	3700	축산업진흥	3733	축산업경쟁력제고	말산업육성, 사료 산업 종합지원,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61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등 ¹³⁾	조특	67	해양수산부	3400	수산경영	3465	어업경영자금(기금)	수산장비구입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영어자금융자, 수산모태펀드 출자 등
62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¹⁴⁾	조특	68	농림축산식품부	2100	양곡관리	2131	식량생산유통지원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및 시설 지원, 들녘경영체 육성
				농림축산식품부	3200	경쟁력제고	3233	과수및원예경쟁력제고	과수생산 유통 지원, 원예시설 현대화 등
				농림축산식품부	3700	축산업진흥	3733	축산업경쟁력제고	말산업육성, 사료 산업 종합지원,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63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69	농림축산식품부	1000	농가경영안정	1031	직접피해지원 (FTA기금)	피해 보전 직불, 폐업 지원 등
64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69의2	농림축산식품부	1000	농가경영안정	1031	직접피해지원 (FTA기금)	피해 보전 직불, 폐업 지원 등
65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특	70	농림축산식품부	1000	농가경영안정	-	-	정책 목적이 유사한 단위사업을 찾기 어려움
66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	70의2	농림축산식품부	2600	농지은행(농지, 용자)	2631	농지은행(농지, 용자)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농지규모화, 농지매입비축, 농지연금 등
67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조특	71	농림축산식품부	1000	농가경영안정	-	-	정책 목적이 유사한 단위사업을 찾기 어려움
68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	72	농림축산식품부	1000	농가경영안정	1003	농협사업구조개편	농협 사업구조 개편 지원

순번	조세지출 내역	법률	조문	소관 부처	프로그램 코드	프로그램명	단위사업 코드	단위사업명	단위사업 주요 내용
				중소기업청	4200	동반성장지원	4231	기업간협력증진	상생협력 기반구축 및 활성화(상생협력 구매 상담회, 대·중소기업 협력 재단 운영 등), 공정거래문화조성
				해양수산부	3400	수산경영	3431	수협경제사업활성화	수협경제사업 지원
				행정자치부	1200	지역발전	1249	새마을금고지원	새마을금고 지원
69	학교법인·국립대학병원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¹⁵⁾	조특	74①	교육부	2200	대학교육 역량강화	2235	국립대학병원 여건개선	국립대병원의 시설확충, 현대화, 연구시설 장비구입비 등 지원
				교육부	2200	대학교육 역량강화	2261	국립대학법인 운영 지원	국립대학법인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500	창의적문화정책구현	1551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2600	사회복지기반조성	2631	사회복지사업지원	민간 사회복지자원 육성 지원, 나눔 문화 확산 등
70	지방 시·군 소재 비영리 의료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조특	74④	보건복지부	2700	공공보건의료확충	2750	의료취약지 지원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71	기부장려금	조특	75	보건복지부	2600	사회복지기반조성	2631	사회복지사업지원	민간 사회복지자원 육성 지원, 나눔 문화 확산 등
72	정치자금의 손금산입 특례 등	조특	7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100	선거의공정한 관리	1132	정당발전지원	정치후원금 조성 활성화

순번	조세지출 내역	법률	조문	소관 부처	프로그램 코드	프로그램명	단위사업 코드	단위사업명	단위사업 주요 내용
73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¹⁶⁾	조특	77	국방부	2500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2535	부지매입	국방, 군사시설 사업 부족부지 및 민원제기 부지 확보
				국토교통부	2600	일반철도건설	2631	일반철도건설	일반철도 건설
				국토교통부	2800	광역철도건설	2833	광역철도건설지원	광역철도 건설
				국토교통부	3000	도시철도건설	3031	지하철건설지원	지하철 건설
74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	77의2	-	-	-	-	정책 목적이 유사한 단위사업을 찾기 어려움	
75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77의3	국토교통부	5500	지역개발	5551	개발제한구역지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사업 및 토지매수사업
76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	85의6①·②	고용노동부	1000	고용정책	1037	사회적기업육성	사회적기업 육성
				고용노동부	1400	장애인고용증진	1453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표준사업장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고용노동부	7000	고용노동행정지원	7041	제주이관업무지원	제주지역 사회적 기업 육성 포함
77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85의7	-	-	-	-	정책 목적이 유사한 단위사업을 찾기 어려움	
78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85의8	산업통상자원부	4200	지역경제경쟁력강화	4232	지역투자유치활성화	지방 이전 기업, 지방 신·증설, 국내 유턴, 개성공단 기업 지원
79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85의9	-	-	-	-	-	정책 목적이 유사한 단위사업을 찾기 어려움
80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85의10	산림청	1700	산림이용 및 복지증진	1736	국유재산 및 산지관리(일반)	산지, 국유재산 관리
8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특	86의3	중소기업청	4100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4131	소상공인지원(기금)	폐업 또는 업종전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순번	조세지출 내역	법률	조문	소관 부처	프로그램 코드	프로그램명	단위사업 코드	단위사업명	단위사업 주요 내용
82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특	87②	국토교통부	1100	분양주택 등 지원	-	-	정책 목적이 유사한 단위사업을 찾기 어려움
8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조특	87의2	금융위원회	1600	저축장려	1631	저축장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원리금 상환시 법정 장려금 추가 지급
84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87의6	국토교통부	5600	도시정책	5632	도시개발	도시정책 종합 연구, 부동산투자회사 감독 및 검사지원 등
85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¹⁷⁾	조특	88의2	국가보훈처	3100	보훈선양	3141	독립유공자예우	특별예우금 및 가계지원비 지급
				보건복지부	1100	기초생활보장	1131	기초생활급여	저소득층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양곡할인 등
				보건복지부	1500	장애인생활안정지원	1531	장애인소득보장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지급 등
				보건복지부	2100	노인생활안정	2131	노인복지지원	노인 기초연금 지급 등
86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88의4	고용노동부	3000	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	3061	근로자복지지원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 퇴직연금 운영,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등
87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조특	88의5; 89의3	농림축산식품부	1000	농가경영안정	1003	농협사업구조개편	농협 사업구조 개편 지원
				해양수산부	3400	수산경영	3431	수협경제사업 활성화	수협경제사업 지원
				행정자치부	1200	지역발전	1249	새마을금고지원	새마을금고 지원
88	해외자원개발투자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91의6	산업통상자원부	5300	국내외자원개발	5333	광물자원개발	해외자원 개발 조사, 자원협력기반 구축 사업 등
				산업통상자원부	5300	국내외자원개발	5334	광물자원개발융자	국내외 자원개발사업 투자비 일부 융자 지원

순번	조세지출 내역	법률	조문	소관 부처	프로그램 코드	프로그램명	단위사업 코드	단위사업명	단위사업 주요 내용
89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과세특례	조특	91의15	-	-	-	-	-	정책 목적이 유사한 단위사업을 찾기 어려움
90	해외주식 투자진용펀드 비과세특례	조특	91의17	-	-	-	-	-	정책 목적이 유사한 단위사업을 찾기 어려움
9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조특	91의18	-	-	-	-	-	정책 목적이 유사한 단위사업을 찾기 어려움
92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94	고용노동부	1000	고용정책	1047	고용창출지원사업	고용환경개선 기업 지원 등
				고용노동부	1300	고용평등실현	1345	일·가정양립지원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노동부	1400	장애인고용증진	1453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표준사업장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고용노동부	1400	장애인고용증진	1455	장애인고용유지	장애인 근로지원인, 사업장 장애인 편의시설 등 지원
				고용노동부	3000	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	3061	근로자복지지원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 퇴직연금 운영,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등
93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95의2	국토교통부	1000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	1034	주택정책지원	저소득층 임차료 보조 등
94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96	국토교통부	1400	임대주택지원(출자)	1440	임대주택지원	임대주택 공급 시행자 지원
95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97의3	국토교통부	1400	임대주택지원(출자)	1440	임대주택지원	임대주택 공급 시행자 지원
96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97의4	국토교통부	1400	임대주택지원(출자)	1440	임대주택지원	임대주택 공급 시행자 지원
97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조특	97의5	국토교통부	1400	임대주택지원(출자)	1440	임대주택지원	임대주택 공급 시행자 지원
98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조특	97의6	국토교통부	5600	도시정책	5632	도시개발	도시정책 종합 연구, 부동산투자회사 감독 및 검사지원 등

순번	조세지출 내역	법률	조문	소관 부처	프로그램 코드	프로그램명	단위사업 코드	단위사업명	단위사업 주요 내용
99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조특	97의7	국토교통부	1400	임대주택지원(출자)	1440	임대주택지원	임대주택 공급 시행자 지원
100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	99의4	농림축산식품부	4200	농촌지역개발 및 도농교류활성화	4231	농촌지역개발(농특)	농촌 공동체 활성화, 귀농·귀촌활성화지원 등
101	근로장려 및 자녀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1) 근로장려금 지급	조특	100의2~10	고용노동부	1000	고용정책	1036	대상별취업지원	저소득층, 취업취약계층, 청년, 중장년 단계별 통합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고용노동부	3000	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	3062	근로자생활안정대부(용자)	저소득근로자, 임금체불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긴급 생활 자금 용자
				고용노동부	3000	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	3064	신용보증대위변제	보증, 담보 여력 없는 근로자에게 신용보증지원 및 대위변제 관리
				보건복지부	1100	기초생활보장	1131	기초생활급여	저소득층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양곡할인 등
102	근로장려 및 자녀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2) 자녀장려금 지급	조특	100의27~31	교육부	1100	기초생활보장	1131	교육급여	저소득층의 교육급여 지급
				보건복지부	3100	보육지원강화	3133	영유아보육료지원	영유아보육료, 시간차등형보육 지원
				보건복지부	3100	보육지원강화	3141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가정양육수당 지원
103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조특	101	중소기업청	1200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1254	투융자복합금융지원(기금)	기술성, 성장가치 우수한 중소기업에 용자, 투자 복합 방식으로 자금 지원
				중소기업청	1200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1261	성장안정자금(기금)	성장유망 중소기업에 신성장기반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104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102	산림청	1500	산림자원육성	1534	탄소흡수원확충	조림, 숲 가꾸기 등
				산림청	1500	산림자원육성	1538	임업인정책자금 및 기술지도	산림사업종합자금(용자, 이차보전), 산림경영지도, 임업인재해복구 등

순번	조세지출 내역	법률	조문	소관 부처	프로그램 코드	프로그램명	단위사업 코드	단위사업명	단위사업 주요 내용
105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104의8	국세청	7100	국세행정지원	7133	국세행정 전산화(정보화)	전자신고 지원을 위한 홈택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지속적 기능 개선 등
106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조특	104의11	금융위원회	-	-	-	-	정책 목적이 유사한 단위사업을 찾기 어려움
107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04의12	금융위원회	-	-	-	-	정책 목적이 유사한 단위사업을 찾기 어려움
108	제3차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104의14	국토교통부	4000	물류정책	4034	물류산업지원	물류효율화 기반조성 지원(제3차물류건설탕,공동물류, 물류기업 해외진출) 등
109	대학 재정 건전화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04의16	교육부	2800	대학교육역량강화(기금, 용자)	2861	사학시설자금융자	사립학교 교육시설 개보수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
110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104의18	교육부	2200	대학교육 역량강화	2256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 대학창업교육체계 및 산학협력인프라 구축 등
				교육부	4600	산학연 협력 활성화	4603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 사회맞춤형 학과 지원 등
				중소기업청	5400	중소기업인력지원	5441	국립마이스터교육성	국립 마이스터고 지원
111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04의19	국토교통부	1100	분양주택등지원	1134	분양주택지원(용자)	분양주택 건설 및 공급 사업자에게 기금 지원
112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	104의21	-	-	-	-	-	정책 목적이 유사한 단위사업을 찾기 어려움
113	기업의 운동 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04의22	문화체육관광부	5100	생활체육육성	5161	생활체육 활성화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부	5500	장애인체육육성	5561	장애인체육 육성	장애인 체육 활성화 지원 등
11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104의24	산업통상자원부	4200	지역경제경쟁력강화	4232	지역투자유치활성화	지방 이전 기업, 지방 신·증설, 국내 유턴, 개성공단 기업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4900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	4901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지원 등

순번	조세지출 내역	법률	조문	소관 부처	프로그램 코드	프로그램명	단위사업 코드	단위사업명	단위사업 주요 내용
115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104의25	산업통상자원부	5400	에너지공급체계구축	5432	석유안정공급	오피넷(유가정보 서비스) 운영, 석유유통정보 수집, 안심주유소 및 알뜰주유소 지원 등
116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조특	104의26	-	-	-	-	-	정책 목적이 유사한 단위사업을 찾기 어려움
117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04의27	-	-	-	-	-	정책 목적이 유사한 단위사업을 찾기 어려움
118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04의28	문화체육관광부	5300	스포츠산업 육성 및 국제교류	5361	국제체육 지원	국제대회 개최 지원,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대회 지원 등
119	방위산업물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특	105①1	방위사업청	7000	방위사업 종합지원	7032	방위산업 진흥(일반)	방위산업 진흥
120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특	105①3	국토교통부	2800	광역철도건설지원	2833	광역철도건설지원	광역철도 건설
				국토교통부	3000	도시철도건설	3031	지하철건설지원	지하철 건설
				국토교통부	3000	도시철도건설	3032	경량전철건설지원	경량전철 건설
121	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특	105①4	보건복지부	1500	장애인생활안정지원	1532	장애인사회참여 기반조성	장애인보조기기지원 등
122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특	105①5·6	농림축산식품부	1000	농가경영안정	1067	농업기계장비	임대농기계 구입비, 보관창고 설치비 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400	친환경농업육성	2430	친환경농자재	농업인, 농업법인에 친환경농자재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3700	축산업진흥	3760	축사시설현대화(FTA)	축사시설 신축 및 개보수 지원
				해양수산부	3400	수산경영	3440	수산경영안정	양식 장비 임대, 어업용 기자재 무상 이동 수리 점검 등
				해양수산부	3400	수산경영	3465	어업경영자금(기금)	수산장비구입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영어자금융자, 수산모태펀드 출자 등

순번	조세지출 내역	법률	조문	소관 부처	프로그램 코드	프로그램명	단위사업 코드	단위사업명	단위사업 주요 내용
123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특례	조특	105의2	농림축산식품부	1000	농가경영안정	1067	농업기계장비	임대농기계 구입비, 보관창고 설치비 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3700	축산업진흥	3760	축사시설현대화(FTA)	축사시설 신축 및 개보수 지원
				해양수산부	3400	수산경영	3440	수산경영안정	양식 장비 임대, 어업용 기자재 무상 이동 수리 점검 등
				해양수산부	3400	수산경영	3465	어업경영자금(기금)	수산장비구입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영어자금융자, 수산모태펀드 출자 등
124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조특	106①1; 111①2	해양수산부	3400	수산경영	3440	수산경영안정	취약계층 및 정주 여건 취약지역 거주 어업인에 대한 지원
125	공장·학교 등의 급식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	106①2	-	-	-	-	-	정책 목적이 유사한 단위사업을 찾기 어려움
126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	106①3	농림축산식품부	1000	농가경영안정	-	-	정책 목적이 유사한 단위사업을 찾기 어려움
127	국민주택 및 동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	106①4	국토교통부	1100	분양주택등지원	1134	분양주택지원(용자)	분양주택 건설 및 공급 사업자에게 기금 지원
128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	106①4의2·4의3	-	-	-	-	-	정책 목적이 유사한 단위사업을 찾기 어려움
129	노인복지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	106①4의4	보건복지부	2100	노인생활안정	-	-	정책 목적이 유사한 단위사업을 찾기 어려움
130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	106①4의5	국토교통부	1400	임대주택지원(출자)	1440	임대주택지원	임대주택 공급 시행자 지원

순번	조세지출 내역	법률	조문	소관 부처	프로그램 코드	프로그램명	단위사업 코드	단위사업명	단위사업 주요 내용
131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	106①5	국토교통부	6000	기후변화대응	6001	온실가스감축	배출권거래제 운영 등
				농림축산식품부	3200	경쟁력제고	3232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투자)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 온실가스관리인프라 구축 등
				산업통상자원부	5100	기후변화 및 에너지자원정책	5142	기후변화협약대응	온실가스 감축제도 운영 등
				환경부	1600	기후변화대응 및 대기보전	1637	기후변화협약대응	배출권 거래제 기반 구축 등
132	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	106①9	환경부	1600	기후변화대응 및 대기보전	1632	저공해자동차보급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등
133	전기 시내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	106①9의2	환경부	1600	기후변화대응 및 대기보전	1633	자동차배출가스관리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등
134	개인택시용 차량 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	106①9의3	국토교통부	4900	대중교통육성	4931	대중교통체계구축	대중교통체계 구축 지원, 광역BIS 지원, 택시산업 지원 등
135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	106①10	보건복지부	4800	질병관리본부지원	4860	희귀질환자지원	저소득층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136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	106①11	보건복지부	2500	저출산대응 및 인구정책지원	2533	저출산대응인구정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등
137	임산물 중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	106①12	산림청	1500	산림자원육성	1535	임업생산 및 목재활용 증진	목재이용 및 산업 육성 등
138	농·어민이 직수입하는 농·축산·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	106②9	농림축산식품부	1000	농가경영안정	1067	농업기계장비	임대농기계 구입비, 보관창고 설치비 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3700	축산업진흥	3760	축사시설현대화(FTA)	축사시설 신축 및 개보수 지원
				해양수산부	3400	수산경영	3440	수산경영안정	양식 장비 임대, 어업용 기자재 무상 이동 수리 점검 등
				해양수산부	3400	수산경영	3465	어업경영자금(기금)	수산장비구입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영어자금용자, 수산모태펀드 출자 등

순번	조세지출 내역	법률	조문	소관 부처	프로그램 코드	프로그램명	단위사업 코드	단위사업명	단위사업 주요 내용
139	포틀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	조특	116①26; 118①17	문화체육관광부	5300	스포츠산업육성및국제교류	5361	국제체육지원	국제대회 개최 지원,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대회 지원 등
140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	조특	106②19; 116①28; 118①19	문화체육관광부	5300	스포츠산업 육성 및 국제교류	5361	국제체육 지원	국제대회 개최 지원,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대회 지원 등
141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조특	106의2①1	농림축산식품부	1000	농가경영안정	-	-	정책 목적이 유사한 단위사업을 찾기 어려움
				산림청	1500	산림자원육성	-	-	정책 목적이 유사한 단위사업을 찾기 어려움
				해양수산부	3400	수산경영	-	-	정책 목적이 유사한 단위사업을 찾기 어려움
142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조특	106의2①2	해양수산부	6100	해운사업 선진화	6134	도서지역 해상교통 지원(일반)	내항 여객선 이용 도서민 운임 지원, 국고여객선 건조 및 운영 비용 지원 등
143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조특	106의7	국토교통부	4900	대중교통육성	4931	대중교통체계구축	대중교통체계 구축 지원, 광역BIS 지원, 택시산업 지원 등
144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조특	107의3	문화체육관광부	4300	외래관광객유치	4361	해외관광객유치활동 사업	외래 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의료 및 웰니스 관광 육성 등
145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특	108	환경부	1400	자원순환사회 형성 촉진	1432	재활용산업육성	영세한 중소재활용 업체에 장기저리로 자금 지원
146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특	109①	환경부	1600	기후변화대응 및 대기보전	1633	자동차매출가스관리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등
147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특	109④	환경부	1600	기후변화대응 및 대기보전	1633	자동차매출가스관리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등
148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조특	110	외교부	7000	외교 행정지원	-	-	정책 목적이 유사한 단위사업을 찾기 어려움
149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특	111의2	-	-	-	-	-	정책 목적이 유사한 단위사업을 찾기 어려움
150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조특	111의3	국토교통부	4900	대중교통육성	4931	대중교통체계구축	대중교통체계 구축 지원, 광역BIS 지원, 택시산업 지원 등

순번	조세지출 내역	법률	조문	소관 부처	프로그램 코드	프로그램명	단위사업 코드	단위사업명	단위사업 주요 내용
151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	조특	111의4	외교부	7000	외교 행정지원	-	-	정책 목적이 유사한 단위사업을 찾기 어려움
152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조특	114	국방부	2200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2237	장병복지향상	복지시설 신·증설 및 운영
153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 면제	조특	115	-	-	-	-	-	정책 목적이 유사한 단위사업을 찾기 어려움
154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조특	116④	-	-	-	-	-	정책 목적이 유사한 단위사업을 찾기 어려움
155	창업중소기업의 융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조특	116④19	중소기업청	5100	창업환경조성	5152	창업기업지원융자(기금)	창업기업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 창업성공패키지
156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	117④1·2·2의3·2의4	중소기업청	5100	창업환경조성	5132	창업활성화지원	창업사업화 지원, 창업저변확대, 창업선도대학, 중소기업 제기 지원 등
				중소기업청	5100	창업환경조성	5152	창업기업지원융자(기금)	창업기업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 창업성공패키지
				중소기업청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31	벤처성장인프라지원	벤처기업 채용 및 마케팅 지원, 엔젤 투자 활성화, 창투자 평가 및 공시 제도 운영, M&A 기업 진단 비용 지원, M&A 거래 정보망 운영 등
157	구조조정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	117④6-23	금융위원회	2400	산업금융지원	-	-	정책 목적이 유사한 단위사업을 찾기 어려움
158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에 대한 관세 경감	조특	118④3	산업통상자원부	5400	에너지공급체계구축	5452	신재생에너지보급(기금)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등
				산업통상자원부	5400	에너지공급체계구축	5467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등

순번	조세지출 내역	법률	조문	소관 부처	프로그램 코드	프로그램명	단위사업 코드	단위사업명	단위사업 주요 내용
159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 감면	조특	118의2	산업통상자원부	4200	지역경제경쟁력강화	4232	지역투자유치활성화	지방 이전 기업, 지방 신·증설, 국내 유턴, 개성공단 기업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4900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	4901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지원 등
160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	121의2; 121의4	국토교통부	5500	지역개발	5554	제주국제자유도시기반 시설지원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2700	경제자유구역사업추진	2733	경제자유구역지원	경제자유구역청 지원, 경제자유구역내 도로 건설 지원 등
				산업통상자원부	4900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	4901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	외국인 투자기업의 토지매입비, 현금지원 등
				세만금개발청	5500	지역개발	5557	세만금개발사업지원	도로, 공업용수도 건설 지원 등
161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제 도입에 대한 관세 등 면제	조특	121의3	산업통상자원부	4900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	4901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	외국인 투자기업의 토지매입비, 현금지원 등
16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	121의8	국토교통부	5500	지역개발	5554	제주국제자유도시기반 시설지원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지원
163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 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	121의9	국토교통부	5500	지역개발	5554	제주국제자유도시기반 시설지원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지원
16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조특	121의10	국토교통부	5500	지역개발	5554	제주국제자유도시기반 시설지원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지원
165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조특	121의11	국토교통부	5500	지역개발	5554	제주국제자유도시기반 시설지원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지원
166	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조특	121의13	문화체육관광부	4100	관광진흥기반확충	4154	기초 관광자원개발(제주)	기초관광자원개발 등
167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조특	121의14(삭제) 부칙제62조	문화체육관광부	4100	관광진흥기반확충	4154	기초 관광자원개발(제주)	기초관광자원개발 등

순번	조세지출 내역	법률	조문	소관 부처	프로그램 코드	프로그램명	단위사업 코드	단위사업명	단위사업 주요 내용
168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	121의17	문화체육관광부	4500	관광레저도시육성	4551	관광레저 개발 육성	기업 도시 진입 도로 지원
				해양수산부	2000	해양정책 및 영토관리	2031	해양정책 및 문화기반조성	여수박람회 부지·시설 매각을 완료하기 이전까지 (재)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운영비, 시설관리비 지원 등
16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	121의20	문화체육관광부	2000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2032	문화중심도시조성	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운영 등
170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조특	121의21	금융위원회	1400	금융산업 글로벌화	1431	금융관련 국제협력	국제금융네트워크 구축 및 금융중심지 육성
171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	121의22	보건복지부	3000	보건산업육성	3036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	첨단의료복합단지 기반기술 구축
172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21의23	농림축산식품부	1000	농가경영안정	1003	농협사업구조개편	농협 사업구조 개편 지원
173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21의24	금융위원회	1100	금융정책	1131	금융구조조정지원	금융구조조정지원(전입금 환급, 소송 및 법적 절차비, 기타 정리 자문경비 등)
174	수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조세특례	조특	121의25①	해양수산부	3400	수산경영	3431	수협경제사업활성화	수협경제사업 지원
175	수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조세특례	조특	121의25⑦·⑧	해양수산부	3400	수산경영	3431	수협경제사업활성화	수협경제사업 지원
176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 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21의26	중소기업청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61	사업전환 및 재도약지원(기금)	사업전환지원자금, 구조개선자금, 재창업자금 지원
177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21의27	중소기업청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61	사업전환 및 재도약지원(기금)	사업전환지원자금, 구조개선자금, 재창업자금 지원
178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특	121의28	중소기업청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61	사업전환 및 재도약지원(기금)	사업전환지원자금, 구조개선자금, 재창업자금 지원
179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21의29	중소기업청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61	사업전환 및 재도약지원(기금)	사업전환지원자금, 구조개선자금, 재창업자금 지원
180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21의30	중소기업청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61	사업전환 및 재도약지원(기금)	사업전환지원자금, 구조개선자금, 재창업자금 지원

순번	조세지출 내역	법률	조문	소관 부처	프로그램 코드	프로그램명	단위사업 코드	단위사업명	단위사업 주요 내용
181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21의31	중소기업청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261	사업전환및제도약지원(기금)	사업전환지원자금, 구조개선자금, 재창업자금 지원
182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조특	122의3	국세청	3100	성실납세 및 민생지원	3133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성실납세 지원
183	금사업자와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122의4	-	-	-	-	-	정책 목적이 유사한 단위사업을 찾기 어려움
18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	126의2	국세청	1100	과세기반확충	-	-	정책 목적이 유사한 단위사업을 찾기 어려움
185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26의3	국세청	1100	과세기반확충	1131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현금영수증제도 운영
18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126의6	국세청	3100	성실납세 및 민생지원	3133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성실납세 지원
187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급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26의7	-	-	-	-	-	정책 목적이 유사한 단위사업을 찾기 어려움
188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조특	136③	-	-	-	-	-	정책 목적이 유사한 단위사업을 찾기 어려움
189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조특	140	산업통상자원부	5300	국내외자원개발	5333	광물자원개발	해외자원 개발 조사, 자원협력기반 구축 사업 등
				산업통상자원부	5300	국내외자원개발	5334	광물자원개발용자	국내외 자원개발사업 투자비 일부 용자 지원
190	비거주자 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41의2	-	-	-	-	-	정책 목적이 유사한 단위사업을 찾기 어려움
191	법인기부금의 손금산입	법인	24	보건복지부	2600	사회복지기반조성	2631	사회복지사업지원	민간 사회복지자원 육성 지원, 나눔 문화 확산 등
192	폐광지역 카지노에 대한 개별소비세 저율과세 등	개소	1③; 19의2_3	문화체육관광부	4100	관광진흥기반확충	4161	관광자원활성화	폐광지역 관광상품 개발 등

순번	조세지출 내역	법률	조문	소관 부처	프로그램 코드	프로그램명	단위사업 코드	단위사업명	단위사업 주요 내용
193	장애인, 환자수송, 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개소	18①3	국토교통부	4900	대중교통육성	4931	대중교통체계구축	대중교통체계 구축 지원, 광역BIS 지원, 택시산업 지원 등
				국토교통부	4900	대중교통육성	4932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저상버스도입보조, 특별교통수단도입보조, 이동편의실태조사, BF인증시험사업추진 등
				보건복지부	1500	장애인생활안정지원	1542	장애인권익증진 및 자립생활지원	장애인안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 등
				보건복지부	2800	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	2835	119구급 운영지원	119구급대 지원, 119 구조장비 확충
194	방송·신문·교육용 고급사진기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개소	18①12 (2015.12.15. 삭제)	-	-	-	-	정책 목적이 유사한 단위사업을 찾기 어려움	
195	골프선수의 골프장 이용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개소	19의2_1·2	문화체육관광부	5200	전문체육육성	5261	대한체육회 지원	우수선수 양성 지원, 체육인재 육성 등
196	항공기, 반도체 제조·수리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관세	89①	국토교통부	4100	국토교통연구개발	4161	항공기술연구	항공기 및 사고예방기술·항행기술·공항기술 개발
				미래창조과학부	4500	정보통신방송산업진흥	4535	정보통신산업융합원천기술	전자정보 디바이스 산업 원천기술 개발 등
				산업통상자원부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2	공공기술개발	항공우주부품 기술 개발 등
197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¹⁸⁾	관세	90①4	산업통상자원부	4800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4823	우수기술역량강화	사업화 연계기술 개발지원 등
198	장애인용품 관세 감면	관세	91_4·5	보건복지부	1500	장애인생활안정지원	1532	장애인사회참여 기반조성	장애인보조기기지원 등
				보건복지부	4800	질병관리본부지원	4860	희귀질환자지원	저소득층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199	환경오염방지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관세	95①1·2	농림축산식품부	3700	축산업진흥	3735	친환경축산(축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가축분뇨처리 지원 등
				환경부	1200	수질보전 및 관리	1230	기타 오염원 관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등

순번	조세지출 내역	법률	조문	소관 부처	프로그램 코드	프로그램명	단위사업 코드	단위사업명	단위사업 주요 내용
				환경부	1200	수질보전 및 관리	1232	산업폐수 관리	공단폐수처리시설, 산업단지원충저류시설 설치 등
				환경부	1400	자원순환사회 형성 촉진	1432	재활용산업육성	영세한 중소기업에 장기저리로 자금 지원
				환경부	1500	자원순환 기반 구축	1531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재활용시설 설치 등
				환경부	1500	자원순환 기반 구축	1538	재활용 및 처리시설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등
200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관세	95①3	산업통상자원부	3100	산업경쟁력기반구축	3160	생산성향상지원	국가 생산성 혁신 기반 구축, ICT 융합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제조기반 설계 기술 고도화 등
201	소액담배·특수제조용 담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	26①10	-	-	-	-	-	정책 목적이 유사한 단위사업을 찾기 어려움
202	교육·과학·문화관련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	27_3	-	-	-	-	-	정책 목적이 유사한 단위사업을 찾기 어려움
203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부가	42	-	-	-	-	-	정책 목적이 유사한 단위사업을 찾기 어려움
204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부가	46	국세청	1100	과세기반확충	-	-	정책 목적이 유사한 단위사업을 찾기 어려움
205	전답 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	소득	12_2가	농림축산식품부	1000	농가경영안정	-	-	정책 목적이 유사한 단위사업을 찾기 어려움
206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등	소득	12_2다·라	농림축산식품부	1000	농가경영안정	-	-	정책 목적이 유사한 단위사업을 찾기 어려움
207	대학교원·연구기관 종사자가 받는 연구보조비·활동비 비과세	소득	12_3자	-	-	-	-	-	정책 목적이 유사한 단위사업을 찾기 어려움
208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비과세	소득	12_3거	고용노동부	1000	고용정책	1035	해외취업지원	해외 취업 희망 청년의 해외 취업 지원
				통일부	3200	개성공단지원	3232	개성공단 사업지원	개성공단 운영 기반 구축
20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	소득	12_3너	고용노동부	1000	고용정책	1037	사회적기업육성	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포함) 육성
				고용노동부	1000	고용정책	1055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노동부	7000	고용노동행정지원	7041	제주이관업무지원	제주지역 사회적 기업 육성(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포함

순번	조세지출 내역	법률	조문	소관 부처	프로그램 코드	프로그램명	단위사업 코드	단위사업명	단위사업 주요 내용
210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로 인한 급여 비과세	소득	12_3더	고용노동부	3000	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	-	-	정책 목적이 유사한 단위사업을 찾기 어려움
211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	16①9 (소득(령)25①)	금융위원회	1600	금융의 날 행사 및 저축장려	1631	금융의 날 행사 및 저축장려	금융의 날 행사 및 저축장려
212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소득	51①1	보건복지부	2100	노인생활안정	2131	노인복지지원	노인기초연금 지급 등
213	장애인 추가공제	소득	51①2	보건복지부	1500	장애인생활안정지원	1531	장애인소득보장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지급 등
214	부녀자 추가공제	소득	51①3	여성가족부	1200	여성능력개발 및 일자리지원강화	1231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215	한부모 추가공제	소득	51①6	여성가족부	2100	가족기능강화	2131	한부모가족지원(기금)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216	연금보험료 공제¹⁾	소득	51의3	보건복지부	7600	국민연금운영(급여지급)	7631	국민연금급여지급	국민연금 급여 지급
217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소득	51의4	금융위원회	2600	주택금융지원	2631	주연보운영 (주연보계정)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 운영
218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특별공제	소득	52④·⑤	국토교통부	1200	구입·전세자금	1231	주택구입·전세자금 (용자)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지원 등
219	기장세액공제	소득	56의2	국세청	3100	성실납세 및 민생지원	3133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성실납세 지원
220	자녀세액공제	소득	59의2; (구)소득51①4·5; (구)소득51의2	교육부	1100	기초생활보장	1131	교육급여	저소득층의 교육급여 지급
				보건복지부	3100	보육지원강화	3133	영유아보육료지원	영유아보육료, 시간차등형보육 지원
				보건복지부	3100	보육지원강화	3141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가정양육수당 지원
221	연금계좌세액공제	소득	59의3; (구)소득51의3①2	금융위원회	1600	금융의 날 행사 및 저축장려	1631	금융의 날 행사 및 저축장려	금융의 날 행사 및 저축장려
222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소득	52①; 59의4①	-	-	-	-	정책 목적이 유사한 단위사업을 찾기 어려움	

순번	조세지출 내역	법률	조문	소관 부처	프로그램 코드	프로그램명	단위사업 코드	단위사업명	단위사업 주요 내용
223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소득	59의4②; (구)소득52②	-	-	-	-	-	정책 목적이 유사한 단위사업을 찾기 어려움
224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	59의4③; (구)소득52③	-	-	-	-	-	정책 목적이 유사한 단위사업을 찾기 어려움
225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소득	59의4④; (구)소득52⑥	보건복지부	2600	사회복지기반조성	2631	사회복지사업지원	민간 사회복지자원 육성 지원, 나눔 문화 확산 등
226	가업상속공제	상증	18②1	중소기업청	1200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	-	정책 목적이 유사한 단위사업을 찾기 어려움
227	영농상속공제	상증	18②2	농림축산식품부	1000	농가경영안정	-	-	정책 목적이 유사한 단위사업을 찾기 어려움
228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증	23의2	-	-	-	-	-	정책 목적이 유사한 단위사업을 찾기 어려움
229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52의2	보건복지부	1500	장애인생활안정지원	1531	장애인소득보장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지급 등

- 6) 제시한 단위사업 외에도 농축산부, 문체부, 미래부, 복지부, 산업부, 중기청, 환경부에 관련 단위사업 존재
- 7) 제시한 단위사업 외에도 미래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관련 단위사업 존재
- 8) 제시한 단위사업 외에도 농축산부, 문체부, 미래부, 복지부, 산업부, 중기청, 환경부에 관련 단위사업 존재
- 9) 제시한 단위사업 외에도 농축산부, 산업부, 식약처, 중기청, 해수부에 관련 단위사업 존재
- 10) 제시한 단위사업 외에도 국민안전처, 농축산부에 관련 단위사업 존재
- 11) 제시한 단위사업 외에도 고용부에 관련 단위사업 존재
- 12) 제시한 단위사업 외에도 농축산부에 관련 단위사업 존재
- 13) 제시한 단위사업 외에도 해수부에 관련 단위사업 존재
- 14) 제시한 단위사업 외에도 농축산부에 관련 단위사업 존재
- 15) 제시한 단위사업 외에도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에 관련 단위사업 존재
- 16) 제시한 단위사업 외에도 국토부, 기재부에 관련 단위사업 존재
- 17) 제시한 단위사업 외에도 보건처에 관련 단위사업 존재
- 18) 제시한 단위사업 외에도 미래부, 산업부에 관련 단위사업 존재
- 19) 제시한 단위사업 외에도 교육부, 국방부, 인사혁신처에도 관련 단위사업 존재

